

目 次

포커스	1
IMF時代의 保險産業	1
保險會社の 子會社 進出戰略	45
國內保險動向	65
1. 經濟金融動向	65
2. 保險主要指標 動向	71
가. 生命保險	71
나. 損害保險	79
3. 保險 政策·制度 動向	88
가. 金融改革關聯 法律 國會議決	88
나. 金融機關의 合併 등에 대한 認可基準 制定	89
다. 金融機關 增資要件 緩和	90
라. 保險保證基金 擴充	90
마. 保險會社の 銀行에 대한 後順位貸出 追加許容	91
바. 交通法規違反者에 대한 自動車保險料 差等化	92
사. FY'96 損害保險 料率檢證 結果	92
아. 傳貰버스 共濟組合 新規進出	94
海外保險動向	96
1. 世界貿易機構(WTO) 金融서비스協定 妥結	96
2. 主要國의 自動車保險料率 推移	97
3. 美國 損保社의 信用等級 推移	99
4. 日本 保險社의 後順位貸出比率 現況	100
5. 日本의 保險市場 自由化 進展에 따른 販賣채널 動向	102
6. 獨逸 損害保險市場 自由化 以後의 動向	106
7. 콜롬비아의 保險産業 現況	114
8. 인도네시아 損害保險動向	119
9. 러시아 保險會社の 資本金要件 強化	123
海外保險論文	125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OECD Countries	125
新着圖書案内	130

IMF 時代의 保險產業*

<目 次>

- I. 序論
- II. IMF 救濟金融 導入의 背景과 內容
- III. IMF 救濟金融 導入에 따른 影響
- IV. IMF 時代의 保險產業 環境變化
- V. 保險會社의 對應方案: 價値創造 經營戰略
- VI. 結論

I. 序論

금년 들어 계속되어온 기업연쇄도산이 결국에는 IMF救濟金融을 받게 되는 경제 위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IMF구제금융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外資를 차입 해오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시경제정책, 금융정책 등에까지 IMF의 관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소위 'IMF時代'를 맞이하게 되었다¹⁾.

이러한 결과는 해외의존형 경제구조하의 과도한 외채, 산업구조조정 지연과 고비

* 본 논문은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장인 오영수 박사와 장기중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용은 보험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힌다.

1) 우리나라가 경제운용에 있어서 IMF의 관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경제개발계획기에도 IMF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IMF의 관리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의 충격이 국민들에게 크게 느껴진 것은 소득 1만 달러 시대와 더불어 OECD가입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판단에 괴리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용경제구조, 재벌중심의 기업구조와 차입의존 기업경영 관행, 비효율적이고 경직적인 금융시스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났다. 특히 금융분야와 관련 지워 볼 때는 1990년대 초반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 의해 번번히 금융개혁이 좌절되어 옴으로써 경쟁력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의 기회를 상실했던 것이다. 그러나 IMF가 구제금융 공여를 계기로 금융개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IMF의 지도하에 국제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전반적인 금융개혁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金融産業 構造調整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MF 구제금융 도입의 배경 및 내용, 그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및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보험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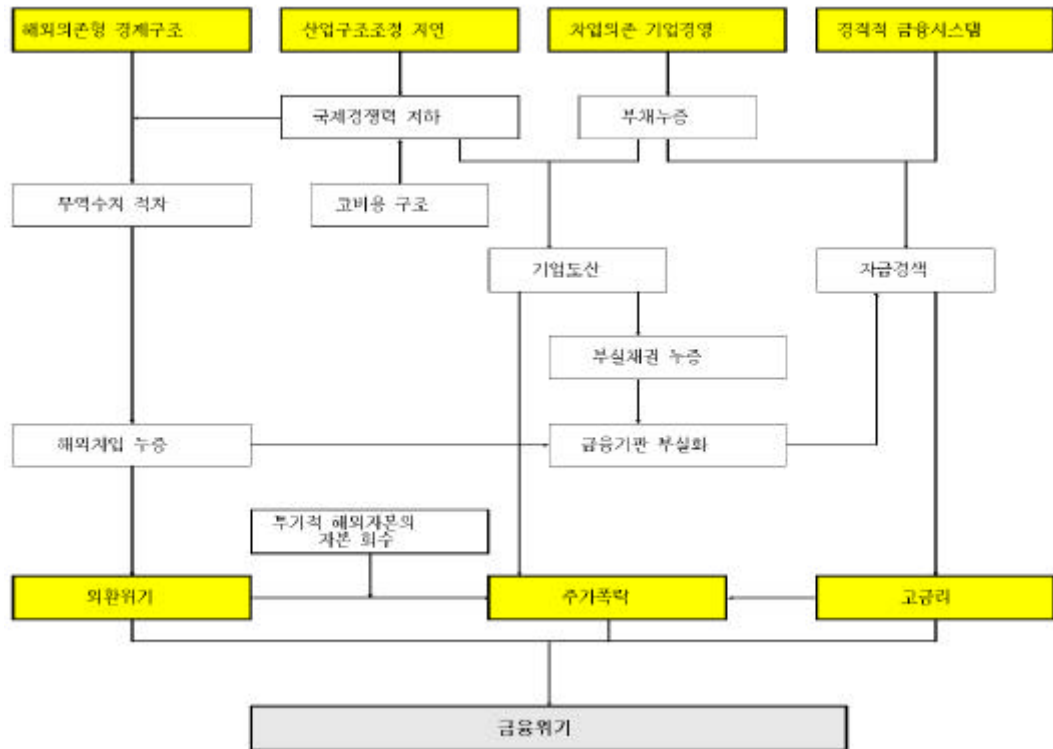
II. IMF 救濟金融 導入의 背景과 內容

1. IMF 救濟金融 導入의 背景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11월 21일이다. 이렇게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단기부채 상황을 위한 외환부족으로 인한 資金의 流動性 缺如였다²⁾. 당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8년도 상반기까지의 외환부족규모는 총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외환위기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그림 1] 참조).

2) 1997년 12월 29일에 정부와 IMF는 기존의 외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대외지불부담'이라는 개념 하에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1,530억 달러(1997년 12월 20일 기준)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대외지불부담이란 일정 시점에 거주자(한국 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비거주자(외국)에게서 빌린 돈을 말한다.

[그림 1] 한국 금융위기의 구조



첫째로, 해외의존형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短期外債 規模의 累積이다. 특히 연말에 상환해야 할 단기외채의 규모가 200억 달러가 될 정도로 외채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국적 투기금융자본의 자본회수는 주식시장을 붕괴시키면서 외환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

<표 1> 외채 현황의 국제 비교

(단위: 억 달러, %)

	한국(97. 10)	일본(1995)	미국(1994)	영국(1994)	태국(1995)
외환보유고	305	1,724	412	385	354
총외채	1,197	19,759	33,492	21,528	568
단기외채비중	54.8	54.3	-	-	45.3

註: 97년 9월말 잠정치.

資料: 재정경제원.

둘째로, 産業構造調整 遲延과 高費用 經濟構造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하시켜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옴으로써 외채가 누증되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후반의 소위 '3저 호황' 특수로 내수기반을 다지면서 경제의 재도약을 기약할 수 있는 여력을 비축할 기회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경상수지의 흑자는 부동산 가격,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고비용 경제구조를 체질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에 더하여 90년대 들어서 대기업집단의 차입에 의존한 경쟁적 과잉중복투자는 고금리 구조가 유지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더욱더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

셋째로, 차입의존 기업경영관행으로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한 輸出不振과 內需不振은 기업도산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의 不實債權累積으로 인한 부실화 심화로 이어진 데 따른 國家信用度 및 金融機關 信用度 低下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 되어온 대기업집단은 상호지급보증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외형을 불려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선단식 경영방식을 답습해왔으나, 결국에는 한 기업의 부실이 다시 기업집단 전체의 부실로 이어지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표 2> 기업의 차입수준의 국제 비교

(단위: %)

	한국(1996)	미국(1995)	일본(1995)	대만(1995)
부채비율	317.1	159.7	206.3	85.7
금융비용/ 매출액	3.9	-	1.6	2.2

註: 제조업 기준임.
資料: 재정경제원.

마지막으로 硬直的인 金融시스템으로 인해 위기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오랜동안 유지되어온 규제체제로 인해 자율적 조정능력이 부족하여 급격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감독시스템의 측면에서 볼 때도 금융전반을 종합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와 책임소재의 불명확화에서 기인하는 금융감독의 불철저, 금융자유화로의 이행과정에서 적

절한 감독수단의 부재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누적되어 왔다.

<표 3> 금융부문 부실채권 규모

(단위: 조 원, %)

	부실채권(A)	총여신(B)	비중(A/ B)	GDP비중
은행	28.5	453.3	6.3	6.8
종금	3.9	133.5	2.9	0.9
합계	32.4	586.8	5.5	7.7

註: 은행은 97년 9월말, 종금은 97년 10월말 기준임.
資料: 재정경제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금번의 문제는 적절한 산업구조조정, 책임경영의식의 확보, 효율적 금융감독, 금융산업구조조정,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관계의 재정립, 금융산업 업무영역 조정 등과 같은 과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2. IMF 救濟金融 導入의 內容

가. IMF의 融資制度

IMF의 용자는 정규신용, 보상금융, 완충재고금융, 확대금융지원 등 네 가지가 있다. 정규신용제도는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융은 1차 상품 산출의 급감에 의한 국제수지의 악화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이 가능하다. 완충재고금융은 1차 상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국제완충재고협정에 출자할 자금이 없을 때 이를 빌려주는 제도이다. 확대금융지원은 개발계획이나 경제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장기적인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요청한 구제금융은 정규신용제도의 일환으로서, 待機信用(stand-by credit)과 緊急借入(EFM: Emergency Finance Mechanism) 두 가지가 있다. 긴급차입은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한 나라의 금융위기가 다른 나라로 급속히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5년에 새로 도입되었다. 이 구제금융은 IMF출자금의

3 7배에서 결정되는데, 한꺼번에 총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조건의 이행 여부와 경제의 회복 여부에 따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지원된다.

IMF구제금융 자금의 도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제금융을 지원하게 되면 IMF의 협의단이 해당국을 방문하여 경제실적 및 전망과 소요금액 등을 조사하여 자금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조사결과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待機信用(Stand-by)을 우선 공여받게 된다. 이후 총 지원규모 및 조건을 협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대기신용 공여가 결정될 때까지는 약 1주일이 소요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될 때까지는 약 2개월 정도가 걸린다.

나. 韓國에 대한 救濟金融 內容과 條件

지난 11월 23일에 IMF 실무협의단이 한국에 파견되어 협상이 시작되어 12월 2일에 IMF와 한국정부간에 자금지원조건이 최종 타결되었다(<부표 1> 참조).

협상결과 구제금융 제공조건은 정부와 IMF간의 諒解覺書 형식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4>와 같다³⁾.

먼저 거시경제 목표 중에서 經常收支赤字는 1998년과 1999년에 GDP의 1%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하고⁴⁾, 消費者物價上昇率은 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經濟成長率은 1998년에는 3% 이내 수준으로 하고, 19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하였다⁵⁾.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緊縮基調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

3) 양해각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뒤 얼마 있지 않아 이면협상내용이 공개되었다. 본고에서는 그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 정리하기로 한다.

4) 경상수지의 경우 2001년까지 흑자로 전환, 200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7%까지 개선해야 한다. 현재 1,015억 달러에 이르는 총외채를 1998년말까지 1,268억 달러선으로 억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GDP대비 총외채 비중은 현재의 22.7%에서 98년말 30.7%로 높아진 뒤 99년말 32.1%를 정점으로 2000년에는 30.6%, 2001년에는 28.7%로 낮아진다.

5) 다만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는 경제운영의 결과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4> IMF와의 양해각서 주요 내용

분 야	세 부 내 용
거시경제운용	- GDP성장률: 98년 3% 수준, 99년에 회복세 - 소비자물가 상승률: 98년 5% 이내 - 경상수지 적자: 98, 99년 GDP의 1% 이내
통화정책	- 통화긴축 운용, 일시적인 금리상승 허용 - 탄력적인 환율제도 계속 유지
재정정책	- 재정 긴축 운영 -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 수준 유지 - 세수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검토
금융개혁	- 금융개혁법의 연내 처리 · 한은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은법 개정,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도록 함. ·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 부실금융기관 문제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독립적 권한 부여 ·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재무제표 작성 의무 부여 -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 조치 ·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폐쇄, 인수 및 합병) 마련 · 부실채권 정리 촉진 · 국제기준(바젤협약)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 · 모든 은행이 바젤협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차 개선계획 수립 ·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 금융분야 진입허용 일정을 앞당김: 98년 중반까지 외국 금융기관(은행, 증권)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 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 강화 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 정리
기타	- 무역자유화 조치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승인제, 수입국 다변화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 97년중 외국인 주식취득 총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하고 98년에 55%로 추가 확대 ·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단계적 허용 · 일부 분야를 뺀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 허용 ·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 점진적 추진 - 기업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 ·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계열기업군의 결합재무제표 포함)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 투명성 제고 ·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98년중) ·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 배제 ·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축소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대책 마련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 인력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정기적인 외환 및 금융정보 공개 · 외환보유고 구성, 선물환 거래 내용, 금융기관 부실 채권, 자본적합비율, 소유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금융실명제의 기본골격 유지(필요할 경우 일부 보완)

된 流動性을 還收함은 물론 1998년 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 5%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고금리도 시장안정을 위해 용인하기로 했다⁶⁾. 또한 신축적인 환율제도를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국한하기로 하였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緊縮財政基調를 유지하되, 재정수지상으로는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⁷⁾. 그리고 이를 위해 稅收擴大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였다⁸⁾.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을 금년 말까지 통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韓國銀行法」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 임무로 하도록 개정한다. 금융감독기구는 「金融監督機構의 設置 等에 관한 法律案」에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을 통합하도록 하되,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株式會社の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서 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다음으로 金融産業 構造調整과 관련한 개혁조치는 다음과 같다.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하는 금융기관의 退出制度를 마련한다⁹⁾. 부실채권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일괄 매입하여 정리한다¹⁰⁾. 또한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¹¹⁾는 3년 내로 끝내고 부분보

6) 본래 IMF는 내년도 총통화(M3)증가율을 올 연말 15.4%에서 내년에는 9.0%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와 IMF간에 통화공급의 지나친 억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12~15%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 IMF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부문을 합친 통합재정수지의 올해 적자폭을 2조원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이 국내은행 및 해외지점에 제공하는 외화대출의 금리를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4%를 합친 고금리로 운영해야 한다.

8) 정부가 강구하고 있는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들 수 있다.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등을 들 수 있다.

9) 이와 관련하여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10) 이를 위해 1998년 1월말까지 부실채권의 50%를 매입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보다 매입규

장제도로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國際基準(바젤協約)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하고, 모든 은행이 바젤협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할 경우 인원감축, 점포축소 등 자구계획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책임경영각서 및 노조동의서를 함께 징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금융기관 會計 및 公示와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監査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금융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을 앞당겨 1998년 중반까지 외국 금융기관(은행, 증권)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내금융기관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지점은 폐쇄하도록 한다.

한국은행의 外換保有高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한다.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貿易自由化의 확산을 위해 WTO讓許計劃에 맞추어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수입승인제 폐지,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한다.

資本自由化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자유화 일정을 앞당긴다. 즉,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1997년 말까지 50%까지, 1998년 말까지는 55%까지 확대한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한다.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과 국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을 절차간소화를 통해 더욱

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 11)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25일 「예금자보호법시행령」 등 4개의 법령의 개정을 통해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예금 원리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축소한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한다.

企業支配構造 및 民間企業構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먼저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國際會計原則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한다.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농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 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정부예산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금융실명제는 일부보완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한다. 相互債務保證은 위험이 큰 만큼 재별내 계열사 간 상호채무보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하도록 한다.

勞働市場의 柔軟性を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先物換 純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과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한다.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며, 단기자료는 분기별로 공표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하에 IMF로부터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금액은 210억 달러이다(<표 5> 참조). 우선 12월 4일에 이사회 의 승인으로 55억 달러가 지원되고, 12월 18일에 35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되었다. 그 후 자본시장 추가개방 등의 조치의 조기이행에 따라 20억 달러가 12월 30일에 조기 집행되게 되었다.

한편 IMF 및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가 자체 지원하는 350억 달러 이외에 일본 100억 달러, 미국 50억 달러와 함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83억 5천만 달러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80억 달러가 1월 초에 집행될 예정이다.

<표 5> IMF 금융지원 일정 및 조건

월 일	금 액	내 용
97년 12월 4일	55억 달러	- 이사회 승인
97년 12월 18일 ~ 12월 23일	35억 달러	- 한은의 외환지원시 4% 가산금리 적용 - 콜금리 25% 용인 등 고금리정책 준수
97년 12월 30일	20억 달러 ¹⁾	
98년 1월 8일	20억 달러	- 대선직후 개최되는 임시국회에 결함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한은독립성 강화,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을 포함하는 금융 개혁법안 제출. - 지배적 지위 남용(외국인의 한국기업 및 금융기관 인수합병 관련)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출. - 외환보유고 공개. - 한은이 한국계 은행 해외점포에 외환보유고 예탁시 4%의 벌칙가산금리 적용.
98년 2월 15일	20억 달러 ²⁾	- 97년말 이행조치 점검과 첫 번째 총점검
98년 5월 15일	18억 달러 ³⁾	- 1/4분기 이행조치 점검과 두 번째 총점검
98년 8월 15일	9억 달러	- 2/4분기 이행조치 점검과 세 번째 총점검
98년 11월 15일	9억 달러	- 3/4분기 이행조치 점검과 네 번째 총점검
99년 2월 15일 ~ 2000년 11월 15일	3개월마다 2억 달러	- 이행실적 점검
총 계	210억 달러	

註: 1) 당초계획에는 없었으나 조기 집행되는 금액임.

2) 당초계획에는 35억 달러이었음.

3) 당초계획에는 23억 달러이었음.

3. IMF 프로그램 推進實績과 日程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했거나 예정 중인 프로그램은 다음 <표 6>과 같다. 여기에 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救濟金融의 도입과 國際的 信認度 회복을 위해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표 6> IMF 프로그램 추진실적과 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조 치 여 부
재정·통화	- 특소세·교통세 세율 조정 - 환율변동폭 제한 철폐, 콜금리 이자제한폭 확대 - 통화증가율 한도 설정 -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감면범위 축소 등 - 예산 4조원 절감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98년 1월 - 98년 2월 - 98년 2월
금융기관 구조조정	- 은행·증권사 부실채권 매입 확대 - 예금 원리금 전액 보장 - 부실 증권사 14개 업무정지 - 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확충 지원 - 금융기관 합병 등에 관한 인가기준 지원 - 13개 금융개혁법안 처리 - 2개 부실은행 정상화 • 2개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감독 강화하는 한편, 임원의 책임을 물어 퇴임시킴. • 98년 2월 중 은행감독원에 감사명령권 부여 - 나머지 은행의 자본확충계획서 제출 - 종합금융회사 정상화 • 14개 증권사 12월 30일까지 정상화 계획 제출 - 외국 금융기관 합작은행·현지법인 설립 허용	- 이미 조치·계속 추진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계속 추진 - 조치 중 - 이미 조치·계속 추진 - 이미 조치 - 조치 중 • 98년 2월 • 국회에 법안 제출 중 - 98년 5월 15일까지 - 조치 중(98년 3월 7일 까지 평가 완료) - 98년 3월¹⁾
무역·자본 자유화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55%로 확대(98년말 완전 폐지)²⁾ - 중장기 보증·무보증 회사채 시장 개방 - 기업 장기현금차관 98년 말까지 자유화 -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 4% 초과 매입 허용 -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00억달러 국채 발행 - 국내 단기금융시장 개방³⁾ - 민간기업 해외차입 자유화 일정 마련 - 무역 관련 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입국다변화제 폐지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조치 중

(표 6 계속)

구 분	세 부 내 용	조 치 여 부
수 출 촉 진	- 수출 관련 외환규제 완화 •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자유화 • 수출선수금 대응수출 이행기간 180일로 완화 •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수입기간 180일로 연장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 실행 - 수출기업 자금난 완화 대책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시 BIS 위험가중자산 편입 비율 10%로 축소 -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시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 확대 - 수출기업 대외신인도 제고 • 수출입은행장 서신 송부 등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 - 추진 중 - 추진 중 - 추진 중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구조 조정	- 법인세법, 조세법 개정 - 결합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의무화 - 기업 구조조정 촉진제도 개선 • 의무 공개매수제 완화, 출자총액 제한 예외 인정 등 - 주식시장 발전방안 마련 • 주식수요기반 확충, 공개 및 유상증자요건 완화 • 대기업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100%로 축소	- 이미 조치 - 이미 조치(2000년부터 의무화) - 98년 초 - 98년 상반기 • 98년 3월 말까지
노동시장 구조 개혁	- 근로자파견법 제정 - 고용보험제도 확충 • 고용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 확대 • 고용조정 지원 프로그램 확충 - 민간직업소개업 규제 완화	- 98년 2월까지 완료 - 98년 2월까지 완료 - 98년 상반기
기 타	- 국제사회 신인도 회복과 대미 홍보 강화 -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	- 계속 추진 - 계속 추진

註: 1) 본래 98년 6월이었으나 3월로 앞당겨짐.

2) 본래 50%로 되어 있었으나 12월 24일의 추가조치로 55%로 변경됨. 단, 개인별 투자 한도 50%는 그대로 유지됨.

3) 본래 개인별 투자한도를 발행물량의 30%까지로 제한했었으나 12월 24일의 추가조치로 완전 폐지함.

III. IMF 救濟金融 導入에 따른 影響

1. 巨視經濟的 影響

IMF측에서는 당초 巨視經濟 運用條件을 경제성장률 3.0%이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5% 이내, 경상수지 적자를 GDP의 1%(약 50억 달러) 이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율과 금리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거시경제목표의 실현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을 1~2%로 낮추고 경상수지를 30억 달러 흑자로 再調整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은 당분간 저성장이 지속된 후 구조조정을 마친 후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들어설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저성장은 內需部門과 輸出部門으로 나누어 볼 경우 내수부문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수출부문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수입수요가 위축됨과 아울러 환율의 상승에 힘입은 수출경쟁력의 제고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실업률의 증가와 함께 임금상승률도 억제되어 전반적으로 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이 2% 대를 넘지 못할 경우 실업률은 4.3~6.2%로 상승하여 公式失業者만 100~1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總需要의 萎縮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리는 通貨還收와 與信規制 등의 영향을 받아 高金利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 기업들에 대한 신인도 저하로 말미암아 몇몇 우량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이외에는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16~18%선의 고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리고 원貨의 對美달러換率은 1998년도 1/4분기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점차로 안정을 회복하면서 연평균 환율이 1,100~1,300원 대

에 머무를 전망이다.

2. 金融産業에 대한 影響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MF의 구제금융 제공에 따른 요구조건 중에는 金融改革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멕시코의 금융위기 시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¹²⁾, 최근 동남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時부터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다. 즉, IMF는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나 폐쇄는 물론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법률적·제도적 장치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은 가장 먼저 국내금융시장 개방의 확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외국인의 敵對的 M&A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M&A 허용 등으로 요약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금융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금융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금융산업은 빅뱅을 맞이할 전망이며, 동시에 업무영역의 자유화를 포함한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은 IMF의 요구에 부응하여 추진됨으로써 金融監督委員會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은행, 증권, 보험을 감독하는 金融監督院을 1999년 중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가. 金融市場 開放 擴大

증권관리위원회는 12월 10일 회의를 열어 「外國人の 有價證券賣買去來 等に 關한 規程」을 개정해 지금까지 일절 허용되지 않았던 외국인의 보증사채매입을 12월 12일부터 허용하기로 하고 종목당 투자한도를 30%, 1인당 한도를 10%로 각각 설정

12) 멕시코의 금융위기 시 IMF는 멕시코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부실채권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폐쇄 등과 같은 조건을 걸지는 않았다(<부표 2> 참조).

포커스

했다. 이와 함께 무보증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 허용하거나 한도를 확대, 지금까지 불허해온 외국인의 대기업 일반사채 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한도를 종목당 30%, 1인당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종목당 외국인 투자한도가 30%, 1인당 한도는 6%로 되어 있던 大企業轉換社債(CB)의 경우에도 한도를 각각 50%와 10%로 늘리기로 했다¹³⁾. 증권관리위원회는 아울러 대기업발행 新株引受權附社債(BW)와 交換社債(EB)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신규 허용기로 하고 종목당 한도를 50%로, 1인당 한도는 10%로 각각 정했다¹⁴⁾. 이밖에 종목당 50%와 1인당 10%로 정해져 있던 중소기업 CB및 BW, EB와 종목당 50%로 돼 있던 중소기업 일반사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한도를 아예 폐지했다. 이러한 채권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외국인 투자한도 증가액은 보증사채 19조 8천억원, 무보증사채 4조 2천억원 등 총 24조원에 이른다.

<표 7> 채권시장 개관

구 분	잔 액 (조원)	개 방 여 부		실 적 (억원)
- 회사채	81.1	- 개방	(38.9%)	2,302
• 보증	65.9	- 투자한도		22 ¹⁾
• 무보증	15.2	• 종목당 30%		2,280 ²⁾
		• 개인당 10%		
- 특수채(금융채)	89.0	- 개방 ³⁾	(61.1%)	-
- 국공채	37.6	- 개방 ³⁾		-
합 계	207.7			2,302

註: 1) 1997년 12월 12일부터 개방

2) CB 1,530억원 포함.

3) 1997년 12월 30일부터 개방

資料: 재정경제원 증권제도담당관실.

13) 증감원은 지난 11월 말 현재 외국인들의 투자가 가능했던 대기업 무보증 CB와 중소기업 무보증 CB 및 무보증사채의 상장금액 2조 8,737억원 가운데 외국인투자한도는 9,306억원이며 이 중 실제 투자액은 1,121억원으로 한도소진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4)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12월 11일부터 일반법인의 경우 종목당 26%에서 50%로, 1인당 한도는 7%에서 50%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법인은 종목당 21%에서 25%로 늘어났지만 1인당 한도는 1%로 유지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로 외국인의 투자가능금액은 23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어 정부는 12월 30일부터 국채, 특수채, 만기 3년 이내의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철폐하기로 하였다(<표 7> 참조)¹⁵⁾. 이로써 국내자본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렇게 단기금융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핫머니의 유출입으로 피해를 입을 범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율시스템을 變動換率制로 이행하는 조치와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¹⁶⁾.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외환-통화관리가 어려워지고, 기업과 금융기관을 포함한 우리 경제 전체가 심각한 換危險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위기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투기성 단기자본의 유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나. 金融産業 構造調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綜合金融會社에 대한 정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은행에까지 이를 전망이다¹⁷⁾. 은행의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BIS比率로 정해짐에 따라 대출심사가 엄격해지고 위험도가 높은 기업 및 자산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의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敵對的 引受·合併까지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및 외국금융기관의 금융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5) 본래 정부는 12월 23일부터 국공채, 특수채(금융채), 3년 미만의 단기회사채 등의 자본시장을 추가 개방함으로써 총 126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국내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16) 12월 16일부터 시행된 자유변동환율제는 미국 일본 등의 완전자유변동환율제와 달리 외환당국이 매일 매매기준율을 고시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라고는 할 수 없다. 매매기준율은 은행이 고객과 거래하거나 재정지출 규모를 환산하는 데 적용된다.

17) 당장 재정원은 12월 2일 오전 청솔, 경남, 고려, 삼삼, 신세계, 쌍용, 한솔, 향도, 경일 등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연말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12월 10일에는 예금인출이 많고 자금부족사태로 콜자금에 크게 의존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나라, 대한, 신한, 중앙, 한화 등 5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시켰다. 단, 이들 종합금융회사들은 경영개선계획서 심의 후 경영정상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축이 가능하나, 12월31일까지 증자나 합병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 8>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 주요 내용

분 류	내 용
합병허용범위	- 합병 • 동종간 합병, 이종간 합병, 동종과 이종간 합병 등 모든 형태의 합병을 허용. - 전환 •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 단, 투신, 투자자문사의 증권, 투신운용사로의 전환은 예외로 인정. • 동종 금융기관이 합병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발전단계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인 가 기 준	- 합병 후 금융기관의 당해 시장점유율(수신규모 또는 거래액 기준)이 30%를 초과할 수 없음. •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조화. - 합병 후 금융기관의 납입자본금 및 자기자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최저 자본금 이상이어야 하며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 최저자본금 이상으로 제한. - 인가절차는 내인가와 본인가를 거쳐야 하며, 내인가는 주총에서 합병을 승인한 이후, 본인가는 내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합 병 기 관 지 원	▲ 동종간 합병시 - 공통지원 사항 • 유상증자 우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상의 증자요건을 대폭 완화, 합병등기일로부터 증자비율 30% 이내 혹은 발행가 기준 3천억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유상증자를 추가로 허용. • 점포신설 우대: 해외점포 설치에 대한 인가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 중복 해외점포 정리시에는 진출경합지역의 해외점포 설치를 우선 배려하고, 지점설치가 제한되는 종금·상호신용금고에는 기존점포 외에 1개 지점의 신설을 허용. •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의한 부실채권을 우선 매입. - 개별지원 사항 • 전국 은행간 합병 또는 시중은행·지방은행간 합병 · 증권, 보험, 종금 중 1개를 자회사로 신설할 수 있도록 허용. · 융통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등의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 ⇒ 선도은행으로 육성.

(표 8 계속)

분 류	내 용
합 병 기 관 지 원	• 지방은행간 합병 • 서울·광역시에서의 지점설치 제한을 폐지. • 지방조성자금 환류제도의 적용을 배제. ⇒ 지방은행화 • 증권사간 합병 • 종금사 업무중 증권회사가 취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를 제외한 여타업무를 허용. • 생보사간·손보사간 합병 • 합병에 따라 지급여력기준(생보), 연간보유 보험료 총액한도요건(손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5년 이내에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 지방종금사간·지방보험사간 합병 • 전국 종금사, 전국 보험사로 인정해 본점 위치 제한을 폐지. • 기존 지방사 우대조치는 3년간 계속 유지. ▲ 이종간 합병: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지 아니하되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① 종금사 + 은행 ⇒ 은행 - 종금사 업무 중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 CMA 업무 등 어음관련 업무를 허용. ② 종금사 + 증권 ⇒ 증권사 - 종금사 업무 중 증권사가 취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를 제외한 투융자, 외자차입 및 전대, 채권발행, 리스, 금전신탁 외의 신탁, 외국환업무 등 종금사 여타업무를 허용. ③ 증권사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증권업무 중 유가증권위탁매매업무를 제외한 유가증권 매매, 위탁매매, 매매중개 및 대리,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주선 및 대리, 인수, 매출, 모집 및 매출의 주선 업무를 허용. - 자회사로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만을 영위하는 증권사의 설치를 허용. ⇒ 증권업무 능력의 배양을 통해 선도은행화 유도

資料: 재정경제원,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 1997. 12. 16.

먼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는 정부가 정한 독자방식이 아니라 IMF와 합의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내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을 100% 쌓은 뒤 내년 6월까지 현재의 最小資本基準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감독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¹⁸⁾.

<표 9> 기업 M&A 활성화 방안

항 목	내 용
의무공개매수제도	- 40%+1주로 낮추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의무를 없앴. - 회사정리·화의·파산신청기업, 부도유예협약적용기업, 은행관리기업 등 부실기업인수는 대상에서 제외함. - 2단계로 의무공개매수의 기준 주식총수인 25%를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 동시에 지분율 0.5~3%로 되어 있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 또 기업들이 다양한 경영권방어수단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자사주취득, 신탁계정의 의결권제한 등 관련제도를 보완.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 부실기업에 출자, 인수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인수 후 3년 뒤에는 이를 해소해야 함. 단, 이 기준은 부실기업을 인수한 기업이 동반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25% 이상인 기업에만 이 혜택이 적용됨.
외국인의 M&A에 대한 제한완화	- 98년말 종목당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현행 50%에서 55%로 확대. - 증권회사총지분의 50%이상은 내국인이 소유토록 한 증권거래법을 개정, 외국인의 국내증권사 M&A에 대한 제한을 내년초에 폐지. - 98년 중반까지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금융기관의 M&A도 승인해줄 계획.
공정거래법 적용	- 부실기업을 M&A하는 기업은 인수시점부터 3년간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資料: 재정경제원 산업경제과,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방안」, 1997. 12. 17.

이에 따라 정부는 IMF와의 합의를 이행하고 금융위기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합병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경쟁에도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12월 15일 「金融機關의 合併 등에 대한 認可基準 및 支援事項」(<표 8> 참조)을 발표하였다. 이 안의 골자는 은행, 증권, 종합금융, 보험 등 금융업종마다 일률적으로

18)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월 22일 경영이 부실해진 제일은행 및 서울은행과 일반은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은행결산지침 및 부실은행 경영개선조치를 의결했다. 즉,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경우 국내외 점포의 대폭 폐쇄와 경영진의 축소·개편 등을 포함한 내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달성할 수 있는 경영정상화계획을 내년 2월21일까지 은행감독원에 제출하고 2월말까지 승인 받아야 하며, 일반은행은 모두 내년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을 각각 1백%이상 적립해야 한다.

30여개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숫자를 줄이는 대신에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워서 경쟁력을 회복시킨다는 데 있다¹⁹⁾. 이 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합병기준은 원칙적으로 準則主義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부가 제한적으로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義務公開買受制度 등에 대한 개선책을 12월 17일에 발표하였다(<표 9> 참조). 이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실 금융기관을 포함한 부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석된다.

다. 金融機關 所有構造

1998년 4월부터는 외국 금융기관(은행, 증권)의 국내자회사 설립이 허용됨으로써 시장잠식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유지해온 所有持分限度 4%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고, 所有制限 限度를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앞으로 외국인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은행경영참여를 허용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은행 경영체제에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 소유지분한도는 현행 4%에서 현재처럼 4%까지는 자유롭게 취득하되 4~10%는 신고제로, 10%이상, 25%이상, 33%이상은 감독 당국의 별도 승인절차를 밟게 하는 독일식을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상임이사제도가 없어지고 5대그룹 제한규정도 폐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원은 1대 주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요구하며, 계열사 처분 및 내부잉여금 등 출처가 깨끗한 돈으로만 은행주식을 매집할 수 있도록 하고, 母그룹과의 대출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防火壁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무분별한 은행업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현지법

19) 이 방안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금융기관의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부실기관을 과감히 퇴출시키자는 IMF와는 이견이 생겨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8개 은행에 대해 현물출자하겠다는 안을 철회하여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를 전면 백지화하였다. 이는 IMF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물출자를 통한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방식에 대해 사실상의 '금융 국유화'라며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포커스

<표 10> 시중은행 대주주 현황

(단위: %)

은행명	대주주 소유지분
조흥은행	CITI BANK N.A(11.69)*, 태광그룹(5.47), 대한생명(4.48), 한국투신(4.18), 대한투신(3.84), 삼성(2.81), 교보생명(2.43), 쌍용(1.98), 퀴텔펀드(1.19)
상업은행	삼성(7.03), 한국투신(5.01), 퀴텔펀드(4.00), 교보생명(4.06), 대한투신(3.07), 국민투신(1.36), 방림(1.26), 이상순(1.03)
제일은행	대한생명(5.48), 삼성생명(3.96), LG화재(3.03), 한국투신(2.95), 교보생명(2.50), 대한투신(2.33), 현대해상(2.20), 퀴텔펀드(1.72), CMB-EURO(1.23), CMB-CAP(1.13), SG WARBURG(1.07)
한일은행	한국투신(4.86), 삼성(4.76), 대한투신(4.18), 교보생명(3.81), 대림산업(3.57), 윤병강(일성신약 3.03), CMB-CAP(3.00), CMB-EURO(2.51), LG그룹(2.47), 현대(2.00) FTCI(1.98), 국민투신(1.26)
서울은행	대한생명(4.57), 삼성생명(3.77), 교보생명(2.44), BEAR STEARNS CO.(2.09), 아산사회복지재단(1.99), 대한투신(1.92), 동아건설(1.50), 이상순(1.46), 동국제강(1.27)
외환은행	한국은행(47.88), 한국투신(2.02), 퀴텔펀드(1.94), 대한투신(1.51), GARTMORE (1.27), 김대진(1.21), 국민투신(1.09), 삼성생명(1.05)
국민은행	정부(17.08), BANK OF NEW YORK(13.86)*, 한국투신(6.24), 대한투신(3.80), 국민투신(2.41), 쌍용(1.96), 교보생명(1.09)
신한은행	대한투신(3.92), 한국투신(3.58), 삼성(3.36), 국민투신(1.13), 선한일전기(1.09)
한미은행	BOA(18.56), 대우(18.56), 삼성(18.56), 대한전선(4.00), 한국유리(1.72), 동일방직(1.72), 퀴텔펀드(1.48), 동서식품(1.05)
동화은행	서울특별시 곡산군민동화은행주식인수조합(1.99), 인천광역시 황해도민(1.80)
동남은행	한국투신(1.58), 대한투신(1.40), 강병중(1.04), 이영로(1.01)
대동은행	박창호(1.87)
하나은행	교보생명(6.79), 동원증권(5.80), 조석래(효성 5.16), 우전석유(진로 3.51), 삼성생명(3.42), 인천세광병원(3.40), 노무라증권(3.12), 우상기(2.65), E.M.WARBURG(2.50), 대한투신(2.09), 쌍용양회(1.52), 베어링증권(1.47)
보람은행	구본무(LG 7.58), 박용오(두산 7.46), 이웅렬(코오롱 5.80), 고흥명(5.69), 두산신협(3.88), 대한투신(2.64), CMB-TEMP DEV(2.23), 한국투신(1.91), KOREA-EURO(1.73), 국민투신(1.38), CMB-TEMP EM(1.37), 홍영철(고려제강 1.28), 퀴텔펀드(1.15)
평화은행	항만운송협회(7.69) 포철(7.33) 삼성생명(1.28)

註: 1996년말 현재. *표는 DR발행분, 연기금 제외.
資料: 은행감독원.

인 및 합작은행, 국내은행 설립신청자에 대해 최저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결정, 이를 충족시킨 금융기관 및 기업에 한해 최종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 業務領域調整

금융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어 제시됨으로써 금융산업 업무영역조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국내금융산업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욱 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업무영역의 자유화 속에 종합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國際的 整合性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국내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1> 금융산업 구조개편 후의 금융산업 구조

가 칭		주거래자	주요업무
은행	선도은행 (은행+은행) (은행+증권)	· 국내우량기업 · 외국유수기업	· 주식연계증권 · 외화표시 Bond · CP 등의 발행주선 · 인수 · Project Financing · 외환업무, 파생금융상품
	일반은행 (은행+종금)	· 대기업 · 중견기업	· 원화 및 외화대출 · 어음할인 · 주식 · 회사채 등의 발행주선 · 인수
	지역은행 (지방은행, 금고)	· 중소기업	· 일반대출 및 어음할인 · 리스 · 팩토링 · 할부금융 · 경영컨설팅 · 세무상담 · 기술정보 알선 · 채권회수 대행 등
Investment Bank (증권+종금) (증권+증권)		· 기업 · 가계 · 기관투자자	· 유가증권 위탁매매업무 · 기업에 대한 모든 금융서비스 (예금 및 지급결제기능 등 제외)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가계 · 기업	· 생명보험업무 · 손해보험업무 · 제3영역(상해 · 질병 등) 공동취급
여타 금융기관 (증권, 종금, 투신, 금고, 여신전문기관 등)		· 기관별로 특화	· 특정업무에 전문화하거나 영업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 유지

資料: 재정경제원

금융산업 업무영역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제시된 안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3대 축이 유지되면서 개편될 것이다. 이렇게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子會社方式을 통해서만 진출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각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은 훨씬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경우 주식 및 회사채의 발행·인수 등의 업무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게 되고, 증권회사의 경우는 투자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의 경우는 이번 대책에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신탁업무 등과 같은 영역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⁰⁾.

IV. IMF 時代의 保險產業 環境變化

1. 保險 需要的 側面

IMF구제금융시대에 나타날 보험시장적인 변화로서 가장 큰 것은 保險需要的 鈍化이다. 지금까지 보험수요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왔으나, 實物經濟의 침체뿐만 아니라 心理的인 萎縮까지 겹쳐 상당한 수준의 위축이 예상된다²¹⁾.

가. 生命保險

保障性保險의 경우 실업의 증가와 임금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신계약 뿐만 아니라 기존계약의 유지도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기존 계약 중에서 보장금액이 작은 보장성 보험에 비해 보장금액이 큰 보장성 보험의 解約 또는 失效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 이러한 안은 이미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되어 확정된 바 있다.

21)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태국의 경우에도 경기침체로 인해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작년의 17% 성장에서 올해에는 9.9% 성장으로 낮춰질 것으로 태국생명보험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보험료도 1996년 546억 바트에서 600억 바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貯蓄性保險의 경우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해약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대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일시납 보험료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속에서 상대적으로 대해보험회사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전체적인 보험수요의 위축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된 기존의 보험상품을 대체하는 상품의 개발과 관련된다. 즉, IMF는 저성장의 유지와 함께 고금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1~2년간은 高金利 體制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보험상품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기에 정해진 기준금리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근의 고금리에 대응한 상품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상품경쟁력이 낮아져 보험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고 수익률 경쟁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他金融機關으로의 資金移動도 예상된다.

團體保險의 경우는 기업의 도산 등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에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동기가 대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자금난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해약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도입되는 退職年金保險의 가입률이 어느 수준까지 제고되느냐에 따라 근소하나마 호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損害保險

長期保險은 저축성 보험을 중심으로 그 동안 손해보험의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은 이유로 해약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대해보험사를 중심으로 一時納保險料의 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전년에 비해서 해약이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고금리 대응상품의 개발 및 보험소비자의 니드를 충족하는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대응할 경우 본래의 수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自動車保險의 경우는 신차증가율 감소,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율의 감소, 소형차 비중의 증가 등의 요인이 겹친 데다 責任保險만 가입하는 차량의 증가로 전년도 수

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保證保險의 경우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있는 영향을 받아 가게와 기업의 대출이 축소될 전망이어서 需要減少가 예상된다.

火災保險의 경우는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을 전망이나, 特種保險의 경우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저하할 것으로 보인다.

海上保險의 경우는 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輸出增加率이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수요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換率變動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 資産運用의 側面

현재와 같이 金融指標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운용상의 곤란함은 가중된다. 현재로서는 금리, 주가지수, 환율, 부동산 가격 등에 대해 정확한 전망을 하기가 어려운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어느 시기보다 자산운용의 곤란함이 크다 하겠다. 부동산 가격은 자금조달에 압박을 받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不要不急한 부동산 매각에 나서고 있으므로 토지가격을 중심으로 하락하겠으나, 아파트 시세는 분양가 자율화와 맞물려 혼조가 예상된다.

내년도에 금리는 高金利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株價指數는 현재가 최저수준이라는 판단에서 볼 때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리고 환율도 實效換率이 960 980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대체로 1,100 1,300원 대 내외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1997년 9월 말 현재 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의 경우는 대출금의 비중이, 손해보험의 경우는 유가증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경우에서든 유가증권에서 주식의 차지하는 비율이 높는데, 최근의 주식 시장 붕괴로 인해 큰 규모의 평가손을 낳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되므로 7 8%에 이르는 부동산자산으로부터도 평가손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향후 보험회사들이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평가손이 생겨서 재무건전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IMF에서 요구하고 있는 國際會計基準(IAS)에 따를 경우 換差損이나 금융기관 有價證券 評價損失의 회계처리 등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화되어 보험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에 투자해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평가손실도 전액 당기 실적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평가손을 입을 경우 곧바로 재무건전성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표 12>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추이

(단위: %)

		생명보험				손해보험			
		'96 4/4	'97 1/4	'97 2/4	'97 3/4	'96 4/4	'97 1/4	'97 2/4	'97 3/4
투 자 대 상 비 중	현·예금	10.7	10.6	10.5	10.0	19.9	20.4	20.6	21.4
	금전신탁	4.4	5.1	5.7	6.4	-	-	-	-
	유가증권	26.9	25.7	26.1	26.5	31.1	30.4	29.5	29.8
	국공채	6.7	6.5	7.2	7.5	9.3	10.1	9.7	10.1
	회사채	6.8	6.6	6.8	6.8	7.0	6.0	5.7	5.9
	주식	12.6	12.2	11.6	11.3	14.1	13.5	13.3	12.6
	대출금	44.9	45.9	45.0	44.4	22.1	22.9	23.2	23.0
	부동산	7.4	7.2	7.3	7.4	8.5	8.6	8.4	8.3
	기타	5.7	5.5	5.4	5.3	18.4	17.7	18.2	17.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산운용율		94.3	94.5	94.6	94.7	81.6	82.3	81.8	82.5
수익률	총자산	9.6	11.3	9.6	9.5	10.0	10.5	9.3	9.9
	운용자산	10.2	11.9	10.2	10.1	8.1	8.5	7.6	8.1

註: 1) 曆年 기준임.

2) 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은 기별 누적치의 비중임.

資料: 보험연구소, 『보험동향』, 1997년 가을호.

3. 保險制度的 側面

보험제도적 측면에서는 재무건전성 감독, 보험산업 구조조정, 업무영역 조정, 비경쟁적 요소의 제거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가. 財務健全性 監督의 強化

이번 IMF가 요구한 금융개혁의 핵심적 사항 중의 하나는 金融機關의 財務健全性基準 強化였다. 현재로서는 보험산업에는 은행의 경우처럼 BIS기준과 같은 국제적 표준으로 정해진 재무건전성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지급여력 기준과 동떨어진 새로운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명보험산업에 대해서는 支給餘力制度가 운영되고 있으나, 손해보험산업에 대해서는 보유(capacity) 중심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만간 지급여력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보험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이 전반적인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 건전성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강화해간다는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가증권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평가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향후 회계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²²⁾. 이 경우 有價證券投資 評價損을 회계상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바를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생겨날 수 있다. 또한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유가증권의 평가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평가손이 100%반영될 경우 責任準備金制度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상 평가손을 반영하게 되면 재무적 건전성이 향상되므로 책임준비금제도는 다소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22) 증권감독원은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기관의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의 회계처리기준이 각 중간감독기관의 감독업무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각 업종간에도 차이가 커 금융업 전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입각하고 있다.

<표 13> 주요국의 유가증권 평가손익 처리방법 비교

	미 국	영 국	일 본
생명 보험	▲SAP기준 - 적립한도에 달할 때까지 부채계정의 자산평가 준비금에 적립하며, 적립한도에 도달한 후 평가익은 자본계정의 잉여금에 편입함. - 금리변화에 따른 채권매각손익은 그 채권의 본래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연상각하고, 연도말의 미상각잔고가 금리유지 준비금이 됨. ▲GAAP기준 - 미실현투자이익 및 손실은 각각에 관련되는 법인세 공제 후의 금액으로 주주지분의 별도항목으로서 대차대조표 대변에 표시함. 따라서 미실현 이익 또는 손실은 만기 또는 판매시까지 손익에 계상되지 않음. - 가격하락이 일시적이지 않다고 생각된 평가감액은 실현손실로서 표시. - 매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	- 상장유가증권의 경우 • 시장가액으로 평가하는 시가법을 채택 - 비상장유가증권의 경우 •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시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주당평가이익의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주식수익비율(PER)을 곱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 • 비상장주식을 1년 이상 3년 미만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회계 연도의 주당평가이익 또는 금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채권은 직접 양도한 경우 정당하게 지불되는 금액으로 평가함.	- 상장주식은 저가법, 비상장주식은 원가법을 적용하나, 특별계정에 속하는 상장주식은 시가법으로 평가 가능함. • 상장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법규정에 관계없이 대장대신의 인가를 받아 당해주식을 시가 평가할 수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 평가익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 채권의 평가방법은 상장채권은 저가법, 비상장채권은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음.

(표 13 계속)

	미 국	영 국	일 본
손해 보험	- 채권의 경우 원리금이 충분히 보증되어 채무불이행이 없는 채권은 균등이율 평가법으로 평가하고, 기타 채권은 NAIC에서 정하는 시가와 균등이율 평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함. - 주식 중 보통주는 시가로 평가하며, 일부상환가능 우선주는 원가법, 기타 우선주는 시가로 평가함.	- 상장유가증권의 경우는 시가법 채택. - 비상장유가증권 중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은 시장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3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주당 평균이익에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주가수익비율을 곱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평가함.	- 유가증권 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채 기타 채권(전환사채는 제외)은 원가법 또는 저가법으로 평가함. • 이외의 상장유가증권은 저가법을 적용함. - 자회사 및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유가증권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금전신탁(유가증권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독운용재산에 한함)에서 신탁재산으로 운용되는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저가법으로 평가함.

資料: 김규승 외,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7. 3.

나. 保險産業 構造調整

보험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은 타금융산업의 경우처럼 IMF프로그램 하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 保險産業政策의 延長線上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재무건전성 기준과 회계기준이 강화될 경우 부실한 보험사들에 대한 M&A가 부각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이미 지급여력 부족으로 경고 및 제재조치를 받은 17개 회사를 대상으로 M&A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손해보험의 경우도 최근의 기업 연쇄도산으로 부실채권의 규모가 커진 보증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보증보험사의 경우 향후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기업의 도산이 많아지면서 부실채권의 규모가 더 커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올해 ENT제도의 폐지와 함께 「保險會社 設立許可基準」이 고시됨으로써 내년부

터는 정부가 5대 대기업집단의 제한적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支給餘力을 채우지 못하는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生損保 相互兼營이 허용됨으로써 생명보험회사의 손해보험업 진출이 시도되면서 영업규모가 계속 줄어드는 소형 손보사를 대상으로 활발한 M&A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지난 12월 15일에 「金融機關 合併 등에 대한 認可基準 및 支援事項」이 고시됨으로써 보험산업내 뿐만 아니라, 異種 금융기관간에도 인수·합병이 시도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산업 구조조정은 시장개방이 거의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보험회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大型化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산업 健全性 確保라는 두 목적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세계 6대국이라 할지라도 경쟁력 있는 대형보험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규모에서만 아니라 보험기법의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대형보험회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의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5대 그룹에 대해 부실보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생명보험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룹의 핵심사업분야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먼저 서두름으로써 보험회사를 인수할 資金餘力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보험기업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친 先投資가 필요한데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투자할 충분한 자금을 가진 개인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로, 은행이 부실보험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BIS基準을 맞추어서 운영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당장에는 인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로, 부실보험회사와 부실보험간 또는 우량보험회사와 부실보험회사간의 합병을 상정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는 不實化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후자의 경우도 우량보험회사마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業務領域 調整

異業種間의 引受·合併이 적극 권장되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업무영역구분이 크게 무의미해짐에 따라 조기에 업무영역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업무영역 조정이 조기화될 경우 대기업 집단에 속한 보험회사들과 대해보험회사들의 경우 綜合金融化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보험회사들의 경우 은행에 대한 경영참여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투자신탁운용, 선물회사 등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持株會社方式의 綜合金融그룹化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각 개별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경영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라. 競爭의 深化

이미 ENT제도의 폐지와 가격자유화로 경쟁을 증시하는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大企業集團의 保險業 進出 禁止의 早期解除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DB가 손해보험가격의 완전자유화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1999년부터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더욱 더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나 과당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의지가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V. 保險會社の 對應方案: 價値創造 經營戰略

IMF관리경제체제가 유지됨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저성장 경제구조로의 전환, 금융불안의 지속, 시장개방 및 업무영역조정에 따른 대내외적 경쟁의 심화,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 산업내외에 걸친 인수·합병, 새로운 기술 및 제도의 도입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 만들어내는

경영환경에서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규모 위주의 外形成長보다는 효율을 도모하여 收益性を 중시하는 경영전략, 즉 가치창조(value creation)를 중시하는 경영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이를 ‘價值創造 經營戰略’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한다.

<표 14> IMF시대의 보험환경

금융개방의 확대: 금융불안정성 심화, 금융기관간 경쟁심화
 금융시장의 유동성 심화: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금융산업 구조조정: 금융기관간 인수·합병 촉진
 저성장 경제: 보험수요 둔화
 물가상승: 비용의 상승
 금융개혁: 건전성 기준 강화, 업무영역 조정
 기업도산의 증가: 부실채권의 증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재무건전성 약화

1. 價值創造 經營戰略의 概要²³⁾

기업의 존재 의의는 附加價値를 創出해내는 데 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창출해내는 미래의 부가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企業의 價値를 極大化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부가가치의 크기가 커야 한다. 둘째, 큰 부가가치가 오래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위험 및 재무위험이 감안된 자본비용이 작아야 한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이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고객을 명백히 정의하고, 생산·판매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는 장기적이고도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안을 강구해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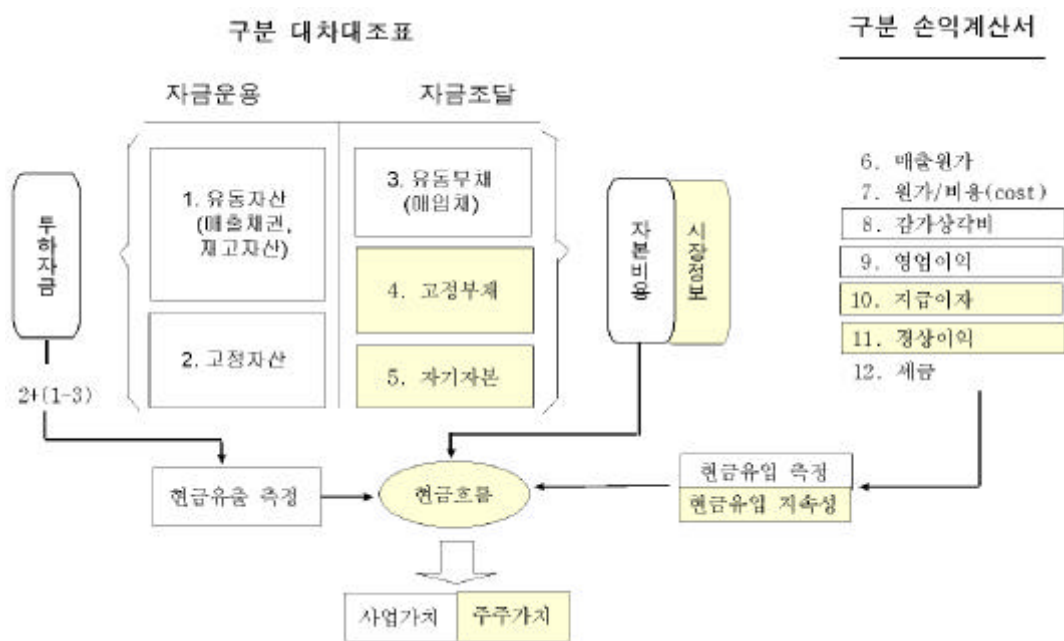
23) LG경제연구원, 『월드 베스트 프랙티스 33: 초우량기업을 찾아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다. 둘째, 소요자원을 최소의 자본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원동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치창조경영을 위해서는 가치혁신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價値革新은 생산성 향상이나 부가가치는 비용을 낮추고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높아진다는 원리에 바탕을 둔 기업의 原價節減技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기능을 얻도록 하는 생산현장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찾아내 적용하는 방식이다. 원가절감과 제품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상품개발에서부터 설계—생산유통—서비스 등 모든 경영활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가치의 극대화라는 경영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cash flow)'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에 걸친 회계정보의 조합이 요구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측정하는 現金流入額을 측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부가가치 창출에 투하된 경영자원의 소요액을 측정하는 現金流出額을 추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資本費用을 측정하는 단계이다.

[그림 2] 기업가치 평가절차



이렇게 하여 현금흐름이 파악되면 기업의 가치는 다음의 두 가지 지표에 의해 평가된다.

첫째, 投資資本利益率(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이다. 투자자본이익률은 현금유입액을 현금유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둘째, 經濟的 附加價值(EVA; Economic Value Added)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투자자본 이익률에서 가중 평균 자본비용률을 차감한 수치에 투자자본액(현금유출액)을 곱하여 계산된다. 즉, 稅後 純營業利益에서 자본비용을 공제한 값이다²⁴⁾. 그런데 경제적 부가가치는 측정 당해연도의 성과의 크기를 나타내줄 뿐이므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기업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매년 창출되거나 일정 비율로 성장을 계속한다는 가정 하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할인율로 하여 할인계산하고 합산함으로써 현재가치화된 경제적 부가가치가 기업가치의 증가분으로 계산되어 타사와 비교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EVA개념에 입각하여 보험회사를 경영할 경우 수익성을 향상시켜서 株價를 높임으로써 M&A에 대해 최상의 방어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 價値創造 經營戰略의 適用

IMF 시대에는 보험수요가 크게 위축되고, 건전성 기준과 회계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인수·합병이 촉진될 것이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한편으로는 앞서 지적했듯이 사업조직, 언더라이팅 및 보험판매,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內實을 기하는 것이 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부실화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價値創造 經營戰略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4) 경제적 부가가치(EVA) = 세후 순영업이익 - 투자자본×가중평균자본비용
단,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자기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인 자기자본비용을 조달금액으로 가중평균한 비용임.

가. 事業組織의 革新

사업조직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먼저 核心力量이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그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채 수익률이 20~30%대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영업을 통해 그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機會費用까지 감안할 경우 회계상 순이익을 낸다 하더라도 EVA는 마이너스가 되어 보험회사의 가치는 낮아진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비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그를 위해 사업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핵심역량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하거나 수익성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閉鎖, 統合, 또는 外部調達(out-sourcing) 등의 방법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하다면 引受·合併과 戰略的 提携와 같은 방법을 통해 시너지효과와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持株會社의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그것을 통해 회사조직의 통합과 확장에 있어 신축성을 확보하여 주어진 자원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다른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에 비해 競爭優位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업조직을 재편성함과 아울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増資를 통해 부실화된 부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영업 및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營業收支를 개선해 가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과의 引受·合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IMF체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기하는 한편으로 보험회사 國際化 戰略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화 전략은 IMF체제하에서 국내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것이므로 해외에 눈을 돌려 영업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21세기는 모든 국가의 보험시장이 개방체제로 전환될 것이므로 글로벌한 영업체제를 갖추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 商品差別化와 集中化

가치혁신전략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差別化優位(differential advantage)를 확보하는 것이다²⁵⁾. 차별화 우위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을 서비스, 품질, 기능, 디자인, 상표이미지 등의 면에서 차별화 함으로써 경쟁 기업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회사별로 차별화 되지 않은 비슷한 종류의 많은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해왔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지금까지 상품개발과 가격이 규제되고 수요의 신장세가 컸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상품 및 가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는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차별화를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顧客의 選好가 항상 변화함으로써 수명이 다한 상품이 생겨나고 그를 代替할 商品開發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이다²⁶⁾. 특히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보장을 위한 상품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복합상품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²⁷⁾. 또한 IMF 체제하에서 금융개혁이 빠르게 진전되어 兼業化가 早期化될 전망이므로 은행 또는 신탁회사 등의 타금융기관과 연계하여 複合商品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의 변동이 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신상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UL(Universal Life)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이다²⁸⁾. 확정금리부 보험상품의 경우는 현재의 고금리를 근거로 높은 수익률을 제

25) 포터(M. M. Porter)는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비용 우위(cost advantage)와 차별화 우위(differential advantage)를 들고 있다.

26) 지금까지 고객들은 이미지에 휩쓸려 상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상품에의 접근의 용이성, 가격의 저렴도, 욕구의 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할 것이다.

27) 복합상품의 개발은 IMF관리하에 급격히 진행될 금융개혁의 과정에서 겸업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도 더욱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8)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에서 UL도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VL도입이 1998년부터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UL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보험료가 보장과 저축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로, 실세금리를 반영한 경상수익률로 적립금을 부리하여 수익률의 제고와 타금융권과의 경쟁이 가능하다. 셋째로, 매년 연차보고서, 납입내역서, 잔고내역서 등의 제공으로 입·출금 내역 및 적립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금리가 하향할 경우에는 심각한 금리리스크에 처해 보험회사의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UL을 도입할 경우 단기적으로 고객의 고금리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하락시 발생할 수 있는金利리스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의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기존에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상품들에 대한 고객 반응, 판매실적, 비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상품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방만하게 개발되어 있는 상품의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保險會社別 主力商品을 선정하고 보험회사의 이미지와 함께 통일시켜갈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규모에 관계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소형사들의 경우에는 特化分野를 정하여 틈새시장을 적극 확보해야 할 것이다.

다. 언더라이팅 및 販賣

IMF 체제하에서 내실있는 경영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험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와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언더라이팅의 측면과 보험상품 판매의 측면에서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에 입각한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언더라이팅의 측면에서는 리스크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와 관련한 세분된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며, 그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 생겨날 손실의 화폐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리스크別 差別化가 가능해지면 언더라이팅시 그에 적절한 보험가격을 대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損益을 중시한 언더라이팅이 가능해짐으로써 보험영업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보험상품 판매의 측면에서는 販賣채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보험회사별 판매채널 활용추세를 보면 新技術을 활용한 판매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는 인터넷판매 등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도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TM 등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고무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로 기존에 활용해오던 판매채널과 새로운 판매채널을 어떻게 調和시켜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판매채널들은 고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顧客의 選好에 맞는 상품이 제공할 수 있을 때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떠한 판매채널을 활용하든 중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편과정에서 既存의 營業組織의 위축이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고객의 선호를 중심으로 세분화되어 가는 시장별로 판매채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이며, 그러한 대응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고객 정보에 기반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금융개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겸업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에는 綜合的인 金融諮問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 資産運用

앞의 제IV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收益率을 極大化해야 하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評價損을 最小化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를 종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有價證券市場의 趨勢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유능한 펀드매니저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게 되므로 그러한 움직임의 추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러한 人材를 養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한 사람의 유능한 펀드매니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재양성을 하되 단기적으로는

投資專門金融機關으로부터 수혈을 받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투자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의 경우 거대한 규모의 운용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절한 투자운용조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은 능력있는 펀드매니저들이 보험회사에 진출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성하여 투자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히 별도의 資産運用 專門 子會社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투자실적이 양호한 투자기관과 業務提携를 맺어 자산운용을 위임하는 방안까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겸업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업무영역 조정을 통해 信託業務를 취급함으로써 자산운용 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結論

IMF 救濟金融의 도입은 단순히 외화를 차입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IMF 주도하에 한국경제가 국제적인 표준과 규범 하에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도 1980년대 후반 이래 계속되어온 대외개방으로 개방도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 경영상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財務健全性基準, 會計基準, 非競爭的 要素의 除去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內實있는 經營戰略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國際化 戰略을 마련하여 글로벌한 영업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보험수요가 축소되고 있어 더 이상 외형성장 경영전략의 유용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과 회계기준 등이 강화된 상황에서의 외형성장 경영전략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현저히 낮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화 전략은 글로벌한 무대를 상대로 한 보험회사의 영업기반을 넓혀줄 것이다.

특히 언더라이팅, 보험영업, 자산운용 등의 분야에서 과거와는 다른 사고에 입각한 대책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즉, 리스크를 철저히 반영한 언더라이팅, 효율적인 판매 채널 구축,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자산운용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보험산업에 대한 安定性 및 信賴性을 확보함과 아울러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준비해야 한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포커스

<부표 1> IMF와의 협상일지

월 일	협 상 내 용
11월 16일	강드쉬 IMF 총재 극비 방한, 강경식 부총리와 면담
20일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 티모시 게이드너 미국 재무부 차관보 방한, 임창렬 부총리 면담
21일	정부 IMF에 정식 자금지원 요청
23일	재정경제원 IMF 협의단 편성(단장 강만수 차관). 토머스 벨리노 통화·환율 팀장 등 IMF 실무 협의단 1진 도착
24일	IMF 실사·협상 착수
25일	IMF 협의단 국내 금융기관 부실상태 집중 조사
26일	휴버트 나이스 IMF 실무협의단장(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등 실무협의단 도착
27일	임창렬 부총리-나이스 단장 비공개 협의.(최대한 조속협상 마무리와 자금지원에 합의)
28일	임창렬 부총리 일본 방문, 마쓰즈카 히로시 대장상 면담. 클린턴 미국 대통령 긴급자금 관련 김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
29일	정부-협의단 심야 협상
30일	협상 잠정 타결
12월 1일	새벽 임창렬 부총리 협상원칙 합의 발표. 임창렬 부총리-강드쉬 총재 전화통화 합의 난항, 재협상 착수(힐튼호텔)
3일	협상 완전 타결 뒤 임창렬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 총재 긴급자금 요청 위한 정책의향서에 서명

<부표 2> IMF 구제금융 양허안

	태 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지 원 규 모	40억 달러 (총 179억 달러)	100억 달러 (총 330억 달러)	178억 달러 (총 528억 달러)
거 시 경 제 정 책	- GDP성장률 3.5% - 물가상승률 5.0% - 외환보유액 250억 달러 - GDP 대비 경상적자 3% 등을 98년까지 달성 - 예산 11.8%(29억 달러) 삭감 - 부가가치세율 인상: 7% → 10% - 일부 관세 인상(사치품: 2 10%, 자동차수입관세: 80%) - 공기업 자본지출의 통제 - 공공투자 삭감	- 경상수지 적자 2년내 GDP대비 2.2%로 축소 - 성장률 하향 조정 - 한 자리수 물가상승률 유지 - GDP 대비 1%이상의 재정흑자 달성	- GDP 성장률 목표를 -2%로 하향 조정 - 재정흑자규모를 GDP의 4.4% 수준으로 조정 - 1996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전년도의 95% 수준으로 삭감 - 최저임금 인상률을 10%로 억제 - 부가가치세율 인상: 10% → 15% - 전기요금 20% 인상 - 가솔린 가격 35% 인상 - 공공투자 삭감
금 융 정 책	- 58개 시중 금융기관의 업무 정지 - 이 중 30개 기관이 폐쇄됨.	- 시중 16개 은행 정리	- 철저한 변동환율제와 폐소화 선물시장 설립을 통해 인위적인 환율조작 차단 -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달성 독려 - 국내신용한도를 1백억 폐소로 설정 -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 변제기한을 5 12년간 연장
수 출 및 산 업 정 책		- 98년 1월 이후, 국영기업들의 농산물 수입 독점 철폐 - 시멘트 가격 상한 철폐를 통해 외국인의 시멘트 투자시설 유도 - 국민차 사업조정: 2000년까지 국내부품 사용 규정 철폐 - 석유화학 및 철강수입관세 유지	- 금융부문의 복구와 민간투자 촉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집행 - 발전소, 공항, 항만, 통신 등 민영화

資料: 현대경제사회연구원, 『IMF 구제금융의 영향과 대응 과제』, 1997. 11. 27, p. 22.

<부표 3> IMF 구제금융 이후의 실물경제 변화

	멕시코(95년 2월 1일)	태국(97년 8월 20일)	인도네시아(97년 11월5일)
수출	96년까지 대폭 증가 • 수출증가율: 14.2%(94)→40.3%(95)→98.2%(96)	큰 폭의 증가세 지속 예상 • 수출증가율: 20.0%(97)→30.0%(98)	증가세 예상 • 수출증가율: 9.8%(97)→20.0%(98)
소비 및 투자	95년중 크게 위축 • 소비증가율: 3.7%(94)→-9.5%(95)→2.3%(96) • 투자증가율: 8.1%(94)→-29.0%(95)→17.7%(96)	위축 전망 • 소비 및 투자증가율: 6%대(96)→0%대(97-98)	상당폭 위축 예상 • 소비증가율: 9.0%(97)→3.3%(98) • 투자증가율: 7.0%(97)→1.0%(98)
경기	95년중 크게 침체 • 경제성장률: 4.5%(94)→-6.2%(95)→5.1%(96)	큰 폭으로 위축 예상 • 경제성장률: 6.7%(96)→1%대(97-98)	상당폭 위축 전망 • 경제성장률: 6.8%(97)→4.8%(98)
경상수지	단기간에 개선 • GDP대비 적자 비중: 7.8%(94)→0.3%(95)→0.6%(96)	빠르게 개선 전망 • GDP대비 적자비중: 4.3%(97)→2.0%(98)	빠르게 개선 전망 • GDP대비 적자 비중: 3.3%(97)→1.4%(98)
물가	큰 폭으로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 7.0%(94)→35.0%(95)→34.4%(96)	완만한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 6.7%(97)→8.0%(98)	완만한 상승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 7.2%(97)→9.8%(98)

註: 태국 및 인도네시아의 경제전망은 미 메릴린치 증권사의 전망치임.
 資料: 매일경제신문사, 『주간 매경』, 12월 1일 호.

保險會社の 子會社 進出戰略*

<目 次>

- I. 序論
- II. 保險會社の 子會社設立의 必要性
- III. 子會社 進出의 法制的 基盤
- IV. 子會社 進出戰略
- V. 子會社 進出 活性化를 위한 課題
- VI. 結論

I. 序論

세계적으로 볼 때 保險會社の 子會社 保有를 통한 업무수행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 하겠다. 자회사의 보유는 保險고유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分社化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의 다각화를 위한 收益事業分野로의 진출 및 金融部門進出을 통한 綜合金融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도 있다. 자회사의 보유동기는 회사의 경영이념과 전략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保險會社가 자회사를 통한 經營效率化를 추진하는 것을 각 나라가 保險業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外國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則적으로 同

* 본 논문은 保險연구소 연구조정팀 정봉은 팀장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논문의 내용은 保險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힌다.

一會社の 주식을 10% 이상 所有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보험사업자의 經營의 健全성과 그 財産運用의 效率性 增進 기타 保險加入者の 利益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例外的으로 재경원장관의 承認을 얻어 非上場 株式 취득을 통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 동안 자회사진출의 니드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자회사에 대한 포지티브적인 규정이 없었던 점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를 통한 경영효율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國際化, 自由化 및 金融의 兼業化時代에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한 業務多角화와 業務效率化를 추진하기 위한 戰略과 이를 위해 整備해야 할 法制的 課題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保險社の 子會社設立의 必要性

1. 附隨業務의 效率的 遂行

보험회사의 固有業務는 保險의 引受와 資産의 運用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여 보험료로서 수입한 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자산의 운용은 이미 보험료산출상에 있어서 豫定收益率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수익을 이상으로 效率的으로 資産運用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고유업무라 하겠다. 따라서 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자의 危險을 調査하거나 契約資料를 전산처리하거나 사옥 등의 不動産을 管理하거나 하는 업무는 固有業務 내지는 고유업무에 附隨하는 업무라 하겠다.

하지만 부수업무를 너무 包括的으로 해석하면 자산운용상의 모든 업무 예컨대 주식운용, 채권운용 등까지 포함되어 증권사 업무나 투신사 업무까지 부수업무로 포함된다고 해석되어 지나치게 廣範圍한 業務를 부수업무로 판정해 버리는 오류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는 부수업무로서 容認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附隨業務의 範圍를 열거적으로 예시하여 인정된 부수업무를 자회사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물론 부수업무를 반드시 자회사를 통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保險契約者에 대한 綜合生活保障 니드에 副應

보험회사가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便益 및 利益増進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보험계약자의 健康·福祉와 관련해서 계약자의 綜合的인 生活保障니드를 충족시켜 주는 업무를 수행할 필요도 있다. 계약자(잠재적 계약자를 포함)는 자기의 건강을 관리하여 신체상의 위험을 줄이고 장수하고자 하는 니드가 있고 보험회사도 이러한 健康増進을 통하여 계약자의 死亡危險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료노인홈이나 유료노인홈의 입주자에 대한 급식업무 등은 계약자의 福祉니드에 부응하는 것이라 하겠다.

3. 金融빅뱅의 進展

금융의 兼業化의 진전에 따라 보험·은행·증권업 모두 시너지효과가 있는 타금융업을 자회사 방식 등으로 영위하여 綜合金融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本業의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타금융서비스도 제공하여 收益機會를 捕捉하려고 한다. 따라서 고객별 종합적인 금융마케팅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금융기관보다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상담하고 제공받으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때문에 금융의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보험도 보험 주변의 다양한 금융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子會社進出의 法制的 基盤

1. 子會社の 定義

일반적으로 자회사라 함은 의결권주식을 50% 초과보유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支配權을 行使할 수 있어야 자회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商法에서는 타회사 발행주식의 40%를 초과보유시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상법 제342조제3항). 현대사회에서는 株式의 分散으로 인하여 40% 정도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이 일반공개되어 분산정도가 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40% 이하라도 실질적으로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자회사에 대한 定義는 株式公開와 分散程度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몇%이상 보유시 자회사로 할 것인가는 정의를 法制化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主要國의 保險法制를 보더라도 원칙적으로는 50% 超過保有를 자회사로 보고 있으나 實質的으로는 支配有無가 자회사의 인정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보험업법상 10% 이하 보유를 투자(자산운용)로 간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산운용으로서의 주식보유 境界線인 10%를 超過한 수준에서 실질적인 지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자회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표 1> 주요국의 자회사에 대한 보험법상 정의

미 국	일 본	영 국	카나다
· 직간접적으로의결권 주식의 50%이상 보유 · 5%초과 50%미만시는 지배 유무를 추정 * 5%미만은 투자로 간주	· 50% 초과보유 * 10%이하는 투자로 간주, 10%이하 중 관련 회사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관련회사」로 분류	· 50% 초과보유 및 과반수 이상의 이사선임권 보유 * 50%이하는 투자로 간주	·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50% 초과보유 · 기타업종에 대해서는 10%초과 보유

2. 子會社の 業務範圍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결과는 보험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서 보험사의 경영결과는 보험계약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무분별한 자회사의 진출은 자칫 本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業務範圍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업의 健全性 維持와 契約者保護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로 우리 실정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도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이 특정업무를 열거규정하는 포지티브방식과 미국 등과 같이 네가티브방식으로 규정하는 나라 등 自國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내 他金融圈의 경우에도 銀行法 施行令에서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단기금융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신용금고법, 시설대여법,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등으로서 은행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및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자회사의 업무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證券業에서는 증권업, 투자신탁업, 증권업의 부수업무 또는 파생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 표준산업분류 표상의 대분류상 금융·보험업, 기타 증권감독원장이 定하는 사업을 자회사의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보험사가 본업 및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無分別하게 자회사 진출을 하지 못하도록 抑制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내금융그룹간 경쟁이나 국제적인 경쟁속에서 보험을 基本軸으로 하여 효율적인 금융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또한 母會社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나 시너지 효과가 있는 附隨事業을 전개하여 경쟁력있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法制的 基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보험사의 자회사 業務範圍도 외국 및 국내타금융권의 사례를 참조하여, 銀行法施行令¹⁾에 규정된 包括的인 金融業務와 부동산유지·관리업무 등과 같이 母保險社의 업무를 分社化한 業務 및 보험사업에 附隨하는 事業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은행법시행령 제4조의4에 규정된 업무는 은행업, 장기신용은행업무, 증권업·투자자문업, 보험사업, 단기금융업, 종합금융회사업무, 신탁업, 위탁회사업무, 상호신용금고업무,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신용정보업, 기타 은감원장이 정하는 업무이다.

<표 2> 주요국의 자회사 업무범위

국가별	업 무 범 위	비 고
미 국	은행, 신탁회사(보험업무에 부수하는 신탁업무는 제외), 저축대부조합, 저축은행, 신용조합, 할부판매회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법제1601조 및 제1701조)	실제업무의 예 : 증권브로커·딜러, 투자은행업무, 크레디트카드업무, 생명보험의 보험금 신탁업무, 전기통신사업, 신문, 부동산개발업, 소비자대부, 논뱅크뱅크(상업대부, NOW계정취급) 등
일 본	-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사무중 그 업무의 기본에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서 주로 당해보험회사를 위해 행하는 업무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대행업무 등 - 보험회사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및 이에 준하는 업무 (대장성 통달 제504호)	- 해당업무 : 계산업무, 담보관리업무 및 유가증권관리업무, 부동산유지·관리업무, CD기기의 보수·운행관리업무, 직송우편의 봉입·발송관련업무, 광고·선전관계업무, 인재파견업무, 보험관련 컴퓨터판매·개발업무, 당해보험사를 위한 담보부동산경락 및 보유·관리업무 - 해당업무 : 보험모집업무, 보험조사업무 등 - 해당업무 : 신용보증업무, 컴퓨터소프트 판매, 컴퓨터소프트 판매업관련 부속기기의 판매, 벤처캐피털업무, 소비자론업무, 자동차리스에 부대하는 유지보수서비스업무, 전기통신업무(VAN 업무), 건강·복지관련업무, 리스업무, 투자자문업무, 저당증권업무, 크레디트카드업무, 경영상담업무, 공공채투자업무, 팩토링업무, 소액채권판매업무
영국, 프랑스, 독일	제한규정 없음	다만, 영국은 은행의 발행주식 10%이 상취득시는 DTI에 사전신고
캐나다	- 자회사 업무(포지티브로 열거) - 금융기관, 정보서비스회사, 투자고문 및 포트폴리오 관리회사, 뮤추얼펀드회사, 뮤추얼펀드판매회사, 부동산중개회사, 서비스회사, 팩토링회사, 재무리스회사, 부동산회사, 부동산회사, 특수금융회사, 금융기관부수업무법인, 금융지주회사(밑줄부분은 생보자회사의 업무로만 인정) -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기 업무중 2가지이상을 취급하는 회사	- 의결권의 50% 초과 또는 과반수 선임에 충분한 지분확보에 의한 지배가 필요한 업무 : 금융기관(은행, 보험, 신탁, 대부회사, 증권회사 등), 팩토링회사, 금융리스회사, 금융지주회사 - 재무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업무: 금융기관, 정보서비스회사, 특수금융회사, 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

3. 母子會社間の 遮斷壁 裝置

가. Fire Wall(遮斷裝置)

모회사와 자회사간에는 遮斷壁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자회사의 經營不實이 모회사의 健全經營을 沮害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통하여 모회사가 貸付를 받거나 자회사가 다른 회사에 出資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회사가 대부하는 행위는 해당산업에서 不公正行爲를 심화시키고 해당산업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 母會社가 影響力을 행사하여 경영이 악화된 거래처 기업에게 증권을 발행시킨 후 그 모회사의 證券子會社가 引受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貸出金을 回收하게 될 경우 이익당사자간에 利益相沖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자회사간의 不當去來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임직원의 派遣이나 兼職을 통하여 자회사의 경영의 健全성과 獨立性을 沮害함으로써 유발되는 모자회사간의 利益相衝 행위도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 Arm's Length Rule (內部補助防止裝置)

Arm's Length Rule이란 通常的인 條件에 비추어 현저하게 자회사를 優待하는 거래를 禁止하는 장치이다. 다시 말해서 한편의 업무의 이익이 다른 한편의 업무에 내부보조되어져 내부보조받은 업무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內部補助防止를 하는 장치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을 無償으로 讓渡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子會社를 優待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회사의 經費를 모회사가 負擔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4. 子會社에 대한 監督

자회사에 대한 감독은 모회사인 보험사의 財務健全性에 대한 영향측면에서 설립시의 감독과 설립후의 繼續的 監督의 두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표 3> 주요국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내용

국 별	현 장 검 사 및 보 고
미 국	- 정보보고서의 보고 1개 이상의 자회사를 가진 모든 모회사는 매년 정보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함 * 정보보고서의 내용 · 자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사항 ·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주요거래 사항 · 기타 감독관이 정한 정보
일 본	-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대한 보고 보험회사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의 확보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범위내에서 대장대신은 보고 요구 가능(법제128조) - 현장검사 대장대신은 보험회사 검사시에 필요한 경우 그 자회사에 대하여도 현장검사 가능 - 자회사의 현장검사 거부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법제129조)
영 국	- 국무장관의 개입전제 조건 종속회사가 법제26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개입권의 범위 투자의 제한 및 처분, 특정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 - 지급여력 계산시 반영 자회사 소유로 인한 지불여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규칙 제46조 및 제47조)
독 일	- 현장검사권 감독당국은 특별 및 정기검사를 할 수 있음 - 보고징구권 감독당국은 보험사업자와의 거래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법제83조(5)) - 보험사업자에의 보고 상호간에 발생한 경비 및 그 산출방식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보고(법제53d조) - 감독명령권 감독목적의 유지에 필요한 경우 행사할 수 있음(법제81조(4))
카나다	- 감독명령권의 범위 1. 기투자한 투자제한 초과분의 처분 2. 기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의 지배의 포기 3. 중요한 투자의 철회 - 감독명령권의 조건 1. 불건전한 영업활동의 중지와 억제 및 시정에 필요한 경우 2. 1.의 감독명령을 위반한 때 3. 보험회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보험회사법의 요건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특히 設立時의 자회사의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任意로 變更하거나 업무범위를 擴大하는 경우 및 결산대책으로 모회사의 不實債權을 자회사에 매각하여 떠넘기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표 3>의 외국의 예와 같이, 자회사의 감독에 필요한 諸般書類와 사업년도 종료후의 定期的인 報告事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자회사의 定款,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기재한 서류, 자회사의 株主現況,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의 財務諸表와 營業報告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모회사로부터는 孫會社)의 현황을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사업년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모자회사간의 주요 거래상황, 자회사 및 손회사의 주주변동 내역도 감독당국에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자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나 업무범위확대, 손회사·형제회사에 대한 출자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인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감독당국이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치방법으로서 감독당국이 자회사에 대하여 일본이나 독일 등과 같이 직접 現場檢查를 하는 방법과, 자회사에 대해서는 報告徵求權만 갖고 모회사인 보험사를 통하여 간접적인 감독을 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에 자회사가 증권회사 등과 같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증권감독당국과의 감독체계상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검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IV. 子會社 進出戰略

1. 子會社 進出에 따른 리스크管理

일반적으로 子會社出資는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系列關係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

포커스

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자회사의 리스크는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 투자한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투자액만큼만 손해를 입게 되나, 자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이미 지 실추 등 波及效果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표 4>와 같이 자 회사출자에 대한 리스크를 Solvency Margin계산에 반영함으로써 자회사의 경영악 화 내지는 파산에 대비하고 있다. 원래 보험사의 고유업무를 분사화한 경우에는 다 르지만 수익사업을 위한 자회사 진출시에는 자회사 진출이 모회사의 리스크로 파악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의 BIS기준에서도 은행의 자회사 출자는 連結財務諸表 를 작성하거나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 모은행의 자기자본에서 子會社出資分을 控除 하고 계산한다. <표 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험사의 자회사 출자는 리스크 를 카바할 수 있는 충분한 自己資本 내지는 支給餘力이 있어야 한다. 바꾸어 말해 서 자회사 출자는 아무 리스크에도 대응치 않는 緩衝資産(buffer)인 Free Surplus를 가지고 출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표 4> 주요국의 자회사리스크 반영내용

국 가	생 보	손 보
미 국	국내보험자회사: 자회사의 RBC금액×출자비율 해외보험자회사: 장부가의 100% 기타자회사: 장부가의 30%	국내보험자회사: 자회사의 RBC금액×출자비율 해외보험자회사: 장부가의 50% 기타자회사: 장부가의 22.5%
일 본	국내금융관련자회사 : 출자주식 15%, 국내비금융관련자회사 : 출자주식 10%, 금융관련해외현지법인 : 출자주식 20%, 비금융관련해외현지법인 : 출자주식 15%, 파산자회사 : 출자주식 100%,	대출 1.5% 대출 1.0% 대출 6.5% 대출 6.0% 대출 30%
영 국	생보자회사의 경우 다음 금액중 가장 큰 금액을 부채에 포함 1. 자회사 솔벤시마진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2. 자회사 솔벤시마진금액 - 자회사의 (장 레이익+질멜식초과준비금) 3. 80만 ECU(모보험회사의 수재만을 담 당하는 재보험전업사는 20만 ECU) ※ 보험회사가 아닌 자회사의 경우 자산평가액만 계상하고 부채평가액은 추가로 계상치 않음.	손보자회사의 경우 다음 금액중 큰 금액 을 부채에 포함 1. 40만 ECU 2. 수입보험료의 20%

따라서 자기책임원칙하에 경영을 하는 개별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스스로 자회사 출자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支給餘力餘裕分 등의 리스크관리 대책을 세워놓고 자회사 진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子會社 進出方向과 戰略的 展開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사의 子會社 設立動機는 크게 모보험회사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分社化, 保險附隨事業에의 진출, 업무의 다각화를 위한 收益事業分野로의 진출 및 금융부문진출을 통한 綜合金融서비스 제공 등 네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리스크관리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子會社 出資의 段階를 살펴보면 리스크를 수반치 않는 固有業務의 分社化, 保險附隨事業에의 進出, 리스크를 수반하는 收益事業에의 進出, 리스크를 수반하는 金融業務에의 進出이라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進出方向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볼 때 회사의 기본방침으로서 장기적으로 회사가 어떠한 진출전략을 갖고 자회사 전략을 전개할 것인지 中長期戰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크게는 保險專門化戰略과 綜合金融化戰略 사이에서 다양한 전략의 구상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생보나 손보 특정부문에 特化할 것인지 生損保兼營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산운용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있는 一部金融業種에 制限的으로 進出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장기적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金融業種을 擴大하여 궁극적으로는 수퍼마켓형금융그룹을 지향할 것인지 中長期戰略을 정해놓고 자회사 진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표 5>를 통하여 세계최대의 생보사인 日本生命保險相互會社の 자회사 진출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日本の 경우를 보면 자회사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은 그다지 오래되지는 않았다. 60 70년대에는 자사빌딩관리업무 정도였고 본격적으로는 8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

였다. 초기에는 주로 모보험회사의 고유업무 중 일부보조업무 성격이거나 부수업무적인 성격을 갖는 업무에 지나지 않으나 80年代 중반부터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有價證券의 投融資 및 不動産投資 관련 업무와 金融周邊業務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80년대 중반에는 각 보험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표방하기도 하였고 또한 버블경제의 절정기인 점도 있어 투자자문회사, 리스회사, 크레디트카드회사, 저당증권회사 등의 金融會社를 속속히 설립하였다. 리스會社는 생보사의 장기설비 자금대출의 보완적 성격으로 인식하여 자산운용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추구한 것이다. 또한 抵當證券會社는 생보가 오랜기간동안 부동산담보대출로 축적해 온 노하우를 살려 저당증권의 판매라기보다는 본격적인 不動産擔保金融의 전문회사로서 인식하여 모회사와의 기능분담에 의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하고자 한 것이며, 投資諮問會社는 법개정에 의해 기업연금의 수탁이 가능해진 투자자문회사를 보유함으로써 기업연금의 수탁처를 확대하여 다양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라는 측면이 있었다²⁾. 외국에 진출한 투융자회사나 無人會社(Paper Company)는 Capital Gain을 Income Gain화³⁾하여 配當資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전략에서의 진출측면이 강했다. 최근에는 1994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손해보험업에도 진출하였다. 1997년 12월에는 金融持株會社와 保險持株會社의 허용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M&A 등을 통해 他金融業에 대한 자회사 진출도 活性化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보험사들의 자회사진출 단계나 경향은 규모가 작은 小型社의 경우에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보험사의 빌딩관리나 임대업, 고유업무의 보조적인 성격, 건강유지업 등 보험본업을 分社化한 업무나 業務效率化側面에서 일차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자회사 진출전략은 自社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갖고 있는 기본방침 아래에서 그에 맞는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리한 자회사의 진출이나 사업확장은 오히려 本業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급여력 등 財務健全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 “子會社戰略の攻めと守り”、『週刊 東洋經濟(生命保險特集)』東京. 1993년판, p. 70 참조.

3) 정봉은, “보험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Insurance Forum』, 95. 1. 16(제6호) pp. 56-65 참조. 일본의 해외자회사 진출의 주목적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통하여 배당소득(income gain)을 획득함으로써 당기배당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었다.

<표 5> 일본생명보험상호회사의 자회사 진출현황

연 도	자 회 사 명	사 업 내 용	비 고
50	성광빌딩관리(주)	빌딩관리업무	관련회사
57	일생인슈어런스서비스(주)	생보계약확인업무	관련회사
61	일생동경보험대리사(주)	보험계약모집 및 수금업무	자회사
61	일생大阪보험대리사(주)	보험계약모집 및 수금업무	자회사
66	남국일본생명빌딩(주)	남국일생빌딩의 임대업무	관련회사
79	일생신용보증(주)	신용보증업무	관련회사
81	NLI Properties, Inc.(뉴욕)	임대용부동산 취득, 운용, 처분	자회사
83	일생인베스트먼트(주)	공공채투자업무	자회사
84	일생리스(주)	리스업무, 저당증권업무	관련회사
84	NLI Insurance Agency Inc.(뉴욕)	생명보험의 중개대리	자회사
85	일생비즈니스서비스(주)	인재파견업	자회사
85	NLI International Limited.(런던)	일본생명의 투융자업무 대행	자회사
85	일생투자자문(주)	투자자문업무	관련회사
85	일생카드서비스(주)	크레디트카드업무	관련회사
86	NLI Properties Canada Inc..(토론토)	임대용부동산 취득, 운용, 처분	자회사
87	NLI International Inc..(뉴욕)	일본생명의 투융자업무 대행	자회사
87	NLI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싱가폴)	아시아 유가증권투자 및 투융자업무 대행	자회사
87	PanAgora Asset Management Ltd.(런던)	투자자문업무	자회사
88	N. N. Investment Ltd.(홍콩)	비거주자에 대한 유가증권 대출	자회사
88	NLI International Australia Ltd.(시드니)	일본생명의 투융자업무 대행	자회사
88	일생상사(주)	모회사, 모회사종업원에 대한 물품판매	자회사
88	일생기초연구소(주)	경제·금융·산업동향·도시문제등 조사연구	관련회사
88	일생어쓰레틱스(주)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스포츠사업등	관련회사
89	NLI Properties UK Ltd.(런던)	임대용부동산 취득, 운용, 처분	자회사
90	NLI Insurance Services (Europe) Ltd.(런던)	생명보험중개대리	자회사
91	일생캐피탈(주)	벤처캐피탈업무	관련회사
91	일생매니지먼트(주)	기업경영에 관한 세미나·출판·컨설팅업무	관련회사
91	Nippon Life GmbH (프랑크푸르트)	투융자업무 대행	자회사
91	NLI International France S.A.(파리)	투융자업무 대행	자회사
91	Nippon Life Insurance Co. of America (뉴욕)	생명보험업	자회사
93	일생뉴크리에이션(주)	인쇄, 제본업무, 컴퓨터등 사무처리업무	자회사
95	일생투신(주)	증권투자신탁위탁업무	관련회사
96	일생손해보험(주)	생명보험업	자회사

註: 여기서, 「자회사」란 50% 이상 투자한 회사를 말하며 「관련회사」는 10% 이하를 지칭함. 그러나 이들 관련회사도 지배유무상으로는 대부분이 실질적인 자회사에 해당함.

포커스

美國의 프르덴셜(Prudential)生命保險會社の 자회사 진출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미국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프르덴셜생보사의 주로 金融業進出과 관련된 자회사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미국 프르덴셜(Prudential) 생명보험상호회사의 자회사 진출현황

연 도	자 회 사 명	사 업 내 용	비고
69	PIC Realty Corp, P.G. Realty Inc.	부동산, 농장, 농지투자	설립
70	Pruco Services, Inc.	연금	설립
71	Pruco Securities Corp.	증권브로커, 딜러	설립
71	Pruco Life Insurance Co.	생명보험(아리조나주 담당)	설립
72	Prudential Property & Casualty	손해보험	설립
73	Prudential Reinsurance Co.	손보재보험	설립
74	PruLease, Inc.	리스업	매수
75	Prudential Health Care Plan, Inc.	의료서비스, HMO의 운영	설립
78	Prudential Funding Corp.	채무매입	설립
81	Prudential Trust Co.	비공개 신탁회사	설립
81	745 Property Investments	Prudential의 부동산투자분 분리계정운용 부동산투신	매수
81	Prudential Bache Securities, Inc	증권회사(브로커, 딜러, 투자은행업무)	매수
81	Pruco Securities, Inc.	Prudential Bache증권의 Mutual Fund판매	설립
81	PruCapital, Inc	상업금융, 리스	설립
82	Prudential Realty Securities Inc.	제로쿠폰채 발행	설립
82	Prudential Capital Investment Services, Inc	금융관련회사의 지주회사적 기능수행	설립
82	Prudential Overseas Funding Corp.	유로달러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설립
83	Prudential Bank & Trust Co.	은행(상업대출업무는 제외)	매수
83	Prudential Realty Securities II, Inc	저당증권발행(mortgage)	설립
83	Prudential Realty Partnerships	면세부동산펀드의 파트너	설립
83	Prudential Agricultural Credit, Inc	농업금융서비스	설립
84	Prudential Investment Corp.	자산운용자회사의 총괄관리	설립
84	Prudential Venture Capital Management, Inc	벤처캐피탈	설립

註: 1985년 이후 자회사와 해외자회사는 생략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보험회사가 附隨業務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子會社化하거나 分社化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銀行業(은행업무 중 상업대출업무는 금지)에까지 진출한 것을 보면 미국에서는 상당히 폭넓은 자회사 운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르덴셜생보사의 子會社 展開戰略의 일단을 살펴보면, 종합증권회사인 Bache를 매수하여 Bache증권사가 갖고 있던 우량고객층을 타겟으로 하여, 프르덴셜생보사의 연금 및 생명보험상품 그리고 Bache증권사의 Mutual Fund 및 유가증권을 쌍방의 판매원을 통하여 Cross Selling 방식으로 판매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올리고, 이를 통하여 얻은 노하우를 무기로 중·고소득층의 일반고객에게 顧客開拓力을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프르덴셜생보사는 생명보험을 기본축으로 하여 생명 및 손해보험·Mutual Fund·증권 그리고 현예금관리구좌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金融수퍼마켓을 지향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프르덴셜생보사는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닌 相互會社였기 때문에 資金調達에 制約이 있었다. 따라서 외부자금조달을 위하여 1978년에 설립한 Prudential Funding Corp.에 의하여 CP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또한 유로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82년에는 Prudential Overseas Funding Corp. 까지 설립하였다. 이러한 자회사들이 다수 설립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1982년에는 持株會社인 Prudential Capital Investment Services, Inc를 설립하여 금융자회사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프르덴셜이 금융수퍼마켓형 전략을 추구해 온 것은 70년대 후반 기업연금분야 및 개인영업분야에서 업적의 정체현상을 보인데 대한 반성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통한 業績提高와 금융주변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綜合金融서비스業을 지향하고자 한 기본방향과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위의 두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자회사진출은 자사가 처해 있는 환경하에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회사의 중장기비전을 추구할지에 따른 그 전략에 따라 자회사전개가 달라진다고 하겠다.

3. 本業戰略과 子會社 戰略

위에서 자회사의 진출전략은 회사의 기본방침과 전략하에 추진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자회사 진출을 통해서만 회사의 성장이 이룩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버블이 붕괴된 상황하에서 자회사에 무리하게 진출하는 것은 本業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본업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競爭力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회사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本業에서 성장의 停滯나 沈滯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Massachusetts Indemnity & Life Insurance사는 자회사 진출보다는 保險 本業을 충실히 하여 생보의 특정분야에 特化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하겠다. 同社는 1978년에서 1984년까지 6년간 동안에 3800배에 달하는 보통보험 신계약고의 급신장을 가져왔다. 그 결과, 1978년에는 무명의 보험사였던 동 사는 보통보험분야에서 1984년에는 首位社인 프르덴셜을 제치고 全美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동 사의 급성장은 금융혁명하에서 급격히 진전된 定期化現象⁴⁾ 속에서 시대적 조류를 타고 있던 總代理店(general agent) 방식에 의하여 修正保險 料式定期保險(계약초년도에 차년도 이후분보다도 고액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잔액부분은 예탁분으로서 비교적 고금리로 운용되는 정기보험)에 特化하여 보험본업에서의 專門性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損害保險分野에서도 미국의 Progressive損保社は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시장에서 1만 4천 종류의 個別料率을 가지고 개인보험분야에 특화하여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

보험시장이 국내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사가 들어와 고객의 니드에 세심하게 배려한 高密度 商品이 출현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영업방식에 의해 차별화되는 등 보험본업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면 본업에서 한눈을 팔 수 없는 지경이 되기도 한다. 더우기 금융환경의 악화로 他業進出의 여건이 열악해지고 재무건전성 등 보험의 事後監督이 더욱 강화되면 본업을 먼저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4) 定期化現象이란, 미국에서 70년대말 고금리시대에 「보험에는 정기보험만 사고 나머지 자금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에) 투자를 하자(Buy term and invest the difference)」는 금융현상을 말한다.

금융환경이 열악해지고 지급여력규제가 강화된 일본에서는 생손보 모두 「本業으로의 回歸」를 경영의 기본방침으로 설정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子會社 進出의 擴大가 결국에는 자회사의 經營惡化를 초래하고 급기야는 母體인 생명보험사업을 매각·청산한 사례도 있다. 코페란生保社(Cooperants Mutual Life Insurance Society, Canada)는 88년에 100% 자회사인 持株會社를 세워 은행, 신탁, 증권 브로커 등을 포함한 金融子會社에 진출하였으나, 이들 자회사의 經營惡化로 1993년에 생보사업분야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자회사 진출이 모회사의 보험사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자회사진출 전략은 本業戰略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이 本業專門化戰略로 나아갈 것인지, 綜合生活金融機關化戰略로 나아갈 것인지 또는 綜合金融서비스機關化로 나아갈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자회사를 단계적으로 진출시킬 것인지 그림이 그려져 나갈 것이다. 또한 프르덴셜생보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자회사진출과 같이, 모회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여건과 상황하에서 자회사진출의 방법이나 순서가 결정될 것이다.

V. 子會社 進出 活性化를 위한 課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험사의 자회사 진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회사와 모회사간의 透明性を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持株會社를 통한 자회사 진출을 할 수 있도록 法制的 整備가 필요하다고 본다⁵⁾. 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사를 母體로 하여 업종별로 진출하는 것보다 리스크관리면에서 효율적이다. 즉 보험사가 直接的인 母會社가 되어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파산이 모회사인 보험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자회사의 이해관계

5) “정부는 98년내에 일반기업에 대해서 지주회사를 조기허용할 방침” 보도된 바 있다(한국경제신문 98.1.5자 1면).

자간에 利益相衝을 초래한다. 그러나 보험사도 持株會社の 傘下에 들어가고 지주회사를 통하여 타업종에 자회사를 진출하거나 보험에서 分社化한 자회사를 持株會社가 주식을 소유하여 관리하게 되면 遮斷壁이 명확하게 되고 母子會社間 透明성이 제고될 것이다.

앞에서 자회사 설립의 動機를 네가지로 크게 대별하여 설명하였지만 그 설립동기가 어찌되었든간에 자회사 진출이 확대되고 또 진출전략을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綜合戰略參謀格인 System Organizer로서의 기능을 갖는 조직이 필요하다. 보험사가 持株會社の 役割을 동시에 하면서 자회사 진출전략을 추진하는 데에는 System Organizer로서의 기능을 母體인 保險社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非效率的이고 限界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지주회사의 不認定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보험사의 자회사 진출전략이 확대되어 단순한 本業의 分社化나 附隨事業의 子會社化 단계를 넘어 綜合的인 金融서비스業務에까지 자회사진출이 확대되어 가게 되면 보험을 축으로 한 保險그룹(보험을 축으로 한 다양한 자회사 그룹)의 고도의 戰略的 意思決定에 전념할 수 있는 戰略的 組織이 필요하고 이 조직을 통하여 戰略的 新規事業發掘이나 기업집단전체의 經營效率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 이러한 의미에서 자회사 전략 활성화를 위해서는 保險持株會社の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미에서는 오래전부터 보험사가 지주회사를 통하여 자회사 진출을 해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최근 97년 12월에 「持株會社の 設立等 禁止의 解除에 따른 金融關係法律의 整備에 關한 法律」이 통과되어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가 설립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업법도 개정되었는 바, 「保險持株會社」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 그 業務範圍는 생보사, 손보사, 증권사, 해외의 보험회사, 해외의 증권사, 보험업 또는 증권업에 부속하거나 부수하거나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및 신규사업분야를 개척하는 특정회사 등”이라고 定義되어 있다(일본 보험업법 제271조)⁷⁾.

6) 二味巖, 「持株會社解禁のすすめ」, 東京, 産能大學出版部, 1995, 제1장 : “새로운 지주회사의 등장”을 參照.

보험이나 은행에 지주회사가 허용되었지만 다음 두 종류의 “事業支配力이 過度하게 집중되는 경우의 持株會社”는 禁止된다⁸⁾. 즉, 첫째로 대규모금융회사와 일반사업회사를 하나의 지주회사 산하에 두는 경우는 금지된다. 이는 도시은행(우리나라의 시중은행에 해당)과 같이 대규모의 금융회사와 금융 또는 금융에 밀접하게 관련하는 업무 이외의 사업분야의 사업자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金融 또는 금융에 密接하게 關聯하는 業務”란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와 이에 준하는 업무 및 당해금융회사 고유의 업무에 종속된 업무를 가리킨다⁹⁾. 따라서 보험회사의 本業업무를 分社化하는 경우나 附隨業務를 수행하는 子會社를 持株會社 傘下에 두는 경우는 무방하다. 둘째로 유력한 은행, 유력한 생보사, 유력한 손보사, 유력한 증권사가 持株會社에 의해 하나로 統合될 경우에는 이를 禁止한다. 여기서 “有力한”이란 해당산업분야에서 市場占有率이 10% 이상이거나 3위 이내의 순위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보험회사의 자회사 진출의 活性化와 效率化 및 戰略的 進出을 위해서는 保險持株會社制를 認定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진출은 分社化를 容易하게 하고 부수사업을 활성화하여 본업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종합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종국적으로 金融産業改編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시스템의 安全性·健全性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VI. 結論

자회사 진출은 보험회사가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서비스의 확장을 통하여 고객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회사의 진출이 모회사의 리스크 증대를 가져오므로 무리한 진출은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7) 일본에서 보험지주회사가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98년 상반기중에 지주회사법 및 보험법이 개정되는 대로 허용될 전망이다.

8) 97. 2. 18일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 자료 參照.

9) 村上政博, 『持株會社解禁と企業結合規制』東京, 金融財政事情研究會刊, 1997年, p.143

分社化를 수반하는 사업의 효율성 추구는 母會社の 슬림化를 가져와 보험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本業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生活綜合金融機關化는 무리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금융서비스 등은 충분한 버퍼(buffer)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출할 경우에는 本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회사 진출은 子會社에 대한 出資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支給餘力を 갖춘 상태에서 진출함이 바람직하다.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맞이한 현시점에서는 무리한 자회사 진출보다는 事業合理化 추구를 위한 자회사 진출에 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회사의 장기적인 방향과 자회사 전개 전략을 위해서는 中長期的인 子會社進出戰略을 구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자회사 진출의 활성화와 효율적 진출을 위해서는 保險持株會社の 인정도 필요하므로, 정부가 持株會社制度의 도입을 검토할 시에는 金融持株會社로서 保險持株會社の 認定을 충실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자회사 진출의 필요성과 전개전략 등을 위주로 설명했지만, 그러나 자회사 진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本質적인 意味에서 보험사업의 本業 그 자체이다. 따라서 保險本業에 충실히 하면서 본업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段階的・戰略적으로 子會社進出 전략을 구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國內保險動向

1. 經濟金融動向

가. 經濟成長

- 1997년 3/4분기 중 實質國內總生産은 민간소비와 고정투자 등 內需가 계속 부진하였으나 輸出이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6.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生産面에서 製造業은 경공업생산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중화학공업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늘어 8.1% 성장하였음.
- 建設業은 사회간접자본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건물건설이 부진하여 2.9% 성장에 그쳤음.
- 서비스업은 도소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은 부진하였으나 통신업, 운수업이 호조를 보여 7.2% 성장하였음.
- 需要面에서는 民間消費가 실질소득의 증가세 둔화와 고용불안과 같은 요인으로 위축되어 5.0% 증가에 그쳤으며 固定投資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모두 부진하여 4.7% 감소하였음.
- 商品輸出은 반도체, 산업용화학물, 제1차금속제품 등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 31.3% 증가하였음. 用役輸出 역시 화물운임 및 통신서비스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18.9%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
- 商品輸入은 원유 등 원자재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설비투자 부진으로 선박, 항공기, 기계류 등 자본재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4.0% 증가하는 데 그쳤음.
- 用役輸入은 운수관련 경비 및 수출관련 대리점 수수료 지급 등이 늘어나 14.5% 증가하였음.

<표 1> 생산활동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

(단위: %)

	FY'96p					FY'97p		
	연간	1/4	2/4	3/4	4/4	1/4	2/4	3/4
國內總生産(GDP)	7.1	7.8	6.9	6.6	7.2	5.5	6.4	6.3
最終消費支出	6.9	7.5	7.2	6.2	6.9	4.4	5.3	5.3
總固定資本形成	7.1	8.2	5.2	8.0	7.2	-1.2	-0.1	-4.7
財貨와用役의輸出	14.1	20.3	10.0	8.2	18.5	14.8	25.9	31.3
財貨와用役의輸入	14.8	16.3	12.5	12.6	17.6	8.0	7.6	4.0

資料: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호.

나.金利

- 1997년 3/4분기의 市場金利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변동 폭도 크게 축소되었으나 9월 하순 이후에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資金需要側面과 供給側面 모두에서 금리하락 요인이 내재하고 있었으나 기아 사태 및 海外借入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 되어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콜금리의 변동추세는 7월의 11.4%에서 8월에는 12.4%, 9월에는 13.2%로 증가 하여 3/4분기 전체적으로는 12.3%를 기록하였음. 이와 같은 콜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3/4분기 들어 극심한 資金難을 겪고 있는 종금사들이 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임.
 - 9월 하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콜금리는 綜金社에 대한 특별대출(10월 16일)과 정부의 起亞대책 발표(10월 22일) 등에 힘입어 10월 중순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株式, 外換市場 不安의 영향 및 9개 종금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영향으로 금융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도 7월의 11.9%에서 8월에는 12.1%, 9월에는 12.4%로 높아져 분기 전체로는 12.1%를 기록하여 월중 콜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11월 들어서는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회사채유통수익률 및 CP 금리는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감 지속으로 기관투자자들이 買受를 기피함에 따라 대폭 상승하였음.

<표 2> 주요 시장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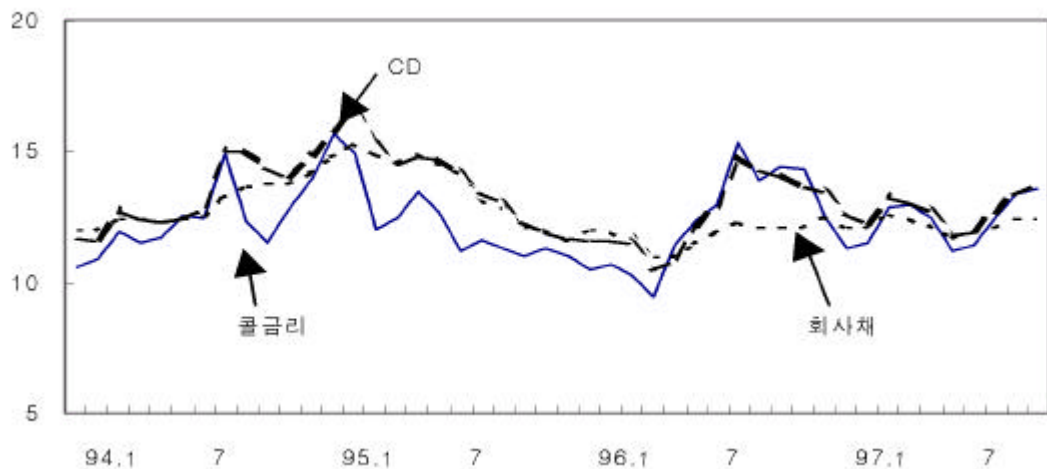
(기간평균, 연 %)

	1997.1/4	1997.2/4	1997.3/4	1997.7	1997.8	1997.9	1997.10	1997.11*
콜 금 리	11.9	12.2	12.3	11.4	12.4	13.2	13.6	12.4
CD 유통수익률	12.7	12.6	12.6	11.9	12.6	13.4	13.8	15.5
회사채유통수익률	12.3	12.1	12.1	11.9	12.1	12.4	12.5	15.1

註: 11월은 월말 자료임.

資料: 한국은행, 조사제1부 통화금융과.

[그림 1] 월별 시장금리 변동 추이



다. 換率

- 1997년 3/4분기의 對美달러換率 동향을 살펴보면 7월 초에는 887.1원까지 하락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월 말에는 902.00원으로 다시 9월 말에는 914.80원으로 상승하였음.
- 분기 중 수출증가와 수입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미달러환율이 切下된 것은 기아사

태에 따른 心理的要因과 이에 따른 자금시장과 株式市場의 불안에 기인한 것임.

- 東南亞 外換 危機가 확산되면서 이런 오름세는 가속되어 종금사 및 국내은행의 외화자금난 심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純流出 등으로 11월 중순 이후에는 큰 폭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음.

- 換率變動幅이 $\pm 10.0\%$ 로 확대되고, 정부의 IMF 자금지원 신청 이후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11월 말에는 전년말대비 27.5% 切下된 1,163.8원을 기록하였음.

<표 3>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

	1996.12	1997. 7	1997. 8	1997. 9	1997.10	1997.11
기말환율	844.20	892.00	902.00	914.80	965.10	1,163.80

資料: 한국은행, 국제부 외환시장과.

라. 株式市場

- 1997년 3/4분기의 株價指數는 대기업의 부도 및 화의신청, 환율불안, 동남아 증시의 폭락 등에 영향받아 8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금융시장 안정 대책 발표(8월 25일) 이후에도 환율급등, 기업의 자금악화 등과 같은 市場不安心理가 확산되어 5월 이후 주식을 純買受하였던 외국인투자자들이 8월 이후에는 純賣渡로 전환하여 거액의 주식을 매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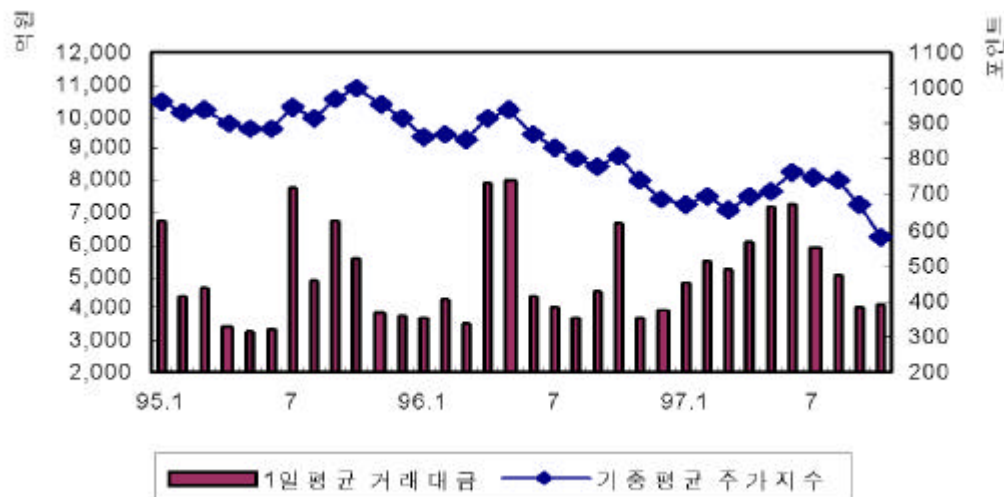
- 주가지수는 7월 초 758.03p로 시작하였으나 8월 말에는 695.4p로, 9월 말에는 647.1p로 하락하여 沈滯局面이 지속되었음.

- 3/4분기의 평균종합주가지수는 724.74p로 전분기대비 1.56% 하락하였으며 1일 평균거래량도 전분기대비 30% 감소한 3,209만주에 머물렀음.

- 10월 이후에는 잇단 기업의 부도와 홍콩주가의 폭락으로 촉발된 세계증시의 동요 및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매도 확대 등으로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IMF 자금지원으로 향후 超緊縮財政의 실시가 예상됨에 따라 주가지수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하여 11월 하순경에는 400p 미만으로 급락하였음.
- 1일 평균 거래대금의 추이도 7월의 5,859억원에서 8월과 9월에는 각각 5,078억원, 4,025억원으로 낮아지다가 10월 들어서는 소폭 상승한 4,119억원을 기록하여 株式去來量 및 株式去來代金이 크게 위축되었음.

[그림 2] 월별 주가지수 및 1일평균거래대금 추이



마. 第2金融圈 및 資本市場

- 1997년 3/4분기 중 종금사의 受信은 은행의 MMDA 신규취급에 따른 자금이탈 등으로 前分期에 이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신도 크게 감소함.
- 종금사 與信은 8월 이후 수신부진과 外貨負債 償還을 위한 외환매입이 겹쳐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投信社는 수신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어 有價證券投資도 활발해졌으나 8월 이후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추세, 은행의 MMDA 신규취급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됨.

국내보험동향

- 투신사의 수신은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으로 주식형 수익증권이 감소한 데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長期公社債型 受益證券의 증가세 둔화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표 4> 종금사 및 투신사 여수신 추이

(단위: 증감액, 억원)

	1997.3/4	1997. 7	1997. 8	1997. 9	1997.10	1997.11
종금사 수신	-3,575	534	-7,666	3,557	-16,405	25,176
종금사 여신	-23,211	4,772	-13,374	-8,790	-24,518	-16,174
(기업어음할인)	964	3,802	-2,125	5,106	-11,788	-10,797
(어음중개)	-24,175	970	-11,249	-13,896	-12,730	-5,377
투신사 수신	83,723	53,555	5,136	25,031	4,694	5,446

資料: 한국은행, 자금부 금융시장실.

- 1997년 3/4분기 중 株式 및 會社債發行 규모는 4조 5천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음.

- 회사채발행이 늘어난 것은 優良 大企業을 중심으로 借入構造調整을 위한 장기 자금조달이 확대된 데에 기인한 것임.
- 그러나 9월 이후에는 지급보증상의 어려움 및 金利上昇 등으로 회사채발행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음.
- 11월 중에는 은행의 기한부 수출환어음 매입 기피와 해외차입의 어려움에 따른 資金難과 IMF 자금지원 이후 예상되는 금융긴축을 우려하여 우량기업들을 중심으로 회사채발행을 크게 확대하였음.

<표 5>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단위: 억원)

	1997. 3/4	1997. 7	1997. 8	1997. 9	1997. 10	1997. 11
주식발행	14,064	6,572	3,662	3,829	2,755	2,146
회사채순발행	29,682	10,001	13,584	7,237	6,426	12,753
합계	43,746	16,573	17,246	11,066	9,181	14,899

資料: 한국은행, 자금부 금융시장실.

(이경희 연구원)

2. 保險主要指標 動向

가. 生命保險

1) 主要指標 推移

- FY'97 2/4분기의 생명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등의 주요지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前分期에 비해 惡化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收支差는 투자수입은 미비한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사업비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31.8% 감소한 2조 4,476억원을 기록하였음.
- FY'97 2/4분기의 收入保險料는 개인보험의 생사혼합보험과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약진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前分期에 비해 9.2% 감소한 9조 1,493억원임.

<표 1> 생명보험의 주요지표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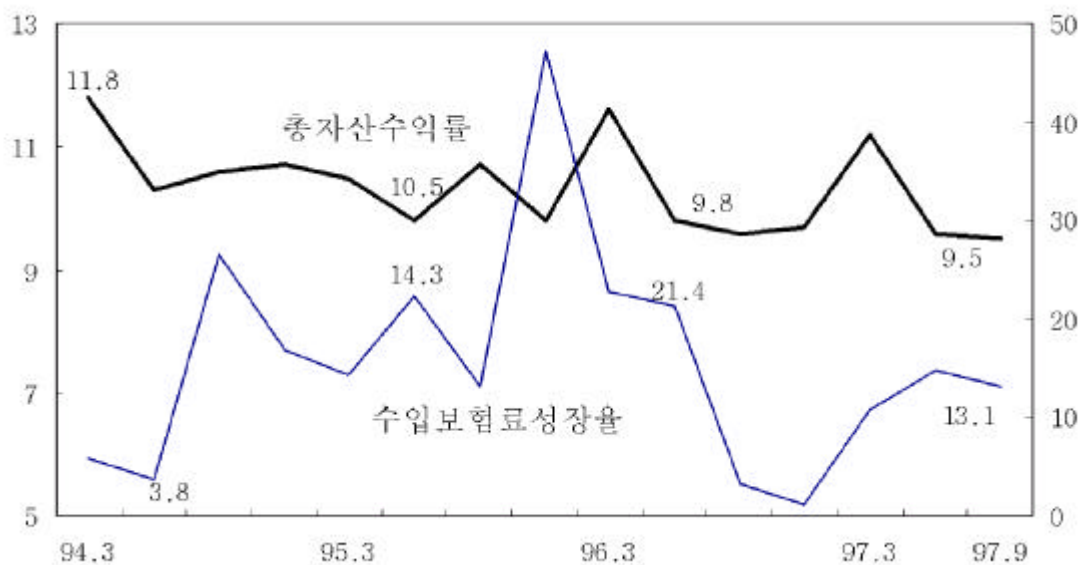
연 도 지 표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총 자 산		750,994 4.1	799,810 6.5	832,888 4.1	870,655 4.5	900,030 3.4
수 지 상 황	수입보험료	82,100 -6.6	118,030 43.8	93,582 -20.7	100,807 7.7	91,493 -9.2
	투 자 수 입	17,403 1.2	18,584 6.8	22,646 21.9	20,218 -10.7	20,876 3.3
	지급보험금	53,117 -12.9	69,209 30.3	62,163 -10.2	65,914 6.0	67,737 2.8
	사 업 비	17,083 1.9	16,727 -2.1	17,760 6.2	16,835 -5.2	17,344 3.0
	수 지 차	27,062 6.3	48,396 78.8	29,189 -39.7	35,904 23.0	24,476 -31.8

註: 각 항목의 하단 수치는 전기 대비 증가율임.

국내보험동향

- 投資收入은 기업의 연쇄부도, 금융시장의 불안 및 주식시장 침체 등의 불안정한 投資環境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3.3% 증가한 2조 876억원임.
 - 支給保險金은 보장성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각각 14.4%, 12.2%) 및 환급금(각각 11.8%, 15.0%)이 증가한 반면, 생존보험 중 노후복지보험의 환급금(1.5%)의 감소와 단체보험 중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보험금(17.9%)의 감소로 전분기 대비 2.8% 증가한 6조 7,737억원을 나타냈음.
 - 事業費는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금리연동형상품의 판매감소와 보장성상품의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중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보다 많이 소요되는 일반단체보험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분기 대비 3.0% 증가하였음.
- 總資産은 투자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의 감소 및 사업비의 증가로 1997년 9월 말 현재 90조 30억원으로 다른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3.4% 증가하였음.

[그림 1]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 성장율, 총자산수익률의 분기별 추이



註: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保險營業 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① 個人保險

- FY'97 2/4분기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生存保險의 減少로 前分期에 비해 4.3% 증가한 7조 3,653억원을 기록하였음.

<표 2> 보험종목별 주요지표

(단위: 억원, %)

종목별 기 간	FY '96						FY '97					
	3/ 4			4/ 4			1/ 4			2/ 4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수 입 보험료	보험금 지급율	사 업 비 율
생 존 보 험	39.3	81.9	18.2	46.6	86.9	18.6	40.6	86.3	17.3	42.8	90.5	16.5
사 망 보 험	10.6	21.2	43.5	14.1	22.2	47.3	14.4	21.5	44.1	17.7	22.0	43.8
생사혼합보험	8.6	79.8	19.3	14.3	59.3	18.4	15.0	56.6	16.6	20.0	53.5	15.6
개인보험계	58.5	70.6	23.0	74.9	69.5	24.0	70.0	66.6	22.6	80.5	66.2	22.3
단 체 보 험	41.5	41.8	1.8	25.1	57.3	4.1	30.0	62.6	2.8	19.5	106.3	5.2
합 계	100.0 118,030	58.6	14.2	100.0 93,582	66.4	19.0	100.0 100,807	65.4	16.7	100.0 91,493	74.0	19.0
금융형상품	56.6	78.4	4.4	36.5	128.5	6.9	37.2	123.1	4.9	29.0	169.4	6.3
개 인 연 금	7.2	15.4	32.4	9.2	17.2	32.6	8.6	19.0	28.1	9.6	22.0	24.7

註: 1) 수입보험료 항목은 수입보험료 기준의 각 보험종목별 비중이며, 합계의 아래 수치는 당분기의 전체 수입보험료 금액임.

2) 보험금지급율은 지급보험금/ 수입보험료의 비율임.

3) 금융형상품은 노후복지연금보험(노후설계연금보험 포함), 새가정복지보험, 종업원퇴직 적립보험을 합한 것임.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生存保險은 전분기에 비해 약간 상승하여 42.8%를 차지한 반면, 死亡保險 및 生死混合保險은 각각 17.7%, 20.0%로 높아져 개인보험의 비중은 전분기(70.0%)에 비해 10.5%p 상승한 80.5%를 나타냈음.

국내보험동향

- 이와 같은 개인보험의 점유비 증가는 교통재해 및 어린이사고 보장상품 등 보장성 상품의 판매 증가와 기업도산에 따른 단체보험의 급격한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생보사의 경영내실화 전략 및 감독당국의 支給餘力規制 강화로 인해 금융연동형상품의 판매는 감소하여 시장점유율이 전분기(37.2%)에 비해 크게 감소한 29.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임.
- 개인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지급보험금의 3.8% 증가로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66.2%로 나타났음.
 - 이는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의 보험금지급율은 전분기에 비해 4.2%p, 0.5%p 증가한 반면 생사혼합보험은 3.1%p 하락한 데 기인함.
- 개인보험의 事業費率은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야조직 정비 및 통폐합 등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전분기 대비 0.3%p 하락한 22.3%를 보임.

② 團體保險

- FY'97 2/4분기의 단체보험 收入保險料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급격한 감소로 전분기 대비 40.9% 감소한 1조 7,839억원이며, 점유율도 10.5%p 하락한 19.5%를 보임.
- 단체보험의 保險金支給率은 전분기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43.7%p)한 106.3%를 보임.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연쇄적인 기업도산에 영향으로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지급보험금이 FY'96 3/4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한 데 기인함.
- 단체보험의 事業費率은 수입보험료의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계약비의 큰 폭의 증가(11.2%)로 전분기에 비해 2.4%p 증가한 5.2%를 나타냄.

나) 募集形態別 現況

○ FY'97 2/4분기 모집형태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직급은 38.9%로 前分期에 비해 12.3%p 감소한 반면, 모집인은 지난 분기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이번 분기에 다시 증가하여 58.3%를 보임. 또한 代理店은 개인보험부문에서의 큰 폭의 상승으로 1.8%p 증가한 2.8%를 나타냄.

- 회사직급의 비중 감소는 회사직급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체보험의 비중이 60.4%로 전분기(74.9%)에 비해 14.5%p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됨.
- 個人保險의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92.8%로 다소 감소한 반면에, 대리점은 전 분기에 비해 2.9%p 증가하여 6.7%로 나타났음.

<표 3>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 기 간		FY '96			FY '97	
		2/4	3/4	4/4	1/4	2/4
개인 보험	회사직급	0.6	0.9	0.5	0.6	0.4
	모 집 인	97.7	96.7	96.8	95.5	92.8
	대 리 점	1.7	2.4	2.7	3.8	6.7
	기 타	0.0	0.0	0.0	0.1	0.1
	합 계	100.0 6,552	100.0 7,204	100.0 7,626	100.0 6,646	100.0 8,668
단체 보험	회사직급	54.4	56.1	73.3	68.1	64.1
	모 집 인	45.5	43.7	26.6	31.9	35.6
	대 리 점	0.1	0.2	0.1	0.0	0.3
	기 타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107	100.0 28,920	100.0 15,712	100.0 19,821	100.0 13,205
전체	회사직급	33.3	45.1	49.5	51.2	38.9
	모 집 인	66.0	54.3	49.6	47.8	58.3
	대 리 점	0.7	0.6	0.9	1.0	2.8
	기 타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6,658	100.0 36,124	100.0 23,339	100.0 26,468	100.0 21,873

국내보험동향

- 보험사그룹별 모집형태의 비중에 있어서는 내국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모집인의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회사직급, 대리점순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既存社の 경우 모집인의 비중이 64.2%를 차지하며, 회사직급과 대리점은 각각 34.8%, 1.1%를 보이고 있음.
- 신설사 중 内國社の 경우 회사직급의 비중이 76.4%로 회사직급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초회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내국사의 단체보험의 비중이 높으며 단체보험의 95.2%가 회사직급에 의해 모집되기 때문임.
- 地方社の 경우 단체보험에서 모집인의 비중이 64.6%, 회사직급의 비중이 35.4%를 나타내고 있어 다른 신설사에 비해 모집인의 의존도가 높음. 또한 대리점의 비중이 전분기 대비 8.1%p 증가한 11.4%를 나타내고 있음.

<표 4> 보험사별 모집형태 비중추이(초회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 기 간		FY'97 1/4					FY'97 2/4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기존사	내국사	합작사	지방사	외국사
전 체	회사직급	44.3	84.1	41.7	46.3	19.7	34.8	76.7	31.8	24.5	4.6
	모 집 인	55.1	14.9	55.0	50.4	68.0	64.2	20.9	63.2	64.1	73.2
	대 리 점	0.7	0.8	3.3	3.3	12.1	1.1	2.0	5.0	11.4	21.8
	기 타	0.0	0.0	0.0	0.0	0.2	0.0	0.3	0.0	0.0	0.4
	합 계	100.0 19,105	100.0 4,540	100.0 671	100.0 2,119	100.0 32	100.0 15,130	100.0 2,989	100.0 531	100.0 3,184	100.0 39

註: 2/4분기 외국사의 비중은 누적치 기준임.

다) 市場占有率 現況

- FY'97 2/4분기의 收入保險料 基準 기존 6개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75.8%로 전분기(77.4%)에 비해 낮아졌으며, 신설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하였음.

<표 5> 생명보험의 시장점유율 추이(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 기 간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상위 3개사	65.2	61.5	64.5	68.4	65.7
기존 6개사	76.5	72.0	75.1	77.4	75.8
내 국 사	11.2	12.6	12.0	12.0	11.7
합 작 사	5.3	6.0	5.2	4.7	5.0
지 방 사	6.5	9.0	7.3	5.4	7.1
외 국 사	0.4	0.3	0.4	0.4	0.4
허핀달지수	0.1581	0.1440	0.1642	0.1793	0.1645

註: 허핀달지수는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 상위 3개 생명보험회사와 내국사의 시장점유율은 65.7%, 11.7%로 전분기에 비해 2.7%p, 0.3%p 하락한 반면, 합작사와 지방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3%p, 1.7%p 상승하여 각각 5.0%, 7.1%로 나타났음.

- 市場集中度를 나타내주는 허핀달지수는 0.1645(역수: 6.079)로 전분기(0.1793)보다 낮아져 생명보험시장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3) 資産運用 現況

- FY'97 2/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수익률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에 따른 株式處分評價損의 증가 및 金融市場不安에 따른 적정투자대상의 부재로 9.5%로 하락하였음.
- 資産運用率は 94.7%로 전분기(94.6%)에 비해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운용 투자대상별 비중을 보면 유가증권과 금전신탁의 비중이 다소 증가한 반면, 대출금의 비중은 낮아졌음.

<표 6>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기 간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투 자 대 상 별 비 중	현 예 금	10.7	11.6	10.6	10.5	10.0
	금전신탁	4.4	4.6	5.1	5.7	6.4
	유가증권	26.9	25.3	25.7	26.1	26.5
	국공채	6.7	6.0	6.5	7.2	7.5
	회사채	6.8	6.5	6.6	6.8	6.8
	주 식	12.6	12.0	12.2	11.6	11.3
	대 출 금	44.9	45.7	45.9	45.0	44.4
	부 동 산	7.4	7.2	7.2	7.3	7.4
	기 타	5.7	5.5	5.5	5.4	5.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 산 운 용 율		94.3	94.5	94.5	94.6	94.7
수익률	총 자 산	9.6	9.7	11.3	9.6	9.5
	운용자산	10.2	10.3	11.9	10.2	10.1

註: 수익률은 분기별수익률임.

- 貸出金の 비중은 기업의 연쇄부도의 영향으로 FY'96 4/ 4분기 이후 계속적으로 減少하여 전분기에 비해 0.6%p 하락한 44.4%임.
- 有價證券의 비중은 26.5%로 전분기(26.1%)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음. 특히 주식 시장의 침체 및 기업의 연이은 도산에 따라 주식의 비중은 11.3%로 전분기 대비 0.3%p 감소하는 대신 國公債와 회사채의 비중은 각각 7.5%, 6.8%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신용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신용리스크를 회피하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금전신탁 등에 운용하여 金錢信託의 비중은 6.4%로 전분기 대비 0.7%p 증가하였음.

(장기중 연구원)

나. 損害保險

1) 主要指標 推移

○ FY'97 2/4분기의 손해보험산업 營業成果를 살펴보면, 자산운용이익의 증가와 보험영업손실의 감소로 전분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145억원의 總營業損失을 기록하고 있음(<표 7> 참조).

- 이는 전분기에 비해 손실폍이 92.8% 개선된 것이지만 전년동기의 총영업이익 653억원에 비해서는 122.2%나 감소한 것임.

<표 7> 손해보험의 주요지표 추이

(단위: 억원, %)

연 도 지 표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총 자 산	144,564 6.6	154,355 6.8	162,279 5.1	171,616 5.8	184,135 7.3
원 수 보 험 료	32,793 5.4	36,305 10.7	34,459 -5.1	37,369 8.4	40,004 7.1
순 보 험 금	12,971 12.1	13,348 2.9	13,659 2.3	14,034 2.7	13,169 -6.2
순 사 업 비	8,593 24.3	8,587 -0.1	9,805 14.2	8,816 -10.1	10,059 14.1
장 기 환 급 금	4,831 19.6	5,910 22.3	6,635 12.3	6,506 -1.9	6,729 3.4
보험영업이익	-2,078 -19.1	-2,310 11.2	-3,098 34.1	-4,964 60.2	-3,618 -27.1
자산운용이익	2,731 16.8	2,573 -5.8	3,227 25.4	2,962 -8.2	3,473 17.3
총 영업 이익 ¹⁾	653 385.2	263 -59.7	129 -51.0	-2,001 -1,651.2	-145 -92.8

註: 1) 총영업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자산운용이익의 합임.

2)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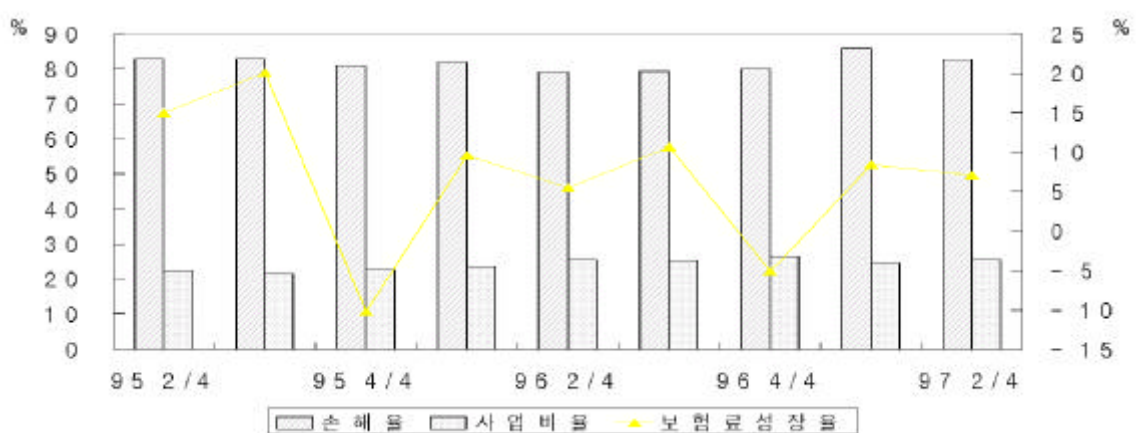
○ 保險營業利益(Underwriting Profit)은 -3,618억원으로서 전분기에 비해서는 손실

국내보험동향

폭이 27.1%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7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분기 대비 보험영업손실폭의 감소는 經過保險料의 증가(전분기 대비 6.7%) 및 순보험금(전분기 대비 -6.2%) 등 發生損害額의 감소(전분기 대비 -1.1%)로 인한 손해율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그림 2] 참조).

[그림 2] 손해보험의 합산율 및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註: 보험료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 資産運用利益(Investment Profit)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위축으로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당해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17.3% 증가한 3,473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27.2% 증가한 것임.
- 이는 預金利子收益 등 자산운용수익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당해 분기의 예금이자수익은 942억원으로 전분기의 561억원에 비하여 6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總資産은 18조 4,135억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의 성장률에 비해서도 0.7%p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7> 참조).
- 이와 같이 전분기 대비 총자산이 증가한 것은 現·預金(전분기 대비 11.5%) 및 國公債(전분기 대비 11.9%)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2) 保險營業現況

가) 保險種目別 現況

① 種目全體

- FY'97 2/4분기의 原受保險料는 4조 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1% 증가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22.0% 성장하였음(<표 8> 참조).

<표 8>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종 목	FY '96						FY '97			
	2/4		3/4		4/4		1/4		2/4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비 중	성장률
화 재 보 험	2.9	-2.2	2.7	1.9	2.0	-30.7	2.2	20.4	2.3	11.5
해 상 보 험	3.2	-6.6	3.0	3.8	2.7	-12.5	2.7	-4.4	2.2	-1.0
자동차보험	47.4	7.9	44.2	3.3	41.4	-11.2	41.4	8.5	41.7	7.8
보 증 보 험	4.7	-9.9	4.7	12.0	4.6	-8.1	4.5	6.5	5.0	20.3
특 종 보 험	5.1	-5.3	5.5	20.8	5.0	-13.5	5.9	26.8	5.3	-2.9
해외원보험	0.4	18.1	0.3	0.8	0.4	12.8	0.4	10.6	0.4	11.5
장 기 보 험	29.6	7.0	33.3	24.3	37.3	6.4	37.0	7.7	37.1	7.2
개 인 연 금	6.7	12.3	6.3	2.6	6.6	-0.1	6.2	1.7	5.9	2.3
전 체 보 험 (보험료계)	100.0	5.4	100.0	10.7	100.0	-5.1	100.0	8.4	100.0	7.1
	32,793		36,305		34,459		37,369		40,004	

註: 1)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임.

2) 전체보험의 하단값은 해당기간의 전체 원수보험료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 合算比率은 108.3%로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3.5%p 높은 수준이나, 전분기보다는 2.3%p 낮아졌음(<표 9> 참조).

- 이와 같은 전분기 대비 합산비율의 하락은 自動車保險(전분기 대비 -2.3%p) 및 保證保險 손해율의 급락(전분기 대비 55.9%p 하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국내보험동향

- FY'96 2/4분기이래 계속 증가추이를 보여왔던 損害率は 당해 분기에 82.7%를 기록함으로써 전분기에 비하여 3.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여전히 3.4%p 높은 수준임.
- 이는 자동차보험 및 외국수재보험의 손해율이 전년동기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保證保險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고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손해율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事業費率は 전년도의 증가추세가 FY'97 들어서 다소 주춤한 상태를 보였으나 당해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0.9%p 증가한 25.6%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이는 손해보험시장의 41.7%를 점하고 있는 自動車保險의 사업비율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 37.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長期保險의 사업비율이 전분기 대비 1.2%p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표 9>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사업비, 손해율 추이

(단위: %)

연 도 종 목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사업비율	손해율
화재보험	52.0	51.3	52.5	50.4	51.0	56.5	54.9	61.1	49.5	58.1
해상보험	35.1	40.3	36.0	42.5	36.5	42.3	46.4	41.0	49.1	40.9
자동차보험	26.2	73.4	26.5	74.3	28.9	74.4	28.8	69.2	29.5	66.9
보증보험	15.1	119.0	15.9	105.8	21.7	104.4	11.7	249.5	12.7	193.6
특종보험	28.5	53.7	31.8	56.3	31.1	58.0	30.2	52.9	31.7	57.9
해외원보험	28.6	53.4	42.5	52.2	26.9	52.8	45.2	70.2	44.5	54.9
외국수재	34.9	63.1	34.3	61.4	27.4	73.3	24.6	71.2	30.3	51.7
장기보험	23.5	88.1	22.1	88.5	22.1	88.7	19.9	88.7	21.1	89.0
개인연금	23.2	86.6	20.8	86.3	20.4	88.5	18.3	97.8	18.4	101.3
합 계	25.5	79.3	25.3	79.5	26.4	80.1	24.7	85.9	25.6	82.7

註: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② 自動車保險

- 自動車保險의 경우, 原受保險料는 전분기 대비 7.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의 比重은 전년동기 대비 5.7%p 감소한 41.7%를 기록함으로써 당해 분기를 제외하고는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合算率은 96.4%로서 전분기에 비해 1.6%p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도 3.2%p 낮은 수준임.
 - 이는 자동차보험의 事故發生率 감소로 손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6.5%p 낮은 66.9%를 기록한 데 기인함.
 - 그러나 사업비율의 경우는 각사들의 引受競爭 심화로 전년동기 대비 3.3%p 증가한 29.5%를 기록하고 있음.

③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

- 長期 및 個人年金保險은 전분기 대비 6.5%의 原受保險料 成長率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44.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살펴보면, 전분기에 비해서는 0.2%p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의 36.3%보다는 6.7%p나 증가한 43.0%를 기록함으로써 손해보험 종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보험종목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장기보험은 110.1%, 개인연금보험은 119.7%로서 각각 전분기 대비 1.5%p,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손해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보험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0.9%p 증가한 89.0%, 개인연금은 14.7%p 증가한 101.3%로 나타났음. 이는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의 해약 급증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증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사업비율은 당해 분기를 제외하면 감소로 추이하고 있음. 장기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2.4%p 감소한 21.1%, 개인연금은 4.8%p 감소한 18.4%에 이름.

④ 保證保險

- 保證保險의 경우 당해분기에 20.3%의 原受保險料 成長率을 보임으로써 전분기보다 13.8%p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31.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보증보험이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전분기의 4.5%에서 당해 분기에는 5.0%로 증가하였음.

- 보증보험의 合算比率은 206.3%로서 전분기 보다는 54.9%p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의 134.1%과 비교해 보면 72.2%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不到企業의 續出로 인해 손해율이 전년동기 대비 74.6%p 증가한 193.6%를 기록한 데 기인함.

- 한편, 손해보험종목 중 가장 높은 손해율을 보이고 있는 보증보험이 사업비율에 있어서는 12.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⑤ 其他保險

- 火災保險 및 海上保險, 特種保險의 원수보험료 成長率은 각각 11.5%, -1.0%, -2.9%를 기록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경우는 각각 2.3%, 2.2%, 5.3%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해상보험의 경우는 FY'96 4/4분기부터 계속 負(-)의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동 보험종목들의 合算比率을 살펴보면, 화재보험이 107.6%, 해상보험 90%, 특종보험 89.6%로 나타나고 있음.

- 해상보험의 경우는 합산비율이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손해율은 FY'96 3/4분기 이후 감소하고 있음.

나) 募集形態別 現況

○ FY'97 2/4분기 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會社直扱 10.9%, 募集人 46.2%, 代理店 41.7%, 共同引受 1.1%임(<표 10> 참조).

- 회사직급, 모집인 및 대리점의 경우는 전분기에 비하여 각각 1.2%p, 1.1%p, 0.2%p 증가한 반면, 공동인수는 전분기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0> 손해보험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연 도 모집형태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회사직급	10.6	10.5	9.8	9.7	10.9
모 집 인	39.8	41.8	44.8	45.1	46.2
대 리 점	42.0	42.7	41.5	41.5	41.7
공동인수	7.6	5.1	3.9	3.6	1.1
원수보험료	32,793	36,305	34,459	37,369	34,126

註: 공동인수계약은 손해보험공동인수(화재보험 국공유물건, 방위산업체), 해상·보세화물공동인수(소형선박, 보세화물), 원자력공동인수, 자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 계약을 포함.
資料: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표 10>에 의하면, 모집인에 의한 모집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동인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自動車保險의 損害率이 안정됨에 따라 각 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인수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자동차보험 不良物件이 지속적으로 減少하게 된 데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다) 市場占有率 現況

- 손해보험회사의 規模別 市場占有率 추이에 의하면, 가격자유화 등의 경쟁요인에 따라 대형사와 소형사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으로써 大型社들의 市場支配力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1> 참조).
- FY'97 2/4분기의 上位3社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49.4%)에 비해 1.4%p 증가한 50.8%를 기록하고 있으며,
- 市場集中度를 나타내는 허핀달指數 역시 0.1292(역수 7.7406)로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 증가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표 11> 손해보험 그룹별 점유비 추이(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연 도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점유비	상위1개사	23.1	23.7	23.7	24.1	25.4
	상위3개사	49.4	49.8	50.1	50.2	50.8
	상위5개사	69.0	69.8	69.3	69.9	70.1
	일반사 계	95.0	95.0	95.1	95.2	96.5
	전 업 사	4.7	4.7	4.6	4.5	3.4
	외 국 사	0.4	0.3	0.3	0.3	0.1
허 핀 달 지 수		0.1214	0.1238	0.1237	0.1253	0.1292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3) 資産運用 現況

- FY'97 2/4분기 현재의 運用資産收益率은 9.9%로서 전분기 대비 0.6%p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0.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總資産收益率은 8.1%를 기록하고 있음(<표 12> 참조).

○ FY'97 2/4분기의 자산운용율은 82.5%로서 전분기에 비해 0.7%p 상승하였으며, 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을 살펴보면 現·預金 21.4%, 有價證券 29.8%, 貸出金 23.0%, 不動産 8.3% 등으로 나타났음.

- 안정적으로 투자수익이 확보되는 現·預金의 경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貸出金 역시 당해 분기를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보임.
- 반면, 株式에의 투자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전분기 대비 0.4%p, 전년동기 대비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구성비도 당해 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2>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추이

(단위 :%)

구 분	연 도	FY '96			FY '97	
		2/ 4	3/ 4	4/ 4	1/ 4	2/ 4
투자대상별 자 산 비 중	현 예 금	19.5	19.9	20.4	20.6	21.4
	유가증권	32.1	31.1	30.4	29.5	29.8
	국공채	9.9	9.3	10.1	9.7	10.1
	회사채	6.7	7.0	6.0	5.7	5.9
	주 식	14.8	14.1	13.5	13.3	12.9
	대 출 금	21.3	22.1	22.9	23.2	23.0
	부 동 산	8.8	8.5	8.6	8.4	8.3
	기 타	18.3	18.4	17.7	18.2	17.5
자 산 운 용 율		81.7	81.6	82.3	81.8	82.5
수 익 율	운용자산	10.3	10.0	10.5	9.3	9.9
	총 자 산	8.4	8.1	8.5	7.6	8.1

註: 1) 투자대상별 자산비중은 기별 누적치의 비중임.

2) 수익률 = $2 \times \text{투자수익} \div (\text{연초 또는 분기초 자산} + \text{기말자산} - \text{투자수익}) \times 12 / m$

資料: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각 월호.

(김란 연구원)

3. 保險 政策・制度 動向

가. 金融改革關聯 法律 國會議決

- 國會는 1997년 12월 29일(제186회 임시국회) 國際通貨基金(IMF)체제하의 경제, 금융개혁을 뒷받침할 15개의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등 18개 법안과 예금보험기금채권 정부 보증동의안 등 모두 19개 안건을 처리하였음.
- 동일 통과된 주요 법안은 한국은행법,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은행법, 예금자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조항에 관한 법(금융실명제 대체입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이자제한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상호신용금고법, 선물거래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신용협동조합법, 공인회계사법 등임.
- 금융개혁 관련 법안 중 주요 쟁점이었던 금융감독기구 설치는 1998년 4월 1일자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金融監督委員會(金監委)를 두며 1999년 단일 통합감독기구인 金融監督院(金監院)을 설치키로 확정되었음.
- 金融監督委員長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하며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을 지시, 감독함.
- 또한 1999년중 銀行, 證券, 保險監督院 등 3개 감독기관과 信用管理基金의 제2 금융권 감독업무를 단일조직으로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나, 금감원이 설립전까지 3개 감독기관과 신용관리기금은 현재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금감위의 관할하에 독자적으로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함.
- 금감원장은 금감위원장이 겸임하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

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동 법과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음.

- 금융종합과세 유보, 무기명장기채 발행, 예금비밀보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金融實名制 代替立法의 통과에 따라 1993년 8월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실시 4년 4개월만에 무기한 유보됨.
- 金融所得綜合課稅가 유보되면서 모든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은 물론 종합과세 유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현재 16.5%인 세율을 22%로 인상함.
- 또한 앞으로 1년간 고용안정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중소기업어음보험채권, 증시안정채권 등 실명확인이 일제 면제되는 無記名長期債의 발행이 허용됨.
- 한편 預金秘密保障制度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법관의 영장 없이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열람이 금지되고, 세무당국과 금융감독기관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엄격히 제한됨.

나. 金融機關의 合併 등에 대한 認可基準 制定

-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 발표한 「金融市場安定 및 金融產業構造調整을 위한 綜合對策」 후속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 등을 최대한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동 기준을 제정하여 1997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¹⁾.
- 동 기준의 주요내용을 보면 “合併의 許容範圍 및 認可基準 등을 具體化·客觀化”하여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과 인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증권·보험·종금 등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同種·異種間 합병시 새로운 업무자회사 설치나 유상증자 등 정책적 지원사항을 최대한 허용”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합병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유도하는 것임.

1) 자세한 것은 포커스의 「IMF관리경제시대의 보험산업」 참조..

- 보험사간 합병의 경우 財務健全性基準(생보사: 책임준비금의 1%, 손보사: 연간 보유보험료대비 계약자잉여금 비율 500%)을 만족하지 못해도 이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질 예정임.

다. 金融機關 增資要件 緩和

- 금융기관의 有償增資要件을 1997년 12월 16일부터 완화하여 시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은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등의 경영개선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현행 유상증자 요건과 증자한도는 “최근 3년간 1주당 평균배당금 400원 이상”, “증자비율 납입자본금의 50% 이내, 연간 1,000억원 이내”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增資特例制度를 두고 있음.
- 금융기관의 증자특례제도는 당해 금융감독기관에서 유상증자권고 등이 있고 증권관리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증자요건 및 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임.
- 그러나 IMF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이 시급하고 특례요건이 다소 경직적인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특례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증자는 감독기관의 유상증자 권고 등이 있는 경우 이외에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財務改善計劃을 감독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증자하는 경우 별도의 증권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자가 가능하게 되었음.

라 保險保證基金 擴充

- 정부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3년간 元利金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보험기금 出捐料率을 50%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4개 예

금보험기금 관련법률 개정안을 1997년 11월 25일 의결하여 시행하기로 했음.

<표 1> 변경된 예금자 보호제도 현황

구 분(근거법령)	보 험 대 상	출 연 요 율
예금보험기금(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 1인당: 원리금 전액 - 부보예금: 외화예금, 공공예금, 채권, CD, 개 발신탁, 표지어음, 환매조건부채권 등을 추 가	부보예금액 평잔의 연 0.03%
신용관리기금(신용관 리기금법 시행령)	- 1인당: 원리금 전액 - 부보예금 ○ 종금사: 종금사발행(보증)한 어음, CMA ○ 상호신용금고 : 예·적금, 계·부금	- 종금사: 0.12% - 신용금고: 0.15%
보험보증기금(보험업 법 시행령)	- 1인당 : ○ 기발생: 약정보험금 ○ 미발생: 해약환급금(생보), 미경과보험료 전액(손보) - 부보보험: 개인보험, 법인보험, 보증보험	연 0.15%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증권거래법 시행령)	- 1인당: 원리금전액 - 부보예금: 고객예탁금	연 0.15%

- 보험보증기금은 1997년 10월 말 현재 2,476억원이나 2000년까지는 6,61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임. 동 기금의 보호대상계약은 기존 보호대상인 個人保險契約에 法人保險과 保證保險契約이 추가되었으며, 1인당 보호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는 約定保險金 全額을, 未發生事故의 契約에 대하여는 解約還給金(생보), 未經過保險料(손보) 全額을 보호받게 됨.

- 출연요율은 직전사업년도 수입보험료의 0.1%에서 0.15%로 50%인상되었음.

마. 保險會社の 銀行에 대한 後順位貸出 追加許可

- BIS基準 自己資本比率 미달은행에 대한 보험사의 후순위대출은 은행이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 한하여 1997년 12월 6일부터 허용되었음.
- 이와 같은 조치는 IMF의 구제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은행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1997년 6월 27일 이후 금지해온 것을 허용한 것임.

- 1997년 10월 말 현재 보험사의 후순위대출현황을 보면 은행에 대해 2조 821억 원, 증권사에 대해 6,171억원으로 총 2조 6,992억원이며, 이는 5월에 비해 56.7%나 증가한 상황임. 또한 보험사의 후순위대출의 증가추이는 보험사에게는 不實債權化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바. 交通法規違反者에 대한 自動車保險料 差等化

- 교통법규위반자 및 준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1999년 5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임.
 - 보험료 할증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자 중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h초과) ④ 추월방지 및 금지위반 ⑤ 보행자보호위반 ⑥ 승객추락방지위반 ⑦ 보도침범 ⑧ 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⑨ 음주운전 ⑩ 무면허운전 ⑪ 뺑소니운전” 등으로 交通事故 聯關性이 높은 重大法規 違反者에 한정됨.
- 1999년 5월 계약부터 적용될 割増割引率は 1997년 12월부터 1998년 11월까지 법규위반실적을 집적·분석하고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국내실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임.
 - 중대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율은 과거3년(1997년 12월부터 1998년 11월까지)동안의 위반횟수 및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 교통법규를 준수한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은 무사고기간에 따라 일정수준의 할인을 적용할 예정임.

사. FY'96 損害保險 料率檢證 結果

- FY'96의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에 의하면 自然災害, 巨大事故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 종목의 손해율은 큰폭의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사업비율의 경우 보험가격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2> '96년 손해보험 종목별 요율조정요인(협정, 예정사업비한도)

(단위: %)

보 험 종 목		손 해 율 ¹⁾		사 업 비 율 ²⁾		합 산 비 율			조 정 요 인
		예 정	실 적	예 정	실 적	예정①	실적②	차(①-②)	
화 재	소계	50.5	56.6	44.5	48.4	95.0	101.1	△6.1	6.4
	주 택	40.0	39.5	55.0	55.2	95.0	94.5	0.5	△0.5
	일 반	40.0	53.8	55.0	48.9	95.0	102.7	△7.7	8.1
	공 장	60.0	60.3	35.0	47.3	95.0	95.3	△0.3	0.3
	창 고 ³⁾	60.0	11.9	35.0	36.5	95.0	46.9	48.1	△40.1
해 상	소계	60.7	46.6	34.3	36.0	95.0	80.9	14.1	△14.9
	적 하	60.0	45.7	35.0	37.2	95.0	80.7	14.3	△15.1
	선 박	75.0	70.3	20.0	21.1	95.0	90.3	4.7	△4.9
	운 송	50.0	21.1	45.0	36.1	95.0	57.2	37.8	△39.8
	항공화물	60.0	1.6	35.0	34.1	95.0	35.7	59.3	△62.4
자 동 차	소계	72.7	73.0	25.8	30.2	98.5	103.2	△4.7	4.7
	책 임	76.2	61.7	23.8	29.9	100.0	91.5	8.5	△8.5
	중 합	71.2	78.2	26.9	29.7	98.0	108.0	△10.0	10.3
	운 전 자	70.8	43.3	27.2	76.5	98.0	119.8	△23.8	22.3
	운 전 자	70.8	43.3	27.2	76.5	98.0	119.8	△23.8	22.3
보 증	소계	56.2	38.2	39.3	44.3	95.0	77.5	18.0	△18.9
	신 원	55.0	34.5	40.0	45.9	95.0	74.5	20.3	△21.6
	크레디트	70.0	81.5	25.0	12.1	95.0	93.6	1.4	△1.5
	가계수표	70.0	-	25.0	-	95.0	-	95.0	-
기 술	소계	60.0	71.0	35.0	33.4	95.0	104.4	△9.4	9.9
	기 계	60.0	73.0	35.0	35.0	95.0	108.0	△13.0	13.7
	조 립	60.0	58.3	35.0	38.3	95.0	93.3	1.7	△1.8
	건설공사	60.0	110.7	35.0	21.9	95.0	132.6	△37.6	39.6
책 임	소계	68.7	70.8	26.3	30.2	95.0	97.1	△2.0	2.2
	영업배상	60.0	66.2	35.0	49.1	95.0	101.2	△6.2	6.5
	선주배상 ⁴⁾	60.0	42.8	35.0	29.6	95.0	72.4	22.6	△23.8
	도로운송	60.0	58.3	35.0	27.8	95.0	86.1	8.9	△9.4
	가스사고	70.0	46.7	25.0	50.0	95.0	71.7	23.3	△24.5
	체육시설	70.0	67.3	25.0	27.0	95.0	92.3	2.7	△2.8
	근 재	70.0	73.2	25.0	27.0	95.0	98.2	△3.2	3.4
상 해	소계	45.2	40.2	49.1	57.5	95.0	89.3	5.0	△5.3
	보통상해	50.0	48.4	45.0	52.9	95.0	93.4	1.6	△1.7
	해외여행	40.0	31.3	55.0	63.8	95.0	86.3	8.7	△9.2
	학생안전	50.0	58.0	45.0	178.2	95.0	103.0	△8.0	8.4
종 합	소계	50.0	37.1	45.0	28.9	95.0	66.0	29.0	△30.6
	가정생활	50.0	46.6	45.0	65.6	95.0	91.6	3.4	△3.6
	주택상공	50.0	146.5	45.0	43.5	95.0	190.0	△95.0	100.0
	동산종합	50.0	34.4	45.0	28.1	95.0	62.5	32.5	△34.2
	가정종합	50.0	42.8	45.0	51.8	95.0	87.8	7.2	△7.6
기 타	도 난	40.0	24.1	55.0	47.6	95.0	71.7	23.3	△24.5

註: 1) 통계기간은 창고물건 10년('87 ~ '96), 자동차보험 1년('96), 기타 보험종목 5년('92 ~ '96)이며,

통계기간내 요율수준조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수정하여 산출한 것임.

2) 사업비율은 '96년의 1개년 실적임.

3) 안전율(10%)을 적용하였음

4)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되었음.

資料: 보험개발원, 「FY'96 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총괄)」, 1997. 9.

국내보험동향

- 인상요인이 있는 종목으로는 화재보험(6.4%), 자동차보험(4.7%), 기술보험(9.9%), 책임보험(2.2%)이며, 인하요인 종목은 해상보험(-14.9%), 보증보험(-18.9%), 상해보험(-5.3%), 종합보험(-30.6%), 도난보험(-24.5%)임.
- 자동차보험의 경우 豫定合算比率 98.5%에 비해 103.2%의 실적율을 보여 4.7%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음.
- 이는 운전자나 사회 각계각층의 사고경감운동에 힘입어 손해율이 예정율 72.7%에 근접하는 73.0%를 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율이 인수경쟁심화로 예정율 25.8%보다 4.4%p 높은 30.2%를 기록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임.

아. 傳貫버스 共濟組合 新規進出

- 현재 운영중인 4개 自動車共濟組合(버스공제, 택시공제, 화물공제, 개인택시공제)에 추가하여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이 1997년 12월 24일 건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98년 1월 15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 동 공제조합은 연간 14,312대, 283억원 규모의 전세버스 자동차보험시장에 대해 共濟分擔金(보험료)을 손보사 보험료의 80%수준으로 책정하여 출범 2년 이내에 시장점유율을 80%까지 끌어 올릴 목표로 알려졌음.
- 또한 이외에 덤프트럭, 타이어식굴삭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중장비공제조합이 1998년 상반기중에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은 5개 조합으로 늘어나고 시장규모도 1996년도 7,207억원에서 약 7,500억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며, 손해보험사들과 이들 조합간의 인수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임.

<표 3> 자동차공제조합별 실적현황(FY'96)

(단위: 대, 백만원, %)

조 합 별	계약대수	공제분담금	지출금액	미결추산액	사고율	지급률 ¹⁾
일반택시	241,986	208,868	99,485	63,135	26.6	77.9
개인택시	186,511	28,147	18,249	22,498	7.6	144.8
버 스	76,944	247,629	98,194	127,693	55.6	91.2
화 물	250,930	236,042	73,208	168,507	12.6	102.4
합 계	756,370	720,686	289,135	381,832	20.2	93.1

註: 1) 지급률은 지출금액과 미결추산액의 합을 공제분담금으로 나눈 값임.

(이기형 선임연구원)

海外保險動向

1. 世界貿易機構(WTO) 金融서비스協定 妥結

- 세계무역기구는 1997년 12월 13일 金融市場開放을 위한 세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을 타결하였음.
 - 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未解決 상태로 남겨진 금융서비스 자유화 협정은 5년간의 장기 협상을 통해 타결된 것임.
 -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132개 WTO 회원국의 銀行業, 保險, 資産運用 및 仲介業 分野에 관한 것으로 이들 금융서비스 분야는 效率的인 상품 및 재화의 교역에 필수적인 분야임.
 - 금융서비스 자유화협정이 포괄하는 시장규모는 증권부문 17조 8천억 달러, 은행 대출부문 38조 달러, 보험부문 2조 2천억 달러 등 총 58조 달러에 이르고 있음.
- 협정의 주요 내용은 開發途上國 금융시장의 規制撤廢 및 自由化에 관한 것으로 보험과 관련서비스, 은행과 기타서비스 부문이 주요 대상임.
 - 보험과 관련서비스는 生命保險 및 損害保險 서비스, 再保險 및 再再保險, 브로커나 대리점 같은 보험중개업, 보험에 부수한 기타 서비스 등임.
 - 은행과 기타 금융서비스는 受信業務, 消費者信用, 모기지, 팩토링과 같은 與信業務, 支給과 移替서비스, 引受 및 賣買約定, 外換, 파생상품과 스왑, 先物, 증권 등의 거래, 신규증권 발행의 참여, 자금중개, 포트폴리오 운용 및 청산, 금융정보와 자료의 공급, 부수적인 금융서비스 및 컨설팅 업무 등임.
 - 協定에 합의한 국가 중 銀行 子會社나 支店에 대한 외국 소유권을 전부 허용한 국가는 59개국, 증권사 자회사나 지점에 대한 외국 소유권을 전부 허용한 국가는 44개국, 보험부문을 대폭 개방한 국가는 52개국에 이르렀음.

- 이번 협상의 타결로 외국은행, 증권사와 보험사 설립의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외국기업에 의한 자산운용이나 기타 금융서비스의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임.
 - 자유화의 확대와 규제철폐 등 시장지향적인 새로운 환경하에서는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위한 자본금 규정, 건전한 자산운용, 보험브로커나 계리인의 자격요건 등 건전성 규제가 더욱 요구됨.
-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폭이나 일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밝혔던 自由化 일정을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과정에서 더욱 앞당김으로써 이번 협정 타결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임.
 - 이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양허한 내용은 信用卡會社 現地法人 設立, 금융리스회사 현지법인、합작법인、지점설립, 보험산업의 獨立代理店 및 보험중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손해보험사 현지 및 합작법인 설립 허용, 證券社 및 投信社에 대한 1인당 지분제한 폐지, 信用評價會社 設立 등임.
- 協商結果는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1999년 2월 28일부터 발효되지만 발효일 이전으로 양허한 개방일정은 양허내용대로 移行됨.

(이경희 연구원)

2. 主要國의 自動車保險料率 推移

- 유럽國家에서의 자동차보험요율 추이를 義務保險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체코의 재무부는 의무보험요율을 1998년부터 평균적으로 47%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최대인상율은 60%까지 인상적용되는 계약자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폴란드에서도 대형사 중심으로 의무보험요율의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 Powszechny, Zaklad, Ubezpieczen, SA는 25% 35%, Warta는 13%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프랑스는 요율인하추세가 전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한 상호 회사의 경우 작년 2.5% 3% 인하에 이어 내년에는 4% 인하하여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美國에서는 의무보험요율은 인하되는 추세인 반면, 대형자동차에 대한 요율은 인상되는 추세임.
 - Flex-rating제¹⁾를 채택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경우, 보험감독청이 개인용자동차 보험(private passenger auto insurance)에 대한 기준요율(benchmark rate)을 평균 5% 인하하여 199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기준요율인하폭을 세부적으로 보면 대인배상책임 19.0%, 의료지급 26.5%, 무보험차담보 27.8%, 재물손해 15%임. 또한 지역별 요율에 있어서는 52개지역 중 Full Coverage요율이 인하된 지역은 48개이며, 배상책임요율의 인하는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짐.
 - 한편, 다른 주에서는 보험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고 있는데, 플로리다주의 Prudential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는 7만 8천 계약자들의 손해실적이 양호하여 보험료를 5% 20% 인하하기로 했음.
 - 유타주와 오레건주에서는 Hartford사의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utomobile Insurance Program에 대한 요율을 낮추기로 했는데 이는 주로 계약자들의 손해사정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의무보험손해실적이 안정된 것에 따른 것임. 보험료 인하는 상해나 법규위반실적이 없는 계약자에 대해 평균 2% 이상을 낮추기로 하였음²⁾.
- 泰國에서는 상무성이 모터사이클, 3륜택시, 트레일러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요율을 1997년 12월 1일부터 10%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음.

1) 텍사스 보험감독청은 Flex-rating제를 1991년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동 제도는 보험 회사가 기준요율(benchmark rate)의 $\pm 30\%$ 범위를 초과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청에 신고(file)한 후 사용해야 함.

2) Financial Times, World Policy Guide, November 1997

- 또한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사망 5만 바트(baht)에서 8만 바트로, 초기보상금은 1만 바트에서 1만 5천 바트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自動車傷害에 대한 保護法(the Protection for Motor Vehicles Accident Act 1992)을 개정하였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3. 美國 損保社の 信用等級 推移

- 미국 손해보험사의 1997년 7월 16일 현재의 신용등급을 A.M Best사의 분석에 의하면, A++(superior)등급회사는 감소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最劣等級(E: under state supervision, F: in liquidation)은 두배로 증가하였음. 이는 과거 10년간 軟性市場(soft market)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표 1> 미국 손해보험사의 신용등급그룹별 추이

(단위: %, 회사수)

구 분	등 급	등급분포			
		1988	1995	1996	1997
Secure Rating	소계	84.4	87.3	86.7	86.5
Superior	A++, A+	34.3	17.1	14.0	12.6
Excellent	A, A-	35.5	49.6	51.9	51.6
Very Good	B++, B+	14.6	20.6	20.8	22.3
Vulnerable Rating	소계	15.6	12.7	13.3	13.5
Fair	B,B-	7.3	7.4	8.3	7.5
Marginal	C++,C+	1.2	1.3	1.8	1.4
Weak	C,C-	0.6	1.1	1.1	0.8
Poor	D	5.4	0.4	0.4	0.9
State Supervision/Liquidation	E/F	1.2	2.5	1.6	2.9
전체		851	1,136	1,132	1,126

資料: A.M. Best, Best Week Property/Casualty Supplement, November 10, 1997.

- 이를 그룹별로 보면 재무적으로 건전한 Secure Rating은 전체적으로 보아 전체사의 86.5%정도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Vulnerable Rating은 13.5%로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 Secure Rating그룹의 경우 Superior(A++, A+)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Excellent, Very Good은 증가하고 있으며, Vulnerable Rating그룹의 경우에는 주로 State Supervision/ Liquidation등급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등급의 변화는 세부적으로 보면, Superior(A++, A+)의 감소추이는 이들 대상회사들의 리스크프로필이 평균보다 높고 경쟁력이 약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A.M Best사는 분석하고 있음.
- State Supervision/ Liquidation등급의 경우 1996년 1.6%에 비해 두배가 넘는 2.9%를 기록하고 있음. 지급불능회사수는 1900년대 초 거대손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증가하여 1993년에 정점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임.
- 지급불능율은 州保險監督廳이 보험사에 대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강화하고 支給餘力規制(Risk Based Capital Requirement)의 시행으로 인해 개선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또한 동사의 신용등급평가제도도 부실보험회사의 조기발견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을 보고 있음.

(이기형 선임연구원)

4. 日本 保險社の 後順位貸出比率 現況

- 일본의 금융기관은 1990년부터 後順位貸出을 허용하여 왔음. 당시 대장성은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에서 후순위대출을 자기자본의 일부로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허용했음.
- 도시은행과 지방은행들은 후순위대출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도 후순위대출의 잔고가 급격히 적립되어 왔음.
- 최근 은행들의 경영파산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후순위대출부분에 대해 전액 貸損處理될 상황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들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추세임.

- 보험사들의 후순위대출이 일반대출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1997년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도시은행, 지방은행과 영업면에서 관계가 깊은 회사(東京生命 24.2%, 第百生命 22.6%, 日本火災 24.3% 등)가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편임.
- 明治生命의 경우 350억엔의 후순위대출을 제공한 北海道 拓殖銀行이 1997년 11월 17일 파산함으로써 채권회수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
 - 千代田生命은 대출해 간 기업의 경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기한이 도래 되면 연장하지 않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른 보험사들은 대출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에 차등을 두거나 대출금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또한 東京生命은 변제기간이 돌아온 후순위대출에 대해 변제를 대신하여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는 등으로 전환을 기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은행들이 후순위대출과 동일하게 후순위채권이 자기자본산입에 인정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1> 일본 보험회사의 후순위대출현황

(단위: %, 억원)

생 명 보 험 회 사			손 해 보 험 회 사		
회 사	점유비율	잔 고	회 사	점유비율	잔 고
東 京	24.2(23.8)	1,125	日本火災	24.3(24.1)	1,245
第 百	22.6(21.2)	2,730	安全火災	18.8(16.5)	1,663
日本團體	22.1(23.4)	3,413	三井海上	14.5(14.3)	849
朝 日	19.1(17.9)	7,338	住友海上	11.9(12.0)	690
明 治	18.2(18.1)	10,428	東京海上	9.6(9.5)	1,108
大 同	16.8(15.0)	2,192			
安 全	16.6(13.8)	5,873			
東 邦	16.5(14.4)	2,450			
協 榮	16.4(15.0)	3,568			
千 代 田	15.1(14.0)	3,815			
太 陽	14.7(14.3)	3,756			
富 國	13.7(13.4)	1,851			
三 井	13.2(12.7)	4,950			
第 一	12.1(11.5)	9,828			
住 友	12.1(10.9)	7,729			
日 本	10.7(10.8)	13,853			

註: ()의 비율은 1996년 3월 기준임.

資料: 일본경제신문, 『1997.12.8』

(이기형 선임연구원)

5. 日本의 保險市場 自由化 進展에 따른 販賣채널 動向

가. 保險販賣채널 再編의 要因

- 최근 일본의 보험시장에서는 자유화라는 대외적 요인과 보험회사의 내부요인에 의해 保險販賣채널의 再編이 진행되고 있음.
- 外部要因: 保險市場自由化
 - 1996년 10월 자회사를 통한 損・生保相互進入이 실현되었으며, 생보사의 配當自由化에 이어 손보의 경우도 1998년 7월에는 保險料率이 자유화될 예정임.
 - 이러한 자유화된 환경하에서 생존하는 첫째 조건은 비용(cost)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經費節減에서 최대 초점이 되는 것이 그 過半을 점하는 販賣費用이라고 할 수 있음.
- 内部要因: 過多한 販賣費用
 - 생보의 경우 업계전체의 營業職員(生保lady)¹⁾은 약 39만명으로, 이들의 定着率은 매우 낮은 실정임(2년 후 정착율 10%정도).
 - 업계전체로 보아 매년 약 15만명이 영업직원으로 등록을 하지만 그 중 약 반수가 계약을 1건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사직하고 있는데, 이들의 초임을 10만엔이라고 할 경우 급여로만 약 900억엔이 쓸데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임.
 - 손보의 경우, 약 62만개의 代理店이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稼動率이 낮은 곳이 많음.

1) 상장·점두공개 등 대·중기업의 직장사원을 주요 고객으로 하며, 이들 사원의 직장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영업을 행함. 직장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동 시장을 「職域」이라 하는데, 현재 생보lady가 직역을 독점하고 있으며, 전 생보lady의 60%가 직역에 의존하고 있음.

나. 保險販賣채널에 대한 最近 動向

(1) 「構成員契約規制」의 撤廢要求

- 구성원계약규제란 企業代理店²⁾이 모기업과 그룹기업의 종업원에게 生命保險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禁止하는 규정임³⁾.
 - 동 규제에 의해 職域에 있어서 생보상품은 생보영업직원이 손보상품은 기업대리점이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96년 10월 生損保相互進入이 시작되면서 생보영업직원과 기업대리점간의 衝突이 발생하게 됨.
 - 최근 손보회사와 기업대리점은 構成員契約規制의 撤廢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기업대리점의 입장에서는 그룹사원에게 생보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손보회사도 기업대리점을 통하여 子會社生保의 상품을 판매하기를 원함.
 - 그러나 동 규제가 철폐되면, 기업대리점이 생보영업직원을 직역으로부터 閉出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보는 勞使一體로 철폐에 반대하고 있음.
 - 구성원계약규제가 폐지되면 損・生保社間 기업대리점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쟁이 치열해질 것임.
 - 생보는 職域에서의 새로운 판매채널 확보를 위해 기업대리점에 생보의 판매를 위탁하여야 하는데, 기업대리점은 본래 손보를 판매해 왔고 손보사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생보사가 기업대리점을 판매채널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손보사보다 높은 手數料率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손보사의 입장에서도 子會社生保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생보에 간단히 양보할 수만은 없는 입장임.
- 2) 상장·공개기업을 위시한 대·중기업의 계열회사로서 그룹기업과 사원에게 손해보험을 판매함.
- 3) 동 규제는 기업대리점이 종업원에게 생보상품을 압력 판매하거나 생보영업직원을 직역에서 閉出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함.

(2) 損保代理店の 整理・統合

- 1998년 7월 損害保険料率이 自由化될 경우 손보험료 부분보다는 부가보험료에 대한 가격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에 따라 경비절감이 절실히 요청될 것임.
 - 손보대리점 중에는 小規模 副業代理店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수입보험료는 1억엔을 초과하지만 업무처리가 조잡하거나 사고율이 높은 問題契約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대리점도 적지 않은데, 손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소규모대리점에도 지원을 해줘야 하며 문제대리점의 경우 많은 코스트를 유발함.
- 손해보험회사에 의한 代理店 選別の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는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效率的인 代理店을 더 선호하게 될 것임.
 - 일반 대리점보다는 종업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대리점이 선호되고,
 - 우수한 대리점과는 거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지점의 업무를 동 대리점에 위탁함으로써 지점을 폐쇄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대리점은 競争力強化를 위해 정리·통합을 통한 大型化를 추구하고 있음.
 - 생존을 위해서는 단순한 합병에 의한 대형대리점이 아니라 손보사의 지점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는 「總代理店」이 유망함.
 - 이는 支店再編으로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손보사의 방침에도 합치되며, 총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지점업무의 수탁에 대한 수입뿐 아니라 보험회사의 재원에 협력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대한 발언력도 확보할 수 있음.
 - 이 외의 零細代理店の 경우에는 대리점순위(rank)에 의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므로 subagency(總代理店の 傘下代理店)로서 대형대리점의 산하에 들어감으로써 수수료율을 상승시킬 수 있음.
- 현재의 보험업법하에서는 총대리점이나 subagency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즉시 실행되기는 어렵지만 1998년 7월 요율자유화가 진행되면 상황은 변화할 것임.

(3) 新販賣채널

- 料率自由化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채널 중 하나는 1996년 4월 新保險業法の 시행으로 도입된 保險仲介人(broker)임.
 - 보험중개인이 활약할 수 있는 조건은 各社の 料率과 商品이 相異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일본의 생보상품이 각사마다 유사하였기 때문에 중개인제도의 정착이 의문시되었으나 1996년 12월 日・美保險協商으로 손해보험분야의 효율자유화가 결정되어 일본에서도 중개인의 활약이 기대됨.
 - 보험중개인의 등록 첫날인 1996년 8월 30일에는 불과 2社밖에 신청하지 않았으나, 1997년 들어서 신청수가 증가하여 10월 현재는 39社가 등록하였음.
- 이와 더불어 通信販賣라는 유통형태에 의해 보험판매의 혁신이 시작되고 있음.
 - 1997년 9월 미국계 손보인 아메리칸홈社の 自動車保險 통판과 오릭스生命의 통판이 개시되었으며,
 - 三井海上에서는 代理店이 판매하는 通販을 개발하였음.
 - 통판은 거래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 있어서 유력한 판매채널이며,
 - 대형대리점의 경우 數量效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운 고객개척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금후에는 인터넷(internet) 등의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보험판매도 증가할 것임.
- 한편, 2001년까지 銀行에 의한 保險의 窓口販賣가 실현될 예정으로 있음.
 - 은행의 경우 보험판매의 노하우(know-how)가 없으므로 본격적인 보험판매를 위해서는 保險代理店과 提携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따라서 窓販의 許容은 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사업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김란 연구원)

6. 獨逸 損害保險市場 自由化 以後의 動向

가. 獨逸 損害保險市場 自由化의 經緯

- 독일의 보험시장 자유화는 EU市場統合 과정에서 채택된 각종 指針을 國內法化 하면서 진행되었음.
 - 손해보험시장의 경우, 1994년 「EU第3次損害保險指針¹⁾」에 의해 個人分野(mass risk)保險에 대한 자유화가 실현됨으로써 완전 자유화됨.
- 第3次損害保險指針(1992년 채택)은 母國監督主義에 의한 單一免許制度 도입 및 서비스提供의 完全自由化, 約款·料率의 완전자유화, 保險監督規制의 調和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국내법의 시행기한은 1994년 7월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EU역내에서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모국에서 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는 타국에서도 유효하며, 모국 면허만으로도 타가맹국에 지점·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음. 동 보험회사의 감독은 모국의 감독당국이 행함.
 - 서비스제공의 자유화는 기업물건과 개인물건을 불문하고 모든 보험종목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가능하게 함.
 - 약관·요율의 완전자유화는 사전인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단일면허제 및 서비스제공의 완전자유화를 실현하고 EU역내 보험시장의 통합을 완성시키는 것임.

1) ○ 第1次損害保險指針(1973년 채택): 지침의 영향을 받는 손해보험사업의 범위, 보험회사의 域內 타국에의 진출요건을 투명화한 免許取得要件, 財務要件의 統一, 支給能力의 最低基準 등을 규정함. 단, 사업면허의 부여권한은 受入國측이 가지며, 사업형태 및 요율·약관 등에 대해서도 수입국측의 법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第2次損害保險指針(1988년 채택): 企業物件(large risk)에 관한 서비스提供의 自由化를 규정함으로써 EU역내의 보험회사라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물건에 대해서는 그 리스크(risk) 소재국에 영업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리스크 소재국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됨.

나. 獨逸保險監督法の 整備

1) 獨逸保險監督制度의 概要

- 독일보험법은 보험감독법(VAG)과 보험계약법(VVG)을 중심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에 관한 법률(PflVersG), 경쟁제한금지법(GWB), 상법·민법 등으로 구성됨.
 - 獨逸 保險監督法の 특징은 ① 약관 및 요율에 관한 사전인가 및 그 후의 계속적 감독을 통한 實質的 監督主義에 있었는데 이는 자유화로 대폭 변경되었음.
 - ② 보험사업의 면허가 보험감독법에 기재된 保險種類²⁾마다 부여됨.
 - ③ 보험모집에 관한 감독법규는 존재하지 않음.
 - 독일의 민영보험회사 및 2개 주 이상에서 영업하는 공영보험사업자를 감독하는 것은 재무성산하의 聯邦保險監督廳(BAV)이며, 1개주에서만 영업하는 공영보험사업자는 各州當局이 감독하고 있음³⁾.
 - 보험관련단체로서 獨逸保險協會(GDV)가 존재하며, 1996년 말 기준으로 459개사가 회원으로 되어 있음.
 - 料率算出에 관한 團體로서 HUK(배상책임·상해·자동차·소송비용보험자협회), DTV(해상보험자협회), 舊 VdS(손해보험자협회) 등이 존재하였으나 1995년에 VdS로 통합되었으며, 1997년 1월 VdS와 생명보험단체인 VdL이 GDV로 統合됨. 또한 종래 보험금액 10억DM 이상의 대기업물건(화재·이익보험)에 대해서는 KOKOs라는 요율산정조직이 산출한 요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1995년 5월에 최대규모의 보험사인 Allianz사가 탈퇴함으로써 동 조직은 사실상 붕괴되었음.
- 2) 상해, 질병, 육상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해상·내수 및 하천의 선박, 화물, 화재 및 자연재해, 雹害·霜害 및 기타물적 손해, 자동차손해배상책임, 항공기손해배상책임, 선박손해배상책임, 일반배상책임보험, 신용, 보증, 재무상의 손실, 소송비용,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위한 부조급부, 생명, 혼인 및 출산보험, 변액생명보험, 톤틴(tontine)연금, 카피탈리자시옹(capitalization), 연금기금관리업무 등 24종류임.
- 3) 1995년 말 현재 BAV가 감독하는 보험사는 718사, 각 주가 감독하는 보험사는 1,439사임.

2) 第3次損害保險指針의 國內法化

- 母國監督主義에의 對應: EU域內에 본거를 둔 보험회사는 支店設置 또는 서비스 供給去來의 방법으로 독일내에서 원수사업을 행할 수 있음. 이 때 원수사업에 관한 감독은 모국의 감독당국이 행함(VAG 제110a조).
 - 普通保險約款의 事前認可制度 廢止⁴⁾: 제2차손해보험지침에 의한 기업물건(large risk)에 이어 기타 보험종목에 대해서도 사업면허 신청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기초서류에서 보통보험약관이 삭제되었음(VAG제5조). 단, 대체질병보험 및 강제 보험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부가서류로서, 연금공제조합 및 사망공제조합에 대해서는 기초서류로서 보통보험약관의 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음.
 - 保險料率의 事前認可制度 廢止: 종래는 보험감독법상에 있어서 생명보험, 대체질병보험, 상해보험(연금보험 · 보험료반환부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사전인가가 의무로 되어 있었으나 철폐되었음. 단, 대체질병보험에 대해서는 기초서류의 부가서류로서, 연금공제조합 및 사망공제조합에 대해서는 기초서류로서 보험료표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의 사전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음.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경우도 「自動車保有者の 義務保險에 關한 法律」 제8조 및 「自動車賠償責任保險料率에 關한 政令」의 철폐로 요율의 사전인가가 필요 없게 됨. 단, 동 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보통보험약관만은 사전감독의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兼營禁止의 維持: 생명보험사업 및 대체질병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겸영금지가 유지되었음. 기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겸영이 가능한데, 訴訟費用保險事業의 겸영에 대해서는 그 査定 · 支給業務를 타기업에 양도하지 않으면 안됨(VAG제8a조).
 - 生命保險業務의 種目追加: 第3次生命保險指針의 國內法化에 의한 변경사항인데, 생명보험업무에 토티연금, 카피탈리자시용 및 연금기금관리업무가 추가되었음.
- 4) 사전인가제의 폐지는 실질적 감독주의를 견지해 온 독일 보험감독제도의 중요한 변경임.

다. 獨逸保險市場의 現況

1) 獨逸保險市場의 現況

- 기업물건(large risk) 및 개인물건(mass risk)에 대한 自由化는 독일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표 1>에 의하면 자유화 이후 GDV(독일보험협회)가맹 보험회사의 原受保險料 成長率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 1996년도에는 3.2%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생보 및 민간강제개호보험을 포함한 질병보험의 성장에 의한 것이며, 손해보험사업만을 보면 전년대비 0%의 성장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企業火災物件을 포함한 화재보험은 1995년 전년대비 -6.3%, 1996년 -1.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 또한 1994년에 요율이 자유화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 自動車保險은 1996년 -4.5% 성장하여 제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됨.
- 이러한 상황의 배경을 살펴보면, 보험회사간 격심한 料率競爭이 주원인이며, 이와 더불어 최근의 고실업 저성장이라는 독일경제상황도 중요한 요인이 됨.

<표 1> 보험종목별 국내원수보험료

(단위: 억DM, %)

보 험 종 목	1996		1995		1994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생명보험	928	5.0	884	6.5	830
질병보험	344	7.2	321	13.5	283
민간강제개호보험	29	18.3	25	-	-
손해보험	961	0	960	3.1	932
자동차보험	421	△ 4.5	441	2.1	432
일반배상책임보험	115	7.5	107	5.3	101
상해보험	94	2.5	91	4.0	88
화재보험	65	△ 1.5	66	△ 6.3	70
건물종합보험	65	7.0	60	15.1	52
신용/ 항공/ 원자력보험	24	7.0	22	7.4	21
GDV가맹보험회사합계	2,257	3.2	2,187	5.9	2,065
전보험회사합계	2,327	3.0	2,259	6.0	2,131

資料: GDV, "Die deutsche Versicherungswirtschaft", Jahrbuch, 1996.

해외보험동향

○ 동 자유화는 외국기업의 獨逸保險市場에의 進入과 國境間去來(cross-border)를 촉진함.

- 1995년 중에 독일 국내에 支店을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는 12개사였으며, 그 중 3개사가 생보였고 나머지 9개사는 손보였음.
- 서비스제공의 자유화로 인하여 타가맹국으로부터 직접 國境間去來를 행하는 보험회사로서 연방보험감독청(BAV)에 등록을 한 보험회사는 1996년 58개사였음.

2) 自動車保險市場의 現況

○ 自動車賠償責任保險 自由化를 계기로 요율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동차보험⁵⁾의 보험료수준이 평균 10%정도 인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6년에는 負(-)의 성장률을 기록함.

- <표 2>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에 의하면,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자유화 이전부터 이미 요율경쟁이 행해지고 있었음.

<표 2>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

(단위: %)

연 도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종합차량보험	준종합차량보험
1980	99.2	94.2	79.7
1982	96.3	89.7	86.4
1984	102.0	94.1	109.9
1986	99.2	92.0	92.1
1988	100.0	84.6	81.1
1990	93.5	92.7	90.0
1991	94.9	98.9	86.4
1992	98.4	105.6	95.3
1993	97.9	100.1	100.1
1994	95.3	82.0	76.5
1995	96.7	75.6	68.7
1996	98.0	80.0	65.0

資料: GDV, "Die deutsche Versicherungswirtschaft", Jahrbuch, 1996.

- 1980년대에 요율자유화가 시행된 準綜合車輛保險과 綜合車輛保險의 경우 손해율이 1990년 이후 악화되었는데, 그 원인은 1994년의 요율자유화에 대비하

5)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준종합차량보험, 종합차량보험, 탑승자상해보험 등으로 구성됨.

여 각사가 요율경쟁을 경주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더하여 차량도난사건이 빈발하여 1993년에는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는 사태를 초래함⁶⁾.

- 保険料自由化 이후 새로운 유형의 보험회사들이 설립되어 활약하고 있음.
 - 대리점을 통해 판매를 하면서도 전통적인 전속대리점에 의존하는 보험회사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인 일명 低코스트(cost)保險會社가 등장하였음.
 - HUK-Coburg사, DEVK사, HDI사, Deutscher Lloyd사, Die Alternative사 등은 10%정도 낮은 보험료를 설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낮춘 부업대리점제도 등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
 - 또한 電話 등을 사용하여 보험중개자 없이 보험을 판매하는 直接販賣채널(direct channel)이라는 형태의 보험회사가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동 형태의 보험회사는 중개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으며 계약자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우량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GDV의 추계에 의하면,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은 전속대리점이 75%, 보험중개인 10%, 캡티브중개인, 은행 및 직접판매채널이 각각 5%임⁷⁾.

3) 企業火災保險의 現況

- 보험금액 10억DM 이상의 기업물건을 제외한 화재보험의 경우 종래부터 이미 자유화되어 있었는데, 企業火災保險의 수입보험료 및 손해율의 추이는 다음 <표 3>과 같음.
 - 1990년대 초까지는 각 사의 外形成長競爭에 따른 요율인하로 損害率이 악화되었으나, 1992 1993년의 대폭적인 수정으로 인하여 이후 손해율이 개선됨.

6) 1994년 이후 손해율의 개선은 보험료의 상승과 신규등록 후 2년미만의 차량에 대한 전손시 취득가액 지불조항 폐지 및 차량도난건수 감소에 기인함.

7) 직접판매채널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① 독일 자동차보험계약은 자동계속조항에 의해 계속되며, ② 상법상 보험계약이 소정의 서면에 의해 행해지도록 되어 있고, ③ 독일 계약자들은 인근의 대리점에서 직접 대면을 통해 보험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임.

해외보험동향

- 그러나 1995년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으며, 1996년도의 예측치도 -5%정도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독일 국내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니즈(needs)의 변화 및 국외보험회사와의 격한 경쟁에 직면해 있기 때문임.

<표 3> 독일 기업화재보험

(단위: 10억DM, %)

연 도	수입보험료	보 험 금	손 해 율
1986	2,907	2,236	76.9
1987	2,957	2,289	77.1
1988	3,039	2,663	89.0
1989	2,949	3,452	117.3
1990	2,900	2,513	86.5
1991	3,388	4,284	127.9
1992	3,639	3,181	88.3
1993	4,081	3,011	75.3
1994	4,281	3,369	79.1
1995	4,214	3,252	76.7
			88.5

資料: VdS, "German Insurance After Liberalization", Financial Times, 1997.

○ 獨逸國內保險會社の 對應

- 1995년 보험금액 10억DM 이상의 火災・利益保險 企業物件의 요율산출단체인 KOKOs가 崩壞됨으로써 보험사들은 獨自의 戰略과 언더라이팅이 필요하게 됨.
- 독일 최대규모의 보험회사인 Allianz사의 경우, VdS(손해보험자협회)요율체계를 기준으로 요율구분을 보다 세분화한 獨自의 料率體系를 구축하는 한편 리스크평가기법에 있어서도 기술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경영기법, 정보전달흐름, 관리체제 등 企業리스크와 安全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는 기법들을 도입하였음.
 - 이 결과, 동 사의 1996년 기업화재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6억DM로, 시장점유율은 1995년의 17.1%에서 16.4%로 낮아졌지만 1억DM의 보험영업이익을 실현하였음. 이는 외형성장 중시에서 收益重視로 經營戰略이 轉換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시장점유율 2위인 Gerling사도 顧客對應型의 요율을 도입하여 종래보다 평균 10%에서 15%정도의 보험료인하가 가능해 졌음.

라. 獨逸保險市場의 將來

- 보험시장 자유화는 再保險會社에 의한 原受會社그룹의 統合⁸⁾ 및 相互會社間의 合併⁹⁾ 등 보험회사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規模의 經濟를 추구하고 經費節減效果를 지향하는 것임.
 - 보험인수 측면에서 보면, 자유화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험요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料率區分을 細分化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통계적 타당성을 가진 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베이스의 크기가 중요하며, 또한 고도의 노하우(know-how)가 요구됨.
 - 이러한 의미에서 합병에 의한 시장점유율 확대는 의미를 가지며, 각사의 통합이 금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보험회사간 통폐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후 가장 큰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199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EU의 通貨統合임.
 - 유로通貨가 도입되고 EU위원회가 지도하고 있는 稅制의 調和가 진전되면,
 - 보험계약자는 각국 보험사의 상품내용과 보험료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며,
 -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外換리스크가 없어지므로 서비스제공의 자유화를 통하여 國境間去來(cross-border)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됨.
 - 이에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가세하여 보험사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 한편, 통화통합 이후부터 각국이 자국통화를 전면적으로 유로로 전환할 때까지의 經過期間 동안에는 각국 통화와 유로 2종류의 通貨가 混在되어 사용될 것이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2종류 거래에 대비하여 多額의 資本을 축적하는 등 체계적 대응이 필요할 것임.

(김란 연구원)

8) Munich재보험사가 손해보험사인 Victoria그룹, 생명보험회사인 Hamburg Mannheimer사 및 질병보험회사인 DKV사를 통합하여 독일 원수보험회사 제2위인 Ergo그룹을 설립

9) 중견생명보험상호회사인 Gothaer그룹과 Berlin Kölnische그룹이 합병하여 Parion그룹이 됨.

7. 콜롬비아의 保險産業 現況

가. 保險市場 改革

-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市場指向的인 經濟運營을 위해 規制緩和, 市場自由化, 民營化 등을 단행하였음. 이러한 환경들이 보험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는 모범적인 事例로 언급되고 있음.
- 콜롬비아 경제는 1989년부터 시장을 개방하여 國際化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모든 산업과 금융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음.
- 보험산업은 1990년에 料率自由化, 再保險自由化, 外國人投資의 自由化 등 자유경쟁의 새로운 시장구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法規改正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自由競爭: 공동상품과 공동요율을 폐지하고 自由競爭體制로 대체하였으며 國有保險社의 獨占도 폐지함.
 - 支給餘力: 準備金과 같은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保險種目別 資本金을 계산하고 보험사로 하여금 이를 보유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動的 支給餘力 基準은 자유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음. 보험사 설립을 위한 最小資本金 규모도 입법화되었는데 최소자본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조정됨.
 - 準備金: 未經過保險料積立金, IBNR, 지진보험 및 수출신용보험의 非常危險準備金, 생명보험의 준비금 등 4개의 준비금을 규정하였음.
 - 準備金投資: 의무적인 투자규정을 폐지하여 유연한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이 결과 最適投資收益率 달성이 가능해짐.
 - 外國人投資: 외국인투자에 대한 자유와 해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

- 再保險: 보험자들이 해외시장에서 재보험을 구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보험 계약과 의무적인 국내보유에 관한 조항을 폐지함.

나. 改革의 效果

- 1989 ~ 1991년 동안에 콜롬비아의 보험산업이 새로운 법규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입보험료는 하락하였음(<표 1>참조).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料率競爭으로 몇몇 보험종목에서 요율이 인하되었다는 점과 재보험시장의 연성화(soft market)에 기인한 것이기도 함.
- 그러나 1992년에는 회복세로 반전되어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同年에는 26.3%, 1994년에는 35.9%에 달하였음.
- 1995년의 수입보험료 성장율은 16.1%로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는데 이는 新規自動車 구입이 둔화되고 中古自動車の 實質價值가 하락하였으며 재보험시장의 연성화에 따른 재보험의 요율인하 및 1994년의 폐소貨 再評價에 기인한 것임.

<표 1> 콜롬비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콜롬비아페소, 백만달러, %)

	수입보험료 ¹	실질성장율 ²	환율(콜롬비아페소/ 미국달러)	수입보험료 (미국달러)	전년대비 증가율
1989	279,047	5.9	386.46	722.1	4.4
1990	363,518	-1.6	507.56	716.2	-0.8
1991	423,185	-8.2	628.04	673.8	-5.9
1992	582,468	10.0	684.38	851.1	26.3
1993	900,486	26.1	788.77	1,141.6	34.1
1994	1,283,831	16.3	827.50	1,551.5	35.9
1995	1,657,384	8.1	919.90	1,801.7	16.1

註: 1) 명목기준

2) 물가상승률이 없을 때의 성장률

資料: LOMA, Resource, 1997.10.

- 시장개방이 보험산업에 미친 영향은 보험투영도, 자본금과 같은 지표에서도 뚜

렛이 나타나며 소비자와 보험사 등에도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쳤음.

- 保險投影度は 1980년의 1.2%에서 1989년에는 1.9%로, 1995년에는 다시 2.4%로 높아졌음.
- 最小資本과 支給餘力에 대한 규제로 인해 1995년에는 자본금이 521% 증가하여 31억 달러에 이르렀음.
- 規制緩和과 市場開放이 시장을 경쟁적이고 동태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
-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料率引下와 保險金支給이 증가하는 등 언더라이팅 손실을 경험하였으나 投資에서의 收益率 向上으로 보험사의 純利益은 증가하였음.

○ 市場開放과 規制緩和로 현지 브로커회사와 해외보험사 및 재보험브로커들 사이의 合作(partnership)이 촉진되었고 판매채널도 크게 변화됨.

- 獨立代理店은 회사와 고용계약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 보험사와 이들과의 유대관계는 감소되었고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은 브로커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음.
- 개방경제하에서는 보험사의 판매력이 강화되어 직급판매가 1990년전의 43%에서 57%로 증가하였음.
- 마케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방 전에는 43%의 보험사만이 마케팅부서를 두었으나 개방 후에는 65%가 마케팅부서를 신설하였고 86%가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콜롬비아의 새로운 판매채널은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제도로 이 시스템은 기존의 금융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大量販賣가 가능해짐.

○ 開放經濟, 規制緩和된 환경 하에서 보험회사들은 이전에 비해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資本金 증가를 수입보험료의 성장과 비교해 보면 수입보험료 1달러당 자본금이 크게 증가하여 국내사의 경우 1989년의 0.7 달러에서 1995년에는 1.8 달러로 거의 3배나 증가하였음. 이는 자본금 증액 없이 生産性を 향상시킨 것을 의미함.
- 개혁의 과정에서 3개 보험사가 引受되었지만 이는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이고 순수한 시장의 압력으로 인한 賣却이나 인수는 없었음.
- 자유경쟁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價格的 側面보다는 서비스적 측면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보험사가 고객의 니드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經費節減, 情報技術, 新商品開發, 商品特化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차별화 시키는 전략을 채택함.

다. 保險市場 構造

- 콜롬비아 보험산업의 實質收入保險料는 1980년대에 매년 10% 이상 성장하였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 것임.
 - 총수입보험료는 1980년의 4억 1천만 달러에서 1989년에는 7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여 75% 정도 성장하였는데 최근 콜롬비아의 보험시장은 構造的인 變化를 경험하고 있음.
- 전반적인 시장구조는 생명보험의 市場占有가 1932년의 61.0%에서 1995년에는 6.5%로 급락하는 대신 自動車保險, 健康保險, 技術保險 등 새로운 분야가 성장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가 27.5%로 증가하였으며 기계보험도 7.3%를 점유하고 있음. 개인보험 분야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나 과거에는 경직적인 정책과 요율로 인해 성장에 제한을 받아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시장환경의 변화로 시장점유가 증가하고 있음.

<표 2> 콜롬비아 보험산업의 시장구조

(단위: %)

	1932	1950	1975	1989	1994	1995
생명·상해	61.0	34.0	15.0	5.5	6.7	6.5
운송	9.0	26.0	17.0	6.7	5.4	5.3
화재 및 기업	29.0	25.0	19.0	15.0	8.3	7.8
이행보증	-	2.0	5.0	6.4	6.5	6.5
자등차	-	7.0	20.0	26.1	28.5	27.5
건강	-	-	2.0	6.3	7.5	6.6
도난	-	-	4.0	1.3	2.3	2.1
단체생명	-	-	11.0	13.0	10.3	10.8
항공 및 해상	-	-	-	3.3	4.4	3.4
지진	-	-	-	2.9	4.7	4.8
기계	-	-	-	6.1	7.6	7.3
책임보험	-	-	-	5.0	4.8	4.8
기타	1.0	6.0	7.0	2.5	3.0	6.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LOMA, Resource, 1997.10.

- 시장개방으로 외국자본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였는데 外國資本의 투자가 總納入資本의 11.3%에 이르는 2천만 달러 수준임. 신규투자자와 다양한 보험종목을 제공하는데 외국자본의 역할이 증가해왔음.

<표 3> 콜롬비아의 보험산업 현황(1995)

	회사형태		자본소유			수입보험료 (백만달러)
	손해보험	생명보험	국내자본	해외자본	국유	
합계(개사)	34	22	22	10	3	1,802

資料: LOMA, Resource, 1997. 10.

라. 향후 전망

- 전반적으로 콜롬비아의 보험시장은 향후 5년 정도는 상당한 好調勢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社會保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임.
- 최근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경에는 수입보험료가 두 배에 이르는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경희 연구원)

8. 인도네시아 損害保險動向

가. 保險社 設立과 事業營爲

- 1992년 保險業法 2조 8항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설립주체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國民 또는 法人 또한 인도네시아 政府도 법인으로 취급하여 보험사를 설립가능
 -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법인과 外國社가 합작한 보험회사
-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지 못한 保險事業者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그러나 해외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인도네시아 보험사업자가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의 경우. 둘째, 인도네시아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 셋째, 보험계약자가 인도네시아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아닌 경우.
- 프론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外換管理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보험료의 해외 송금이 가능함.

나. 擔保力 및 料率體系

- 1993년 법령224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支給餘力은 손해보험회사는 보유보험료(net premium)의 10%, 생명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의 1%, 건강 및 재해보험사는 보유보험료의 10%임.
 - 일반보험회사의 경우 다양한 제약과 조건하에서 지급여력을 계산하기 위해

현·예금, 투자, direct premium receivable, 투자수입, 회사소유 부동산, 컴퓨터 하드웨어로 자산을 구별함.

- 또한 1998년 2월부터 개정보험업법이 시행될 예정인데, 보험사의 財務健全性 提高를 위한 지급여력규제 강화가 골자임.
- 보험회사의 보유보험료는 總資産의 최소 2.5%, 최대 20%를 보유할 수 있음.
 - 대다수의 보험회사는 담보력의 미비로 석유화학위험과 정부프로젝트와 같은 거대위험을 담보하지 못하고 대부분 海外再保險者에게 출재하며 이는 保險收支의 악화요인이 됨.
 - 이에 따라 保險監督當局은 담보력이 작은 회사들의 합병 및 담보력이 큰 외국사의 합작을 유도하고, 새롭게 진입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담보력이 작은 보험사의 인수를 권고함.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종목 중 勸告料率을 적용하는 종목은 개인상해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및 기계보험이며 協定料率을 적용하는 종목은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임.
 - 화재보험의 경우 협정요율체계는 1989년에 폐지되었으나 사업실적의 악화로 1992년 재 실시하였으며 非産業, 産業, 農耕地라는 3개 범주로 나누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의 유형과 사용목적에 따라 나누며 제3자 배상책임, 자가 및 동승자 상해 등을 확장 담보할 수 있음.
- 보험시장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협정요율의 폐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1996년에 협정요율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협정요율을 개정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시장확대를 노리는 世界再保險者와의 요율경쟁을 들 수 있음.

- 또한 협정요율이 폐지될 경우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自由料率市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점임.

다. 損害保險市場 現況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의 1987 ~ 1995년 收入保險料 推移를 보면, 1988년 성장률이 떨어진 이후 1995년까지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특히 1994년과 1995년에는 각각 33.7%, 24.6%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음.
- 1995년 전체 수입보험료는 3조 3,133억 루피아이고 종목별로는 화재보험이 1조 3,048억 루피아로 가장 많고 자동차보험이 4,966억 루피아, 적하보험이 3,746억 루피아를 차지하고 있음(<표 1> 참조). 특히 항공보험의 경우 1994년 978억 루피아에서 1995년 2,325억 루피아로 138%의 증가를 보임.

<표 1> 1987 ~ 1995년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루피아, %)

연 도 종 목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화 재	308.2	317.3	381.4	433.0	523.2	642.0	752.7	1,105.2	1,304.8
자 동 차	69.0	94.2	129.1	201.2	214.9	248.3	287.5	386.4	496.6
개인상해	13.8	15.0	25.7	36.2	45.5	139.1	43.9	57.3	57.6
건설조립	26.1	33.4	36.1	42.6	77.3	101.8	62.5	97.2	111.6
적 하	102.3	114.1	130.7	162.8	205.4	237.4	274.2	302.0	374.6
선 박	220.2	146.8	163.0	240.9	257.6	250.4	291.2	310.3	325.1
기 계							35.9	47.8	78.4
항 공							80.8	97.8	232.5
건 강							6.9	14.7	25.7
보 증							38.9	24.9	47.4
기 타	85.5	151.4	221.9	209.0	165.0	135.4	115.6	216.6	235.8
합 계	825.1	872.2	1087.9	1325.7	1488.9	1754.4	1989.3	2660.2	3,313.3
성 장 율	42.9	5.7	24.7	21.9	12.3	17.8	13.4	33.7	24.6

資料: 1995 Indonesian Business Report 28th, Directorate of Insurance, Directorate General of Financial Institutions Ministry of Finance.

해외보험동향

-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의 1995년 종목별 損害率을 보면, 화재보험이 28%, 자동차보험이 39%, 적하보험이 38%임(<표 2> 참조).
- 1995년 손해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자동차보험과 선박보험으로 39%이고 가장 낮은 종목은 기계보험으로 18%임.

<표 2> 1987 1995년 손해보험 손해율 추이

(단위: %)

연 도 종 목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화 재	20	25	39	34	43	42	40	31	28
자 동 차	39	37	42	39	50	54	49	40	39
개인상해	27	34	23	29	26	20	25	21	29
건설조립	29	69	119	48	47	25	38	23	30
적 하	31	45	38	48	36	39	43	48	38
선 박	27	34	38	32	43	36	48	41	39
기 계							55	25	18
항 공							42	66	23
건 강							42	41	37
보 증							13	7	25
기 타	111	51	51	45	84	38	27	28	24

資料: 1995 Indonesian Business Report 28th, Directorate of Insurance, Directorate General of Financial Institutions Ministry of Finance.

- 손해보험의 事業費는 1994년 3,928억 루피아에서 1995년 5,062억 루피아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하였음(<표 3>참조).
- 國內社の 평균 사업비는 15% 20% 이며 合作社의 경우 국내사보다 5%정도 높은 20% 25%임.
- 개별보험회사를 보면 사업비가 작은 회사의 경우 5%에서 많은 회사의 경우 40%로 변동폭이 매우 크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保險専門人力의 부족으로 생긴 것이며 보험사간의 전문인력의 불법적인

스카웃을 야기시키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03년으로 예정된 시장개방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 손해보험사의 1995년 이익은 사업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營業利益(underwriting surplus)의 20% 증가 및 투자 및 기타수입의 53%의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8.5% 증가한 4,512억 루피아를 기록하였음(<표 3> 참조).

<표 3> 1993 1995년 손해보험 사업비 및 이익 추이

(단위: 십억루피아)

연 도	영업이익	투자수입/ 기타	사 업 비	이 익
1993	414.8	192.6	324.8	282.6
1994	541.2	202.6	392.8	351.0
1995	648.3	309.1	506.2	451.2

註: 이익 = 영업이익 + 투자수입 및 기타 - 사업비

資料: 1995 Indonesian Business Report 28th, Directorate of Insurance, Directorate General of Financial Institutions Ministry of Finance.

(장기중 연구원)

9. 러시아 保險會社の 資本金要件 強化

- 러시아의 보험시장은 1989년 자본시장체제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음. 1989년 이후 750개 회사가 신규로 영업면허를 받아 1993년 말 현재 1,524개사가 영업중에 있음
- 1996년 말에 보험감독청에 등록된 회사는 1993년에 비해 9% 증가한 2,500개가 넘고 있고, 이 반면에 퇴출하는 회사도 200개가 넘었음. 또한 보험사의 이같은 퇴출로 인해 보험사의 신뢰도 저하와 계약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外國資本의 投資를 허용하고 있음 (외국자본이 투자한 회사는 80개 이상임).

- 최근에는 보험회사의 民營化가 추진되고 있음. 전체보험사 중 주 소유 보험사 (state-owned insurance company)는 260개사이며, 민영보험회사는 전체사의 70%인 1,750개사임.
- 주보험회사의 경우 계속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 보험사에 대한 소유한도를 보면 사회주의시대의 독점보험사에 대해 州가 주식을 20%까지만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러시아는 보험산업에 대한 保險監督廳(Department of Insurance Control)의 규제를 강화함과 아울러 聯邦保險法(About the Insurance)을 의회(Duma)에서 통과시킴. 보험사에 대한 규제는 연방규제, 보험감독청의 규제, 세금규제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음.
- 연방규제는 1992년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보험법(About the insurance)이 적용됨. 동 법에서는 순수외국사의 영업을 금지하며 외국사의 투자도 49%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1995년에는 聯邦民法(Civil Code of Russian Federation)에서 보험관련 법규조항을 분리하여 연방보험법(About the insurance)에 포함시켜 1996년 3월 1일 시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민법과 연방보험과의 불일치 또는 상충되는 점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1997년 말경에 시행¹⁾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은 보험사의 納入資本金 要件인데, 생명보험을 영업하고자 하는 회사는 2조 9,750억 루블(\$512,931), 기타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의 경우 2조 1,250억 루블(\$366,379)임.
- 기존보험사는 1999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자본금 요건을 맞추어야 하며 1991년 말 시행 이후의 신규회사의 경우는 경과조치 없이 그대로 적용됨.

(이기형 선임연구원)

1) 동 법의 시행은 3차청문회를 통과하고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인준이 있어야 한다.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the Insurance Industry in the OECD Countries^{*}

Olivier Donni and Fabienne Fecher

본 논문은 15개 OECD국가의 보험산업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수준(technical efficiency levels)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성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진보에 있어서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별 효율성의 차이는 해당국가의 보험시장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한 것인지도 분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보험시장의 통합과 규제완화가 증가되는 시기에 있어서 요구되는 보험사의 종합적인 효율성을 국가별로 비교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에 해당된다.

본 논문은 “Intertemporal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OECD 15개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효율성 수준을 1983-1991년에 대해 측정했다. 효율성의 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성변화를 Malmquist지수법을 이용하여 기술적 변화와 효율성변화로 나누었다. 그리고 국가별 효율성수준의 폭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및 외국시장 점유비, 국내사들의 평균 규모, 총보험료에 대한 受再保險料 비율 등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집약적인 보험산업에 대한 생산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하였다.

보험사의 효율성 측정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벨기에, 프랑스, 미국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며 국가별 비교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었다(<표 1> 참조). 이들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효율성수준은 낮고 편차가 크다.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회사는 주로 시장세분화가 큰 회사일수록 높았는데 이는 특정 보험계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기인하는 逆選擇 때문으로 설

* 본 논문은 *The Geneva Papers on Risk and Insurance*, 22(No.84, July 1997)에 실린 것임.

명된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영리회사보다는 비영리회사가 효율성이 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효율성이 再保險出再率과 負의 관계가 있는 반면 벨기에는 正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서는 규제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은 보험회사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적인 정의도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몇몇 연구자들은 보험료 혹은 발생손해액, 계약증권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경과보험료, 손해액과 투자수익율을 생산성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표 1> 개별자료를 이용한 기존 연구현황

연구자	국가	연구방법	대상종목	설명변수	평균효율성
Cummins & Weiss(1993)	미국	Stochastic cost frontier	손해보험	손해액	0.79-0.90
Delhaussse et al(1995)	벨기에 프랑스	DEA, production Stochastic cost frontier	손해보험	총보험료	0.463-0.55
D o n n i & Hamende(1993)	벨기에	FDH, intertemporal and sequential	생명 및 손해보험	총보험료, 손해액	0.44-0.64
Fecher et al.(1991)	프랑스	Deterministic cost frontier	생명 및 손해보험	총보험료, 손해액	0.24-0.41
Fecher et al.(1993)	프랑스	DEA,Production stochastic frontier	생명 및 손해보험	총보험료, 금융수익	0.24-0.54
Gardner & Grace(1993)	미국	Stochastic cost frontier	생명보험	유가증권투자, 보험료, 연금	0.45
Yuengert(1993)	미국	Stochastic cost frontier	생명보험	예치기금, 보험료, 연금	0.50-0.65

본 논문에서는 OECD국가별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OECD에 집적되는 보험 통계자료에서 순수입보험료(생보, 손보), 보험종사자수, 시장점유비, 출재율, 생보점유비, 외국사점유비(생보, 손보), 회사규모(종업원) 등을 사용했다(<표 2> 참조). 여

기서 투입량(input)으로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중개자까지 포함한 전종업원 즉 노동력(labor)으로 보고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 국가별 변수의 평균치

(단위: 백만달러, %)

국 가 별	순수입보험료		보 험 중사자	출재율	OECD 시장점유비	생 보 점유비	외국사점유비		회사규모 (종업원)
	생 보	손 보					생 보	손 보	
벨 기 에	1774.39	3497.00	5476.22	7.21	0.69	0.33	8.97	12.45	195
카 나 다	9746.26	10930.58	177492.50	11.60	2.64	0.46	19.04	25.28	338
핀 란 드	2193.22	1456.11	66601.83	9.89	0.55	0.58	0.00	0.33	1253
프 랑 스	17784.7	22046.69	209850.78	12.86	4.88	0.41	2.66	4.61	369
독 일	19966.47	25645.47	245775.33	2.45	6.87	0.44	3.43	3.84	319
아이슬랜드	1.68	67.01	413.77	21.21	0.01	0.24	0.00	0.00	15
이탈리아	36863.67	11919.92	124258.22	15.53	1.91	0.22	1.62	4.24	539
일 본	95405.77	20797.58	1513666.67	3.69	19.29	0.81	1.36	3.01	15064
네덜란드	5850.93	5887.44	61444.44	-	1.45	0.48	8.07	8.07	77
뉴질랜드	647.87	778.34	11532.14	-	0.14	0.46	24.05	28.67	64
포르투갈	287.33	1296.38	53949.56	3.67	0.12	0.15	34.11	8.31	943
스 위 스	5096.97	6660.59	43565.89	35.09	1.39	0.43	0.12	1.92	351
터 어 키	93.15	335.09	3607.67	8.21	0.05	0.14	0.07	5.36	85
영 국	36685.05	29645.17	341700.00	-	7.49	0.54	4.53	5.58	407
미 국	161996.84	205481.15	1940355.56	6.30	48.00	0.47	1.80	1.03	363

<표 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분석국가들의 평균효율성은 약 70%정도이고 분산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화가 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핀란드와 포르투갈은 효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룹간의 효율성수준 차이는 관리상 오류(mismanagement),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생산성변화(productivity change)의 추이에 있어서는 핀란드가 17.4%로 가장 높으며, 터키,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은 7%를 초과하고 있다. 생산성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진보(technological progress)는 핀란드, 터키, 일본은 5%를 초과하는 한편, 벨기에와 포르투갈은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산업의 생산성 증가는 금융산업

전반에 비해 낮는데 그 이유로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신기술의 도입이 잘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3> 국가별 효율성등급 및 Malmquist지수 분해(1983- 1991 평균)

국 가 별	효율성	생산성증감	효율성증감	기술적 증감
아이슬랜드	1.00	1.018	0.999	1.019
미 국	1.00	1.043	1.015	1.027
스 위 스	0.98	1.010	1.002	1.007
프 랑 스	0.96	1.058	0.996	1.061
영 국	0.95	1.074	0.997	1.077
독 일	0.91	1.031	0.980	1.052
네덜란드	0.78	1.079	1.031	1.046
이탈리아	0.71	1.041	1.010	1.030
일 본	0.59	1.086	1.066	1.018
터 키	0.55	1.088	1.078	1.009
뉴질랜드	0.51	1.027	0.992	1.035
카 나 다	0.50	1.022	0.976	1.047
벨 기 에	0.39	1.025	1.035	0.989
핀 란 드	0.30	1.174	1.116	1.052
포르투갈	0.15	1.040	1.048	0.992
평 균	0.70	1.055	1.023	1.031
분산계수	39.64	4.10	3.88	2.54
관 측 수	126	-	-	-

그리고 결과의 분석시에 효율성의 분산이 약 40%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가별 특성(재보험출재율, 외국사점유율, 시장규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므로 특정구간 (0, 1) 내에서 이들을 로그변환과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첫째, 실제로 벨기에의 개별회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재보험출재율이 높을수록 효율성이 증대한다. 반면에 프랑스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둘째, OECD국가에서의 시장점유비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증대되며, 효율성은 생보사의 시장점유비와는 負의 관계라는 점이다.

셋째, 효율성은 생보사의 점유비와는 負의 관계이다. 이는 국가의 특수성과 깊은 관계가 있어 국가간 분산이 크다. 특히 이점에 있어서 외국사의 생보시장 진입이 어려울수록 효율성이 낮으며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평균규모는 효율성과는 負의 관계이다. 이는 회사측면에서 볼 때 規模의 不經濟性(diseconomic of scale)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기술적 효율수준의 설명인자(Tobit 계수 1)

국 가 별	유의수준(5%)	표준편차
절편	-1.151*	0.534
수재보험료 비율	0.261	0.081
OECD국내 시장점유비	0.387	0.050
전체보험산업대비 생보점유비	-0.483	0.092
외국사의 시장점유비(생보)	-0.097	0.027
외국사의 시장점유비(손보)	-0.048	0.039
회사의 평균규모	-0.151	0.060
추세	0.059	0.019
편차	0.339	0.029
관측수	92	

註: *는 통계적 1%유의수준의 값임.

(이기형 선임연구원)